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구

2014. 09.

#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9월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이사장 임 철 희

# 차 례 | Contents

## 제1장 연구 개요 3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4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내용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세부내용 .....	5
3. 연구 용어의 정의 .....	6
제 3 절 연구 추진절차 및 경과 .....	9
1. 기본방향 .....	9
2.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안 .....	9
3. 연구 추진경과 .....	10

## 제2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분쟁사례 13

제 1 절 공사기간 연장 관련 선행연구 .....	13
1.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	13
2. 공사기간 연장 발생원인 .....	15
3. 공사기간 연장 방지를 위한 공사계약방식 개선안 .....	16
4. 기타 .....	17
제 2 절 공사기간 연장 관련 조정·중재·판결 사례 .....	20
1.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	20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 .....	24
3. 법원 판결사례 .....	33

제 3 절 공사기간 연장 관련 해외사례	54
1. 스피어런 및 앤티라이스 원칙	54
2. 해외 공사기간 연장 클레임 청구사례	56
3. 해외사례 특징	61
4. 기타 해외 공사기간 연장관련 연구	62

### **제3장** 공사기간 연장 실태 및 설문조사 65

제 1 절 공사기간 연장 실태조사	65
1. 조사 개요	65
2. 실태조사 결과	66
3. 결론 및 시사점	76
4. 총사업비 대상사업 실태조사	77
제 2 절 공사기간 연장 발주처 · 건설사 설문조사	81
1. 조사 개요	81
2. 설문조사 결과	82

### **제4장**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법리적 분석 125

제 1 절 관련 현황 검토	125
1. 선행연구 분석	125
2. 조정 · 중재 · 판결 사례 분석	125
3. 설문조사 분석	126
4. 관련 법규 검토	127
제 2 절 검토 결과	130

**제5장** 공사기간 연장비용 정산기준(안) 135

제 1 절 항목별 이슈 분석 ..... 135

    1.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요건 .....135

    2. 공사기간 ..... 135

    3. 공사기간 연장비용 ..... 136

    4.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대상기간 .....138

제 2 절 정산기준(안) .....139

    1. 개요 ..... 139

    2. 청구절차 ..... 140

    3. 산정방법 ..... 143

    4. 산출내역(안) ..... 147

    5. 법적근거 ..... 148

    6. 기타 참고사항 ..... 149

제 3 절 향후 고려사항 ..... 153

**제6장**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57

제 1 절 총사업비관리지침 ..... 157

    1.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157

    2.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건의 공문 ..... 158

    3. 개정(안) ..... 161

제 2 절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 162

    1. 발주기관별 공사기간 연장비용 조정지침 수립 .....162

    2. 표준계약서(안) .....164

3.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의 도입과 전문가 또는 제3의 기관 참여 활성화 .....	166
4. 공사기간 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 .....	166
5. 공사기간 연장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	167
6. 기타 개선방안 .....	168

**제7장 결론 및 제언** 173

제 1 절 결론 .....	173
----------------	-----

제 2 절 제언 .....	176
----------------	-----

**참고문헌** 177

**부록** 181

부-01. 법원 판례 .....	183
부-02. 중재 사례 .....	248
부-03. 조정 사례 .....	269
부-04. 공사기간 연장 관련 법규 .....	275
부-05.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건의 공문 .....	281
부-06. 법률자문 의견서 .....	288

－ 표 목 차 －

표 1-1. 관련 용어의 정리 ..... 7

표 1-2. 단계별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9

표 2-1. 국내 선행연구 ..... 18

표 2-2.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 20

표 2-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 ..... 25

표 2-4. 분석대상 법원 판결사례 ..... 35

표 2-5. 법원 소송 관례 최종결과 ..... 36

표 2-6. 피고 대상별 관례 현황 ..... 36

표 2-7. 법원 관례의 공사기간 연장 발생사유별 현황 ..... 37

표 2-8. 법원 소송 관례의 쟁점별 현황 ..... 39

표 2-9. 쟁점별 분석-청구시점 ..... 40

표 2-10. 쟁점별 분석-변경계약 시 간접비 포함여부 ..... 43

표 2-11. 쟁점별 분석-합의(서) ..... 44

표 2-12. 법적 명시된 간접비 항목 ..... 46

표 2-13. 쟁점별 분석-공백기간 ..... 47

표 2-14. 선행조사와 관례분석 비교 ..... 50

표 2-15. 공사금액 내 공기연장 추가비용 비율(선행조사) ..... 51

표 2-16. 공기연장 추가비용 추정(선행조사) ..... 51

표 2-17. 공사금액 내 공기연장 추가비용 비율(판례) ..... 52

표 2-18. 공기연장 추가비용 추정(판례) ..... 52

표 2-19. 법원 판결사례 공기연장비용 총괄표 ..... 53

표 2-20. 해외 중재판정 비교 ..... 55

표 2-21. 두바이 항만공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내역 ..... 59

표 2-22. 두바이 항만공사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 59

표 2-23. 두바이 항만공사 간접노무비 청구내역 ..... 59

표 2-24. 외국 고속철도 건설사업 공기지연사유 비교 ..... 61

표 2-25. 해외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비교 .....	61
표 2-26. 해외 공사기간 연장관련 연구 .....	62
표 3-1. 실태조사 총괄표 .....	66
표 3-2. 실태조사 총괄표 .....	80
표 3-3.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식 선호도 .....	83
표 3-4. 요율방식의 동의 이유 .....	83
표 3-5. 요율방식 비동의 이유 .....	84
표 3-6. 실비산정방식 동의 이유 .....	85
표 3-7. 실비산정방식 비동의 이유 .....	85
표 3-8.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근거 .....	86
표 3-9. 노무량 산정방안에 관한 의견 .....	87
표 3-10.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과정 및 검토과정의 어려움 .....	87
표 3-11. 설계당시 공사기간 산정 고려항목 .....	88
표 3-12.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의견 .....	89
표 3-13.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희망 항목 .....	89
표 3-14. 지급임차료 중 직원숙소의 범위 .....	90
표 3-15.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직종에 대한 의견 .....	91
표 3-16. 87억 이상 ~ 13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3
표 3-17.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4
표 3-18.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5
표 3-19.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6
표 3-20.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7
표 3-21.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8
표 3-22. 1,500억 이상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9
표 3-23. 기타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100
표 3-24. 87억 이상 ~ 13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1
표 3-25.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2
표 3-26.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3
표 3-27.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4

표 3-28.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5
표 3-29.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6
표 3-30. 1,500억 이상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7
표 3-31. 기타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8
표 3-32. 불가항력에 대한 입장 .....	109
표 3-33. 귀책사유에 대한 발주처 입장(비율) .....	110
표 3-34. 귀책사유에 대한 건설사 입장(비율) .....	111
표 3-35.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여부 .....	112
표 3-36. 건설사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대상 .....	112
표 3-37.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여부 .....	113
표 3-38.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조치방식 .....	113
표 3-39. 건설사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시 문제점 .....	114
표 3-40. 발주처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사유 .....	115
표 3-41. 공사기간 연장 시 발주처로부터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알림 여부 .....	115
표 3-42.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시 대응방식 .....	116
표 3-43.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시점 의견 .....	117
표 3-44.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필요 여부 .....	118
표 3-45.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사례 .....	118
표 3-46.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시 조치방식(발주처) .....	119
표 3-47. 하도급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시 조치방식(건설사) .....	119
표 4-1. 지급 필요성 종합분석 .....	130
표 5-1. 차수별계약 시 공백기간의 공사기간 포함 여부(법원사례) .....	136
표 5-2. 간접노무비 대상인원 정의 .....	144
표 5-3.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출내역(안) .....	147
표 5-4. 공사기간 연장비용 법적근거 .....	148
표 5-5.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 비교 .....	150
표 5-6. 공기연장비용 인정항목(법원사례) .....	151
표 5-7. 용역사 산출사례 .....	152

표 5-8. 공사기간 연장비용 정산기준(안) 제언 .....	154
표 6-1.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안) 비교표 .....	161
표 6-2.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162
표 6-3. 한국토지주택공사 품질관리인원 배치기준 .....	163
표 6-4. 발주처별 계약서 명기사항 .....	164
표 6-5. 공백기간 포함여부 법원 판결사례 .....	165
표 6-6. 표준계약서(안) .....	165
표 7-1. 연구 결론 요약 .....	175

－ 그 림 목 차 －

그림 2-1. 공사기간 연장 발생사유별 발생건수 ..... 38

그림 2-2. 공사기간 연장 쟁점별 발생건수 ..... 38

그림 3-1. 총괄 공사기간 연장 발생비율 ..... 68

그림 3-2. 공기연장 발생사유 총괄 ..... 70

그림 3-3. 공기연장 발생사유 (토목) ..... 70

그림 3-4. 공기연장 발생사유 (건축) ..... 71

그림 3-5. 공기연장 발생사유 (산업설비) ..... 71

그림 3-6. 장기계속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72

그림 3-7. 계속비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72

그림 3-8.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전환 공기연장발생 사유 ..... 73

그림 3-9. 500억원 미만 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73

그림 3-10. 500~1,000억원 미만 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74

그림 3-11. 1,000~1,500억원 미만 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74

그림 3-12. 1,500~2,000억원 미만 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75

그림 3-13. 2,000억원 이상 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75

그림 3-14. 총사업비 대상사업 공기연장 발생비율 ..... 77

그림 3-15. 총사업비 대상사업 공사기간 연장사유 ..... 79

그림 3-16. 공사기간 연장비용 관련 설문조사 개요 ..... 81

그림 3-17. 응답자 일반특성 ..... 82

그림 3-18.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식 선호도 ..... 83

그림 3-19. 요율방식의 동의 이유 ..... 84

그림 3-20. 요율방식 비동의 이유 ..... 84

그림 3-21. 실비산정방식 동의 이유 ..... 85

그림 3-22. 실비산정방식 비동의 이유 ..... 86

그림 3-23.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근거 ..... 86

그림 3-24. 노무량 산정방안에 관한 의견 .....	87
그림 3-25.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과정 및 검토과정의 어려움 .....	88
그림 3-26. 설계당시 공사기간 산정 고려항목 .....	88
그림 3-27.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의견 .....	89
그림 3-28.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희망 항목 .....	90
그림 3-29. 지급임차료 중 직원숙소의 범위 .....	90
그림 3-30.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직종에 대한 의견 (전체) .....	92
그림 3-31.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직종에 대한 의견 (토목) .....	92
그림 3-32.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직종에 대한 의견 (건축) .....	92
그림 3-33. 87억 이상 ~ 13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3
그림 3-34.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4
그림 3-35.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5
그림 3-36.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6
그림 3-37.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7
그림 3-38.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8
그림 3-39. 1,500억 이상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99
그림 3-40. 기타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	100
그림 3-41. 87억 이상 ~ 13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1
그림 3-42.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2
그림 3-43.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3
그림 3-44.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4
그림 3-45.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5
그림 3-46.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6
그림 3-47. 1,500억 이상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7
그림 3-48. 기타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	108
그림 3-49. 불가항력에 대한 입장 .....	109
그림 3-50.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여부 .....	112
그림 3-51. 건설사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대상 .....	112
그림 3-52.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여부 .....	113
그림 3-53.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조치방식 .....	114

그림 3-54. 건설사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시 문제점 .....	114
그림 3-55. 발주처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사유 .....	115
그림 3-56. 발주처로부터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알림 여부 .....	116
그림 3-57.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시 대응방식 .....	116
그림 3-58.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시점 의견 .....	117
그림 3-59.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필요 여부 .....	118
그림 3-60.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사례 .....	118
그림 3-61.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시 조치방식(발주처) .....	119
그림 3-62.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시 조치방식(건설사) .....	120
그림 4-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관련 법규 .....	129
그림 4-2. 공사기간 연장비용 관련 대통령 발언 내용 .....	131
그림 4-3.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필요성 검토 .....	132
그림 5-1.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절차 .....	140



# 연구 개요 , 0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추진절차 및 경과
- 

## 제 1 장 연구 개요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서 현장여건 및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면 간접비용이 증가하고, 발주처와 건설사 등 계약상대자간에 비용부담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2013년 조사결과, 공공공사 현장 3곳 중 1곳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했으며, 장기 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모두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만연함.<sup>1)</sup>
- 국가계약법령 등에서는 실비정산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정산범위 및 기준 등이 없고,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지급 기준 등이 없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증빙 논란 등으로 공사현장의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sup>
- 기획재정부는 발주처 귀책으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등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이 대두됨.
  - 기획재정부는 계약금액 조정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간접노무비, 유희장비, 각종 수수료 등 간접비 산정기준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통하여 2010년 11월 개정하였음.
- 한편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 용지 보상 지연 등 현재 공공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공사기간 연장 사례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실비정산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기간 연장의 정산범위 및 기준 등이 없어 정확한 산정기준 필요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1) 이영환 외(2013),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1조, 제72조

## 2. 연구 목적

- 공공 건설공사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기간 연장 발생원인 파악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지와 사유별 간접비용의 지급 필요성의 법리적 분석
  - 공사기간 연장 정산기준 및 실무지침 마련
  - 공사기간 연장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추정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내용

###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공사
- 시간적 범위
  - 과업수행기간 : 2013. 08. 20. ~ 2014. 09. 17.
  - 자료조사기간 : 2009년 이후 공공공사 현장(공공공사 공사기간 연장 실태조사)
- 내용적 범위
  -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 현황 및 쟁점 분석과 국내 분쟁사례 조사
  - 관련 법령 분석 지급 필요성 검토
  - 간접비용의 정산기준 및 실무지침 마련
  - 공사기간 연장 방지대책 마련

### 2. 연구 세부내용

-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 현황 및 쟁점 분석
  - 공사기간 연장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 공사기간 연장 원인별 책임소재 분석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간접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 간접비용의 실 집행 현황(원도급사/하도급사) 분석
- 국내 분쟁사례 조사
  - 국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분쟁사례
  - 분쟁사례별 간접비용 지급(정산) 현황

□ 관련 법령 분석 지급 필요성 검토

- 계약관계 법규(예규, 규정, 지침, 계약서류 등 포함) 분석
- 공사기간 연장 원인별 간접비용 추가 지급 필요 여부 분석
- 간접비용 정산 등에 따른 직·간접 효과 분석

□ 간접비용의 정산기준 및 실무지침 마련

- 분야, 공사규모, 계약방법, 발주방법별 간접비용 정산기준
- 간접비용 항목별 정산 시 문제점 및 해소대책 분석
- 간접비용 실무지침 작성 : 정산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발주처의 확인방법 등
- 법규 등 제도적 보완방안

□ 공사기간 연장 방지대책 마련

- 분야, 공사규모, 계약방법, 발주방법별 공사기간 연장 최소화 방안 등

### 3. 연구 용어의 정의

#### 가. 공사기간 연장비용

- 공사기간 연장비용이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현장 관리 비용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청구금액을 말하며,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보증수수료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금액을 간접비로 통칭하고 있음.
  - 그러나 간접비는 통상 직접비와 대응되는 회계용어로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로 구성되며, 이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청구 항목 중 손실비용 성격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제외한 용어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는 간접공사비<sup>1)</sup>, 일반관리비<sup>2)</sup>, 이윤<sup>3)</sup> 및 공사손해보험료<sup>4)</sup>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기하고 있음.

---

1)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간접공사비)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0조(일반관리비)  
3)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1조(이윤)  
4)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 따라서 간접비로 불리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청구비용의 용어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용역에서는 간접비라고 표현되는 공사기간에 따른 청구비용을 「공사기간 연장비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 즉 공사기간 연장비용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현장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함.

## 나. 공사기간

- 공사(계약) 이행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의한 계약문서<sup>1)</sup> 중 계약서에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를 월력으로 명확히 기재한 기간을 의미함.
- 다만 착공 후 000일로 계약하는 경우는 월력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공사계약 시 계약서 상 착공일과 준공일을 년, 월, 일 명확히 기재 요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면서 총 공사기간에는 포함되는 공백기간 또한 전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장유지의 필수인원 배치가 불가피한 기간으로 공사기간에 포함하여야 함.<sup>2)</sup>

## 다. 관련 용어 정리

- 공사기간 연장 관련 용어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음.

표 1-1. 관련 용어의 정리

용어	정의
간접공사비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li> <li>• 간접공사비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li> <li>• 직접공사비에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li> </ul>
계약상대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li> </ul>

1)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량내역서 등

2) 법률자문 통한 공백기간 포함 공사기간의 정의(부록-06. 참조)

[표 계속]

용어	정의
<p>장기계속계약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계약</li> </ul>
<p>계속비 (국가재정법 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음.</li> <li>•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li> </ul> </li> </ul>
<p>공사정지(중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지 : 멎거나 그치게 함 + 그만 둠 → 재개할 것이 전제된 멈춤</li> <li>• 중지 : 그만둠의 의미 → 재개할 것이 기약되지 않은 멈춤</li> <li>• 능동적인 중지가 아닌, ~에 의한 정지의 해석이 적절하며 의미 또한 한시적인 공사의 멈춤에 해당하므로 공사 정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a href="http://www.korean.go.kr">www.korean.go.kr</a> keyword : 공사 정지, 공사 중지)</li> </ul>
<p>준공대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 완료 → 준공검사(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 →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국가계약법 제15조제2항)</li> </ul>
<p>기성대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 → 기성검사(국가계약법 14조제1항) → 기성검사 완료 5일 이내 기성대가 지급(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4항)</li> </ul>
<p>기성대가의 계약의 일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음.</li> </ul>
<p>계약금액 조정 신청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신청)행위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조정요건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회계 45107-51 '95.1.13)"를 말하며 이러한 신청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신청일"이라고 함.</li> </ul>

## 제 3 절 연구 추진절차 및 경과

### 1. 기본방향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구용역 목적에 부합하고, 수행과정에 있어서는 발주처 및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
- 과업의 수행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 주관 및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담당부서의 적극 협조·참여 하에 과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용역과업지시서 외에 정부정책, 제반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과업성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 2.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안

- 본 연구는 총 5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단계별 세부내용 및 추진방안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2. 단계별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구분	세부내용	추진방안
STEP 1 쟁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 연장 현황 및 원인 파악</li> <li>- 공사기간 연장 현황</li> <li>- 원인별 책임소재</li> <li>- 간접비용 실집행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DB활용</li> <li>•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li> </ul>
STEP 2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사례조사</li> <li>-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용 분쟁사례</li> <li>- 분쟁 사례별 간접비용 정산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상사중재원 등 자료 활용</li> <li>•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li> </ul>
STEP 3 법령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분석</li> <li>- 관련 법령 분석</li> <li>- 공사기간 연장 원인별 간접비용 추가 지급 필요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한 법·제도 검토</li> <li>• 법률 자문실시</li> </ul>
STEP 4 실무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기준 및 실무지침 마련</li> <li>- 정산기준 및 실무지침 마련</li> <li>- 제도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기준 분석</li> <li>• 관련 제도에 현실성 반영</li> </ul>
STEP 5 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 연장 관련 법·제도 개선안</li> <li>- 간접비용 분쟁 최소화 방안</li> <li>- 공사기간 연장 방지대책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비 지급의 사전 사유 검토</li> <li>•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 검토</li> </ul>

### 3. 연구 추진경과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 : 국토교통부</li> <li>• 연구기관 : (사)건설경제연구원</li> <li>• 연구기간 : 2013년 8월 20일 ~ 2014년 8월 19일(365일)</li> </ul>
착수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3.8.26.(수)</li> <li>• 장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 330호</li> <li>• 내용 : 착수보고회 및 질의응답</li> </ul>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3.10.11.~2014.04.12.(3차)</li> <li>• 대상 : 국내 건설사(도급순위 100위 권 내)</li> <li>• 내용 : 공공공사 공사기간 연장 실태 파악</li> </ul>
법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4.03.28.~2014.04.15.</li> <li>• 대상 : 법무법인 바른(유)</li> <li>• 내용 : 법률자문(법률 분석, 분쟁 분석, 간접비 지급 타당성 검토 등)</li> </ul>
중간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4.04.25.(금), 10:00~12:00</li> <li>• 장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 330호</li> <li>• 내용 : 실태조사, 간접비 지급필요성 검토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li> </ul>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4.06.22.~2014.07.22.</li> <li>• 대상 : 공공공사 발주처 및 국내 건설사</li> <li>• 내용 : 간접비 산정방법, 간접비 인정범위,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li> </ul>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4.08.01.(금), 14:00~16:00</li> <li>• 장소 : 국토교통부 회의실 503호</li> <li>• 내용 : 간접비 관련 실태조사, 지급필요성, 지급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li> </ul>
연구용역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4.08.18.(월)</li> <li>•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li> <li>• 내용 : 과업 관련 소송 판결결과 반영 및 해외 사례 추가(잔여일수 2일)</li> </ul>
업무보고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4.09.12.(금)</li> <li>• 장소 : 국토교통부 투자담당관실</li> <li>• 내용 :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 및 협의</li> </ul>
연구용역 재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4.09.16.(화)</li> <li>•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li> <li>• 내용 : 연구용역 재착수</li> </ul>
연구용역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4.09.17.(수)</li> <li>•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li> <li>• 내용 : 연구용역 최종 준공 및 성과품 납품</li> </ul>

## 선행연구 및 국내외 분쟁사례 , 02

1. 공사기간 연장 관련 선행연구
2. 공사기간 연장 관련 조정·중재·판결 사례
3. 공사기간 연장 관련 해외사례



## 제 2 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분쟁사례

### 제 1 절 공사기간 연장 관련 선행연구

-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와 관련된 논문, 연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연구된 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음.
  - ①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방법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 ② 공사기간 연장 발생원인
  - ③ 공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계약방식 개선방안
  - ④ 기타 : 공사기간 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

#### 1.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 제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분쟁요인 분석과 관련 법령의 운용상 문제점,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장비용 산출·지급상의 관련 제도 및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신영철(2012)<sup>1)</sup>은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현행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5가지 정량적인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대안을 제시하였음.
  - 손실보상율 방식(도급 계약금액 대비)
  - 손실보상율 방식(도급 간접공사비 대비)
  - 시간의 함수방식( $PD \div CP$ )
  - 실비 및 시간의 함수 혼합방식
  - 효율 및 시간의 함수 혼합방식

1) 신영철(2012),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

- 정기창 등(2012)<sup>1)</sup>은 공사특성 주요인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추이와 변화 분석을 통하여 공사기간 연장비용 적정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제 공사기간이 연장된 현장에 적용하여 나온 산정결과를 현재 실비 산정 기준에 따른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및 제도적 개선점을 제안하였음.
  - 계약예규 및 연장비용 적용근거인 ‘공사기간 연장 표준추가간접비’의 개정고시와 추가간접비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필요성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
- 최민섭(2010)<sup>2)</sup>은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처 사유로 인해 공기 연장이 발생할 경우 추가 간접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기준인 계약예규의 실비산정 기준과 공공기관의 연장비용 지급사례를 통한 지급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 산정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간접노무인원의 명확한 기준, 합리적인 노무비 단가를 활용한 산정, 하도급업체의 손실비용 산출방법, 현장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별 사용기준 등을 만들어 합리적인 비용 산정 개선안으로 제시
- 한국원가관리협회(2010)<sup>3)</sup>는 구체적 대상항목 및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안,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간접노무비, 경비(복리후생비·소모품비 등),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기준 제시
  -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산정기준과 관련 계약예규 개정안
  -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청구기한 관련 계약예규 개정안
  - 하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관련 계약예규 개정안
  - 공사기간 연장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 제시
- 이상호 등(2004)<sup>4)</sup>은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지연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외에 건설업체가 입는 손실비용 항목에 대한 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건설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현장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간접인원에 대한 적용기준 제시

---

1) 정기창 외(201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사전합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2) 최민섭(201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리적인 간접비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3) 한국원가관리협회(201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4) 이상호 외(2004),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추정과 보전 방안

- 일반관리비의 개념 정의 및 공사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산정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 증빙이 가능한 모든 손실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이영희(2002)<sup>1)</sup>는 국내 주요 공공발주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및 분석, 시공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등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연장비용 보상현실의 문제점 분석 및 연장비용 보상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사에비비 제도의 도입
  - 계약금액조정 심의위원회 제도의 운영
  - 표준 계약서상에 시공자의 클레임 권리보장 명시
  - 계약예규의 연장비용 관련조항 및 일반관리비 관련조항 개정
  - 발주기관의 의식전환
  - 건설사의 손실비용 증빙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을 연장비용 보상의 현실화 방안으로 제시
- 우영준(1999)<sup>2)</sup>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출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된 현행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 시 산출 직전 연도의 규모별 평균일반관리비비율 및 평균이율 등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 2. 공사기간 연장 발생원인

- 공사기간 연장 원인을 주제로 한 연구는 공사기간 연장 등 건설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와 건설 사업특성별 공사기간 연장사유를 유형화하여 공기지연 분석 방법론과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홍채(2010)<sup>3)</sup>는 건설 분쟁 현황과약을 통해 분쟁이전단계의 갈등구조와 문제점, 분쟁단계에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음
  -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합리적인 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클레임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공사계약조건의 개선 및 발전, 감리업무의 개선, 업무조정

1) 이영희(2002), 계약기간연장시 연장비용 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 우영준(1999),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연장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산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이홍채(2010), 시공 중 발생하는 건설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

회의의 활성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 대체분쟁해결방법의 도입 및 분쟁해결전문가 양성 등을 분쟁해결 방안으로 제시

- 김종한 등(2007)<sup>1)</sup>은 연장사유 자료 및 설문조사, 중요도측정,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연장사유에 대한 사업특성별 상이성 내지 동일성을 도출하여 특성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을 제시하였음.
  - 공종별 특성으로 건축은 ‘변경 및 승인지연’ 등 사유에 대하여 중요성이 나타났으며, 토목은 ‘용지보상 지연’, ‘예산부족’ 등 사업전체 대상 또는 수행 전 근본적 요인으로 인한 사유의 중요성이 두드러짐으로서 공종특성에 따른 상이성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예산부족’ 사유가 토목공사에서만 제시됨으로서 이에 대한 준비나 관리가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
  - 계약유형 특성으로 계속비계약에 없는 예산상의 사유가 장기계속계약에서만 제시되고, 그 중요도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용지보상을 비롯한 공사수행 예산부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을 강조
- 이상현(2004)<sup>2)</sup>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공기지연이 전체 공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공정표를 이용한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의 공기지연 분석과 구조물 특성에 기인한 공기지연인자 분석 실시
  - 진척도 곡선을 이용한 거시적 분석, 일정관리 공정표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 등 공기지연 분석

### 3. 공사기간 연장 방지를 위한 공사계약방식 개선안

- 공사계약을 주제로 한 연구는 계약방식이나 공사기간 산정 등에 대한 고찰과 관련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예산 운용에 따른 계약방식의 개선방안과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처리방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김병수(2005)<sup>3)</sup>는 예정공기 적정성 검토기능과 공기산정자료의 공개기능을 두어 시공 중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발주 전 지역적인 보정요소와 자연환경보정 요소를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로 모형화하여 공사 발주 시 예정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1) 김종한 외(2007), 건설사업 특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사유 분석  
2) 이상현(2004),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공기지연인자 분석에 관한 연구  
3) 김병수 외(2005),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모델에 관한 연구

- 조영준 등(2005)<sup>1)</sup>은 공공건설프로젝트 공사 수행 중에 공기관련 설계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사기간 연장 절차와 계약금액 조정 시 처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계약상대자의 수정공정표 제출, 공사기간 연장청구 및 계약금액 조정요청, 공사중단과 공사기간 연장의 관계정립, 공사기간 연장사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구체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보상기준의 정립 등의 개선방안 제시
- 김정훈(2003)<sup>2)</sup>은 정부의 예산 운용에 따른 계약방식 분석을 통해 정부 예산 운용에 따른 계약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폐지, 공기 사전평가를 통한 예산의 수립, 공정률에 따른 기성 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등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과 합리적인 계약문화 정착, 발주자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시공자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등 실무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시

#### 4. 기타

- 기타 관련 연구로는 공사기간 연장 책임구분을 위한 지연사유 관리시스템, 공사기간 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음.
- 김종한(2007)<sup>3)</sup>은 공기지연 사유세분화 및 계층화를 수행하여 공기지연 책임구분에 대한 관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사유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활용과 공사기간 연장예방을 위한 연구를 하였음.
  - CELL개념의 사유세분화 및 계층화, 업무이행절차를 이용한 사유 프로세스화, 대응관리방안을 통한 사유 근거화, 연장사유 관리모델 개발 및 시스템화(CRMS) 등을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기지연 사유관리 방안으로 제시
- 이재섭(2007)<sup>4)</sup>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공기지연 발생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2년의 공사기간 연장을 가정하여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포함한 전체 손실이 공사원가의 약 1/3정도까지 발생하였음을 연구 하였음.

1) 조영준 등(2005), 공공건설사업에서 계약기간 연장처리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2) 김정훈(2003), 정부 예산운용에 따른 계약방식이 건설공사의 공기 및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 김종한(2007),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책임구분을 위한 지연사유 관리시스템

4) 이재섭(2007), 공사기간 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표 2-1. 국내 선행연구

구분	저자(연도)	주요내용
① 간접비 산정방법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신영철 (2012)	•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효적이고 정량적인 개선방안 제시
	정기창 등 (2012)	• 공사기간 연장비용 규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수행을 통해 공사 특성 주요인에 따른 변화 분석을 통한 공사기간 연장비용 적정 산정 기준 제시
	김효정 (2011)	• 국내 계약법과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간접비 산정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공사계약기간 연장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간접비 산정방법 검토
	강성원 (2010)	• 공사기간 연장의 발생현황과 연장비용 청구 및 지급사례 분석 •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 문제점 및 산정기준 제시
	최민섭 (2010)	•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처 사유로 인해 공기 연장이 발생할 경우 추가 간접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 제시 •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기준인 계약예규의 실비산정 기준과 공공기관 관의 연장비용 지급사례를 통한 지급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 산정 개선방안 제시
	한국원가관리협회 (2010)	• 공사기간 연장 발생현황과 그 청구 및 지급사례를 통해 국내·외 산정 방법 검토 및 문제점 분석 •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관련 계약예규의 개정안 제시
	이재섭 (2005)	•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공건설사업의 정산방법 제시 •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공공건설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간접비의 적용 가능, 물가변동은 적용되지 않음을 제시
	이상호 등 (2004)	•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지연에 따라 건설업체가 입는 손실비용 항목에 대한 연구 및 사례조사 분석 •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건설업체의 합리적 손실보전 방안 제시
	이영희 (2002)	• 국내 주요 공공발주기관의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연장비용 보상 현실의 문제점 분석 및 연장비용 보상 방안 제시
	이기한 (2001)	• 연장비용 해석기준 정립을 위해 지체상금 및 공기단축비용과 분석을 통해 연장비용에 대한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우영준 (1999)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연장비용의 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과 관련하여 국내외 법령과 산식들의 문제점 제시 • 현행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산출 직전 연도의 규모별 평균일반관리비 비율 및 평균 이율 등을 반영하여 산출 하도록 제시

[표 계속]

구분	저자(연도)	주요내용
② 공사기간 연장 발생 원인	이홍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분쟁 관련 연구동향 및 클레임의 실태조사 등 건설 분쟁 현황 조사</li> <li>• 분쟁이전단계의 갈등구조 및 분쟁해결제도 문제점 및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 제시</li> </ul>
	김경래 등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사유 자료 및 설문조사, 중요도측정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연장사유에 대한 사업특성별 상이성 내지 동일성 제시</li> <li>• 계약유형에 따른 분석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예산부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방안을 모색</li> <li>• 공공공사에서 사용하는 계약조건이 분명하지 않아 계약조건에 대한 보완 내지 개정 필요</li> </ul>
	이상현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각 구간의 특징에 따른 공기지연이 전체 공기에 미친 영향 분석</li> </ul>
③ 공사기간 연장 방지를 위한 공사계약방식 개선안	김병수 등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공기 적정성 검토기능과 공기산정자료의 공개기능을 두어 시공 중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비효율적인 요소 제거</li> </ul>
	조영준 등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설사업 수행 중 공기관련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방안 제시</li> </ul>
	김정훈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적, 실무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등 정부예산 운용에 따른 계약방식의 개선방안 제시</li> </ul>
④ 기타	김종한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지연 사유 세분화를 수행하여 지연사유와 실제의 지연공종, 지연사유에 대한 연계성과 구분가능성 제시</li> <li>• 공기지연 책임구분에 대한 관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li> </ul>
	이재섭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공사 대상으로 공기지연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점 분석</li> </ul>

## 제 2 절 공사기간 연장 관련 조정 · 중재 · 판결 사례

### 1.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 2004년 이후 중앙건설조정위원회 조정사례로는 총 23건으로 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례가 많았으며, 조정사례 중 본 연구와 관련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사례는 4건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관련 분쟁과 건설공사 타절에 따른 계약금 정산관련 분쟁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2-2.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구분	사건번호	신청인/피신청인	판결 요지
공사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00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두산중공업(주)</li> <li>• 피신청인 : 부산교통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음은 인정하나, 추가비용 지급은 거부함.</li> <li>• 공사 준공 전까지 간접비용에 대한 지급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 신청인에 대한 간접비용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볼 때 신청인의 간접비용 청구는 가능</li> </ul>
	200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현대산업개발(주)</li> <li>• 피신청인 : 부산교통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툼이 있는 간접비용 중 간접노무의 산정에 있어 동 공사구간 내 타기관이 시행한 공사에 투입된 인원의 간접노무비와 일용직근로자 노무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li> <li>• 경비 중 지급임차료는 경비로 인정 되나 현장사무소 관리비, 통신비, 여비 등은 도급내역에 없거나 직접 공사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경비에서 제외</li> <li>• 보증수수료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보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인정됨.</li> </ul>
	20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주)국제종합토건</li> <li>• 피신청인 : 부산교통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추가 간접비용의 지급을 요구</li> <li>• 교통정리원 투입비 및 물 부기비는 직접노무비로 지급되었고, 통신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계약 하였으므로 경비에서 제외</li> </ul>
건설공사 타절에 따른 계약금액 정산	20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명진종합건설(주)</li> <li>• 피신청인 : 강원도 양양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보 및 임시수로의 설치, 임파쇄 부분은 피신청인이나 감리단의 승낙 없이 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동 공사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의 80%를 실비정산 하는 것이 타당함.</li> <li>• 공사지연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고 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을 6월로 한 것은 과도하므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li> </ul>

[자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분쟁 사례는 공기 연장 사유에 따라 인정 되는 간접비의 청구 시기와 범위가 주된 쟁점이며, 간접비용 분쟁 조정은 공사 준공 전 까지 청구해야 하며 간접노무비 등 기타 경비의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인정됨.
- 건설공사 타절에 따른 계약금 정산 관련 분쟁 사례는 피신청인이나 감리단의 승낙 없이 수행 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계약금의 일부 지급을 조정함.

##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1) 사건번호 2007-3. 부산지하철 3호선 303공구 건설공사

#### □ 주요내용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지하철 건설공사를 계약 체결 하였으나 부산시의 도로확장공사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어려워 공사기간이 연장
- 이에 신청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이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추가 간접비용의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귀책사유를 인정하나 추가비용 지급을 거부

####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을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따라 대표 수급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청인의 간접비용 청구 가능여부
-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간접비용에 대한 추가비용 보상 여부

#### □ 판결요지

- 위 신청인에 대한 간접비용은 분쟁조정 신청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써 간접비용 청구는 가능
-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인건비 등의 간접비용 보상 가능함.

2) 사건번호 2007-1. 부산지하철 3호선 309공구 건설공사

□ 주요내용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지하철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본인의 귀책사유 발생을 인정하나, 간접비용은 일부만 인정함.

□ 주요쟁점

- 간접노무비 등 간접비용의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 산정, 보증수수료 등)

□ 판결요지

- 다툼이 있는 간접비용 중 간접노무의 산정에 있어 동 공사 구간 내 타기관이 시행한 공사에 투입된 인원의 간접노무비와 일용직근로자 노무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
- 경비 중 지급임차료는 경비로 인정 되나 현장사무소 관리비, 통신비, 여비 등은 직접공사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경비에서 제외
- 보증수수료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보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인정됨.

3) 사건번호 2005-7. 부산지하철 3호선 303공구 건설공사

□ 주요내용

- 도로확장공사 지연으로 지하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됨.
- 이에 피신청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변경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은 추가 간접비용의 지급을 요구
- 피신청인은 귀책사유는 인정하나 추가 비용 지급은 거부

□ 주요쟁점

- 다툼이 있는 간접노무비와 경비 산정 부분

#### □ 판결요지

-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를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함.
- 정리원 투입비 및 물 부기비는 직접노무비로 지급되었고, 통신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계약하였으므로 경비에서 제외
- 다만, 지급임차료는 공기가 연장된 동안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경비에 포함.

#### 나. 건설공사 타절에 따른 계약금 정산

##### 1) 사건번호 2005-5

#### □ 주요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를 체결 후 착공하였으나 공사시행 중 설 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보와 임시수로를 주민의 요구에 의해 설치완료 후 감리단의 검측을 받은바 있음.
- 피신청인은 공사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차례 중단되자 신청인의 시공능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반적인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제안한 기성검사 불응

#### □ 주요쟁점

- 설계서에 없는 임시보 및 임시수로의 설치비 정산 및 암파쇄 부분에 대한 정산

#### □ 판결요지

- 임시보 및 임시수로의 설치, 암파쇄 부분은 피신청인이나 감리단의 승낙 없이 이행하기 가 어려우므로 동 공사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의 80%를 실비정산 하는 것이 타당함.
- 공사지연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고 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을 6월로 한 것은 과도하므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

-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인정 여부, 공기지연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 민간투자비 청구 사례 등 3분류로 나눌 수 있음.
-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인정 범위 사례는 공기지연 사유별에 따라 공사기간 범위와 간접비 인정이 주된 쟁점이며,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으로 인정 되어 그 연장된 기간 동안은 관련 법령에 의해 간접비 청구는 가능 하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간접비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동절기 공사가 발생 될 것을 판단이 가능하므로 지연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공사기간 연장에 소요된 현장관리비는 상호간의 합의 하에 별도의 지급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가 발생한 비용 인정
  -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그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사례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투입된 간접비용에 대해 인정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 민간투자비 청구 사례는 문화재 조사 및 시굴조사에 따라 공기가 연장된 것이 총 민간투자비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공사기간 연장기간 동안의 직접공사비 추가액을 총 민간투자비 증액사유로 삼지 아니한 채 간접공사비만을 증액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표 2-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

구분	사 건 번 호	신청인/피신청인	판결 요지
①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인정 여부	제08111-005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태영건설 외 2</li> <li>• 피신청인 : 포항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처의 예산확보 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판단</li> <li>•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 중 일부 지연된 공기가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함.</li> <li>• 간접비 청구금액 중 하도급 간접비용 불인정</li> </ul>
	제08111-014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국제산업</li> <li>• 피신청인 : 용인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보다 늘어난 연장 공사기간이 피신청인의 사유로 늘어난 일수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li> <li>• 연장된 기간 중 동절기 및 설계변경, 미계약기간은 불인정함.</li> <li>•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혼시적인 규정이거나 계약담당공무원에 책무를 지우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계약금액조정을 거부당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li> </ul>
	제09111-02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도급사</li> <li>• 피신청인 : 발주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총 연장기간 16개월 가운데 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11개월로 봄이 타당함.</li> </ul>
	제04111-006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대웅건설 외 1</li> <li>• 피신청인 : 대한민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미확보, 동절기 공사중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은 인정함.</li> <li>• 그러나,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연일수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지연일수는 불인정함.</li> <li>• 장기간에 걸친 공사의 경우 동절기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간 중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공기를 정하였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들 또한 이와 같은 공사중지 기간을 당연히 예상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았음.</li> </ul>
	제08111-004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도급사</li> <li>• 피신청인 : 발주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차수별 공사계약에 각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에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담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li> <li>• 간접노무비 인원 중 겸직 직원 불인정</li> </ul>

[자료] 대한상사중재원(2012, 2009, 2005, 2006), 건설중재 판정사례집;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문 재구성

[표 계속]

구분	사 건 번 호	신청인/피신청인	판결 요지
①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인정 여부	중재 제08111-0105호	• 신청인 : (주)000건설 • 피신청인 : 발주처	• 동절기 공사정지 관련 하여 신청인들이 공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미리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부정 • 구매지연에 대한 간접비 청구와는 별도로 피신청인에 의한 공사정지기간 동안의 금융손실비용 청구 가능
	중재 제09111-0078호	• 신청인 : 도급사 • 피신청인 : 발주처	• 설계변경으로 인한 1차 연장기간은 불인정 • 공사중지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중지기간 중 일부공사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80%만 인정함.
	중재 제09111-0143호	• 신청인 : 000산업 플랜트 • 피신청인 : 발주처	• 업무중지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신청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중재 제09111-0108호	• 신청인 : 도급사 • 피신청인 : 발주처	•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의 합의에 현장관리비에 관한 별도의 지급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장관리비는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
② 공기지연 단축을 위한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중재 제02111-0004호	• 신청인 : A사 • 피신청인 : B사	• 피신청인의 공사중단요청에 따라 늘어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투입된 추가 장비 등 투입비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③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 민간 투자비 청구	중재 제09211-0005호	• 신청인 : 도급사 • 피신청인 : 발주처	• 실시협약 제91조 제2항에 의해 공사기간이 문화재 조사 및 발굴에 따라 연장된 경우라면 총 민간투자비의 변경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 신청인이 공사기간 연장기간 동안의 직접공사비 추가액을 총민간투자비 증액사유로 삼지 아니한 채 간접공사비만을 증액사유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료] 대한상사중재원(2009, 2005, 2006), 건설중재 판정사례집;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문 재구성

### 가. 공기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여부

- 1) 중재 제08111-50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중 하도급업체 공사기간 연장비용 불인정

#### □ 주요내용

-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은 총 공사

기간과 총 공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착공일, 준공일, 공사금액을 특정하여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함.

- 피신청인은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은 차수계약별로 연장됨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간접비는 차수별 공사계약 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접비를 추가요청은 부당하다는 입장

#### □ 판결요지

- 이 사례의 공기의 지연은 피신청인의 예산확보 지연 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나 신청인도 세부공정 계획을 준비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협의 요청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늦장을 부린 잘못이 있기에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간접비 청구는 불인정함.

### 2) 중재 제08111-0146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의 구체적 범위를 인정

#### □ 주요내용

- 이 사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후 3차로 나누어 시공 되었고, 공사금액은 9차례에 걸쳐 계약 변경 및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됨.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및 최종적으로 정한 전체공사대금에는 신청인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 청구하는 추가간접비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임.

#### □ 판결요지

-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간접비 등에 대하여 실비범위 내에서 공사계약금액에 조정이 필요함.
- 공사기간 중 늘어난 연장공사기간 중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늘어난 일수에 해당하는 간접비 등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 3) 중재 제09111-0210호

#### □ 주요내용

- 공사의 당초 계약 금액에서 5차에 걸친 계약금액변경이 이루어졌으나 공사기간연장에

수반하여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주요쟁점

- 연장된 공사기간 중,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간접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과 대상 및 금액의 의견이 불일치

□ 판결요지

-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총 연장기간 16개월 가운데 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11개월로 봄이 타당함.

4) 중재 제04111-0068호

□ 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설계서를 제공하고 시공자가 그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의 형태
- 공사계약은 7차에 걸쳐 총 공사기부금액의 변경 및 공사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졌고, 피신청인의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2차에 걸쳐 각각 당해 연도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신청인들은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비용 지출하게 됨.

□ 주요쟁점

- 공급계약사의 부도, 피 신청인의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으로 인한 공기지연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신청인이 지출하게 된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여부

□ 판결요지

-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시행하고 있는바 신청인들 또한 공사 중지기간을 당연히 예상하여 시설공사도급계약체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공사 중지명령으로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신청인들이 주장한 피신청인의 예산 미확보, 잦은 설계변경, 환경영향평가심의 등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인정함.

#### 5) 중재 제08111-0043호

##### □ 주요내용

- 이 사례는 장기계속계약으로 7차에 걸쳐 연장되어 공사가 완공 되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중단되거나 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과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을 요청함.
- 피신청인은 차수별 계약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산정된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비용은 각 공사비에 반영 되었다고 주장함.

##### □ 주요쟁점

- 신청인이 구하는 추가비용 중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인정 범위

##### □ 판결요지

- 신청인이 추가비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국가계약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 “실비”라고 보기 어려워 추가 공사비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 간접노무비 중 임원 및 직원의 겸직은 불인정

#### 6) 중재 제08111-0105호

##### □ 주요내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도로 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후 9차례에 걸쳐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어 공사 연장 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 공사정지 기간에 대한 금융 손실비용을 청구함.

##### □ 주요쟁점

- 00시계 추가공사 부분, 용지보상 지연 관련,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부분에 대한 간접비 인정 여부
- 동절기 공사정지 관련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금융손실비용 청구 가능 여부

□ 판결요지

- 동절기 공사정지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공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미리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부정함.
- 그 외에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장된 부분에 대해 간접비는 인정함.
- 구매지연에 대한 간접비 청구와는 별도로 피신청인에 의한 공사정지기간 동안의 금융손실비용 청구 가능함.

7) 중재 제09111-0078호

□ 주요내용

-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이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연장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지출한 추가비용이 인정되는 범위

□ 주요쟁점

-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청인의 추가비용 지급책임 범위

□ 판결요지

- 공사 중지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중지기간 중 일부공사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80%만 인정함.

8) 중재 제09111-0143호

□ 주요내용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풍력 현장설치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풍력발전소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청함.
- 그 후 피신청인은 공사의 재개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추가발생비용의 지급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함.

## □ 주요쟁점

- 신청인이 지급한 추가발생비용의 부담 책임과 지급의 범위

## □ 판결요지

- 업무중지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신청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9) 중재 제09111-0108호

## □ 주요내용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최초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공사범위의 확정을 요구하며 2개월간 공사를 중단함.
- 그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잔여공사에 관한 합의를 하고 공사를 재개 하였으나 잔여공사 시행에 소요된 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에 소요된 현장관리비의 중복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김.

## □ 주요쟁점

- 잔여공사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과 공사시간 연장에 소요된 현장관리비의 중복 여부

## □ 판결내용

-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의 합의에 현장관리비에 관한 별도의 지급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장관리비는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함.

## 나. 공기지연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 1) 중재 제021110004호. 공기지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추가공사비 지출에 대한 인정

#### □ 주요내용

- 이 공사는 7차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별로 공사금액과 착공일, 준공일이 특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도면의 미 작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사가 중단되어 신청인의 간접비가 발생함.
- 그 후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공기의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시스템을 추가로 투입, 당초 설계 내역서에 없는 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 □ 판결요지

- 피신청인의 공사 중단요청에 따라 늘어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투입된 추가 장비 등 투입비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 민간투자비 청구

### 1) 중재 제09211-0005호

#### □ 주요내용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00중학교 외2교 신축 및 시설유지관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한 문화재 조사 및 발굴기간의 연장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됨.

#### □ 주요쟁점

- 문화재 조사 및 발굴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공사연장된 것은 총 민간투자비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의 간접공사비에 관한 청구 부분

### □ 판결요지

- 문화재 조사 및 발굴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00초등학교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총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총 민간투자비가 당연히 증액민간투자비의 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사비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가 위와 같이 된다고 할 수 없음.
- 규정한 취지는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 의하여 실제로 현장소장, 공사, 공무, 관리직원 등이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야만 공사비 변경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그 급여 상당액이 지출되었으리라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신청인이 위 공사기간 연장기간 동안의 직접공사비 추가액을 총 민간투자비 증액사유로 삼지 아니한 채 간접공사비만을 증액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 실시협약 제13조 제7항 단서가 공사비의 변경에 관하여서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 의하여 실제로 현장소장, 공사, 공무, 관리직원 등이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야만 공사비 변경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그 급여 상당액이 지출되었으리라고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신청인이 위 공사기간 연장기간 동안의 직접공사비 추가액을 총 민간투자비 증액사유로 삼지 아니한 채 간접공사비만을 증액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 3. 법원 판결사례

### 가. 판결사례 요약

-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법원 판결사례 30건(1심 사건 기준)을 분석한 결과, ① 차수별 계약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정범위, ③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기 및 가능여부, ④ 공사정지 각 사유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에 관한 다툼, ⑤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이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등 5

분류로 나눌 수 있음.

- 차수별 계약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사례는 소송청구사유에 대한 건설사와 발주처간의 귀책이 주된 쟁점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건설사는 발주처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연장된 공사기간 내의 차수별 계약에서 간접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대부분 원고 승소)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정 범위 사례는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한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범위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이라고 판시함.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기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에 관한 사례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기와 그 가능 여부에 대해 주된 쟁점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연장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내용 조정을 완료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공사정지 각 사유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에 관한 다툼에 관한 사례는 각 공사 정지 사유에 따라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된 쟁점으로, 대부분 실비 범위 내임.
  - 발주기관의 공사정지로 인한 공기 연장은 공사정지로 인해 증가되는 공사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간접비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 하여 지급함.
  - 계속비공사계약으로 사업비부족에 따른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비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이 변경 되었을 경우, 당사자 합의 하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졌으며 추가로 공사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공동수급업체 대표사 청구금액에 개별사의 인건비 포함 유무에 관한 사례는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이 공동수급체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공사채권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정산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간접노무비 청구를 인정함.

표 2-4. 분석대상 법원 판결사례

No.	사건번호			판결 결과	판결 선고일	공종	계약방식
	1심	2심	3심				
1	2002가합3251	2004나666		피고 일부패소	04.06.22.	토목	-
2	2003가합8460	2005나4190	2006다39645	피고 승소	06.10.13.	기타	장기계속
3	2006가합50739			피고 승소	08.10.15.	토목	장기계속
4	2006가합12051	2008나35748		피고 일부패소	08.11.26.	토목	장기계속
5	2008가합18584	2009나6585		피고 패소	09.10.02.	토목	계속비
6	2008가합20471			피고 일부패소	09.11.21.	토목	계속비
7	2008가합9084	2009나5420	2010다57565	피고 일부패소	10.11.11.	건축	장기계속
8	2009가합11282	2012나3301		피고 승소	12.05.25.	건축	장기계속
9	2009가합11576	2010나76841	2011다45989	피고 패소	12.06.28.	토목	계속비
10	2012가합103053	2013나11261		피고 승소	13.06.13.	토목	장기→계속비
11	2013가합1496	2013나2017290		피고 승소	13.07.26.	토목	계속비
12	2012가합22179	2013나2020067		피고 일부패소	13.08.23.	토목	장기계속
13	2012가합26607	2013나2019081		피고 일부패소	13.08.23.	토목	장기계속
14	2012가합100658			피고 패소	14.07.10.	토목	장기→계속비
15	2012가합8524	2013나2032138		피고 패소	13.11.22.	토목	장기계속
16	2012가합20183			피고 승소	13.12.03.	토목	장기계속
17	2011가합107011	2012나80752		피고 일부패소	12.09.21.	토목	장기계속
18	2011가합2286	2013나11869	2014다185	피고 일부패소	13.11.08.	토목	장기계속
19	2005가합7150			피고 패소	06.12.07.	토목	-
20	2005가합77683	2006나63688	2007다29508	피고 승소	06.06.20.	기타	-
21	2007가합6962			피고 일부패소	10.08.26.	건축	계속비
22	2009가단30111			피고 일부패소	11.06.01.	건축	장기계속
23	2010가합9514	2012나6578	2013다48968	피고 일부패소	12.06.21.	토목	장기계속
24	2010가합1384			피고 일부패소	12.09.28.	토목	-
25	2010가합20200	2012나26802	2013다28001	피고 일부패소	13.02.20.	건축	-
26	2011가합69997	2014나2009203		피고 일부패소	14.02.07.	토목	계속비
27	2012가합5525	2014나2007290		피고 일부패소	14.07.24.	건축	장기계속
28	2012가합5919	2013나2330		피고 일부패소	13.06.27.	건축	장기계속
29	2013가합10587	2014나2007276		피고 일부패소	14.01.17.	건축	장기계속
30	2012가합21945			피고 일부패소	14.08.14.	토목	장기계속

- 총 법원 소송 판례 30건 중 피고 승소 판례는 7건으로(23.33%), 현재 2심 진행 중인 사건 6건(피고 승소 2건, 패소 4건)의 경우, 1심 판례 결과를 기준으로 반영함.

표 2-5. 법원 소송 판례 최종결과

구분	판결 사례(건)			
	합계	1심 종결	2심 종결	3심 종결
계	30	30	21 (6)	7 <sup>1)</sup>
피고(발주처) 승소	7	7	5 <sup>2)</sup> (2)	2
피고(발주처) 패소	23	23	16 (4)	5

주) ( )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건수임.

#### □ 피고 대상별 현황

- 총 법원 소송 판례 30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15건(50.0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부산하기관 11건(36.67%), 정부 3건(10.00%), 기타 1건(3.33%) 순임.

표 2-6. 피고 대상별 판례 현황

구분	판결 사례(건)				비고
	합계	1심	2심	3심	
계	30	30	21 (6)	7	
정부	3	3	3 (2)	1	
정부산하기관	11	11	7 (3)	1	
지방자치단체	15	15	10 (1)	5	
기타	1	1	1	-	

주) ( )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건수임.

#### □ 공사기간 연장 발생사유

- 공사기간 연장 발생 사유로는 선행공사이연, 기본계획 변경, 발주처의 예산부족, 공사중단 지시, 공사용지 미확보, 민원 발생, 지장물 보상지연, 문화재 시굴조사 등 8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소송 건당 발생사유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으며, 중복 포함하여 분석(발생사유 불분명 제외)

1) 3심 종결 7건의 경우 모두 1심 혹은 2심 판결에 따른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심리불속행기각)

2) 피고 승소 5건 중 3건은 현재 2심 진행 중

표 2-7. 법원 판례의 공사기간 연장 발생사유별 현황

No.	발생사유								
	선행공사 지연	기본계획 변경	예산부족	공사중단 지시	공사용지 미확보	민원발생	지장물 보상지연	문화재 시굴조사	비고
1	○	○			○				
2	○	○		○					
3	○	○	○						
4	○			○					
5	○								
6		○							
7			○		○	○			
8		○							
9				○			○	○	
10 <sup>1)</sup>									
11									
12			○						
13			○						
14		○							
15		○							
16									
17		○		○		○			
18									
19		○		○	○				
20	○		○						
21			○		○				
22				○					
23					○	○			
24		○			○				
25									
26									
27		○	○						
28		○							
29				○					
30		○	○		○				
계	6	13	8	7	7	3	1	1	

1) 판결문에 공사기간 연장 발생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판례는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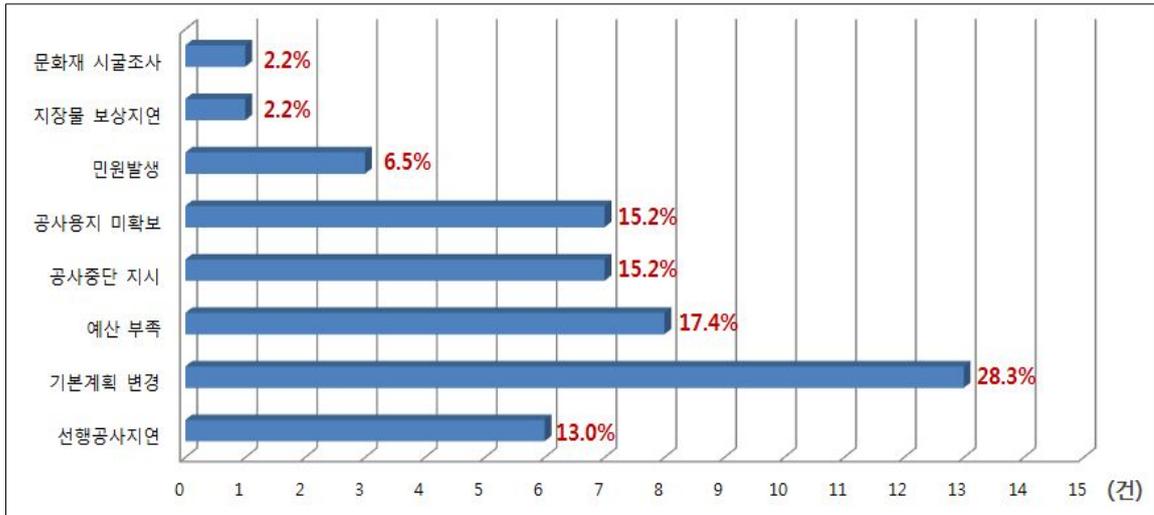


그림 2-1. 공사기간 연장 발생사유별 발생건수

□ 주요 쟁점별 현황

- 쟁점유형으로는 청구시점, 변경계약 시 간접비 포함여부, 합의(서), 청구항목, 공백기간의 공사기간 포함여부, 계약해지 후 간접비 청구, 공동수급사의 개별청구, 채권 소멸시효 등 8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송 건당 분쟁사유가 복수로 존재할 수 있고, 중복 포함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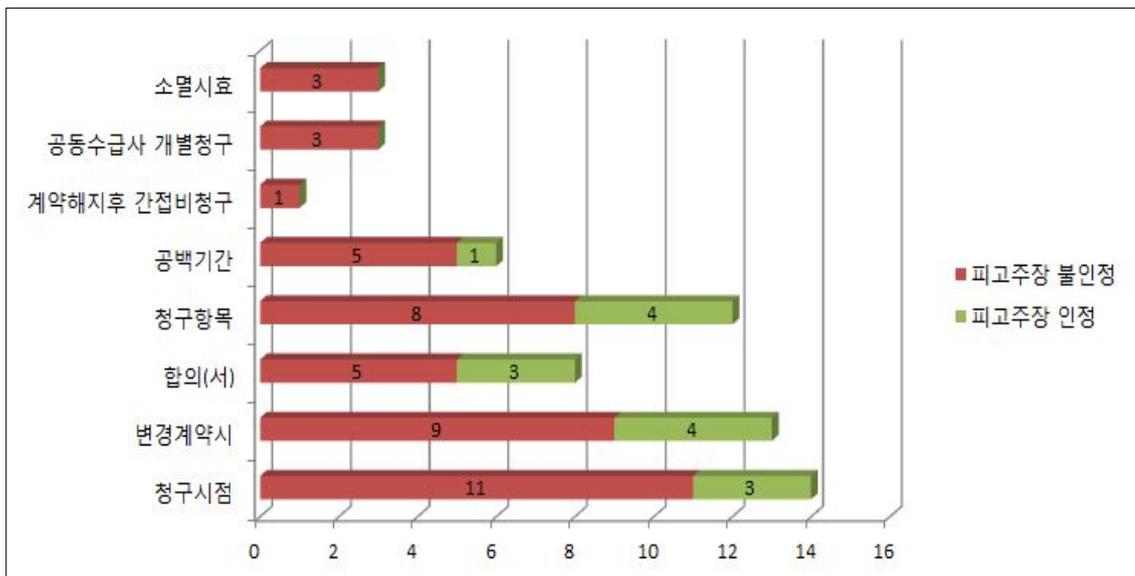


그림 2-2. 공사기간 연장 쟁점별 발생건수

표 2-8. 법원 소송 관례의 쟁점별 현황

No.	쟁점									비고
	청구시점	변경계약시 간접비 포함여부	합의(서)	청구항목	공백기간	계약해지후 간접비청구	공동수급사 개별청구	소멸시효	계	
1				X <sup>1)</sup>		X				
2		O <sup>2)</sup>	O		O					
3		O	O							
4	X		X		X					
5							X	X		
6				X						
7	X									
8		O								
9	X	X	X	O						
10	O	O	O							
11	O									
12	X	X	X							
13	X			O						
14	X	X		X	X		X	X		
15	X			X	X			X		
16	O									
17			X	O	X					
18				X, O						
19		X								
20 <sup>3)</sup>										
21	X									
22	X	X								
23	X									
24		X								
25	X									
26		X	X	X			X			
27				X						
28				O						
29	X	X								
30	X	X		X	X					
불인정	13	9	5	8	5	1	3	3	47	
인정	3	4	3	5	1	0	0	0	16	
계	16	13	8	13	6	1	3	3	63	

1) 피고주장 불인정

2) 피고주장 인정

3) 8개 유형의 주요 쟁점유형 외 기타사유 분석에서 제외

## 나. 쟁점별 분석

### 1) 청구시점

#### □ 유형 및 쟁점

- 청구시점은 법원 판단 내용에 따라 크게 4개의 판단으로 나눌 수 있음.
  - ① 차수별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 ② 최종 기성대가 지급전이면 가능
  - ③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완료해야 함.
  - ④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표 2-9. 쟁점별 분석-청구시점

사건번호	법원 판단 내용	세부의견
2008가합9084 2012가합20183 2010가합9514	●차수별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완료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명시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를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로 규정
2009가합11576 2012가합22179 2012가합26607 2012가합100658 2012가합8524 2009가단30111 2010가합20200 2013가합10587	●최종 기성대가 지급전이면 가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 :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완료 ●이행의 착수 전까지 '실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 최종 기성 수령 전까지 청구하면 적법하다 판단
2006가합12051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 전 완료해야 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 :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완료 ●계약내용 변경의 범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도 포함된다고 판단
2012가합103053 2013가합1496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계약 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명시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를 계약기간 연장신청시로 규정했었음.

#### □ 법규 개정 전 · 후

- 적용법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6조(계약기간의 연장)
- 개정 전 (2010.11.30.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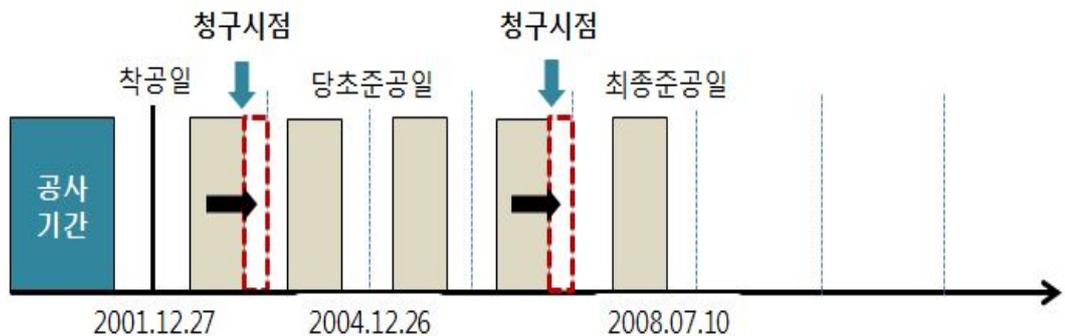
- ① 계약상대자는 (중략)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함.
- ④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
- 개정 후
  - ① 계약상대자는 (중략)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④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중략)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
  -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 결과분석

-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적법한 조정신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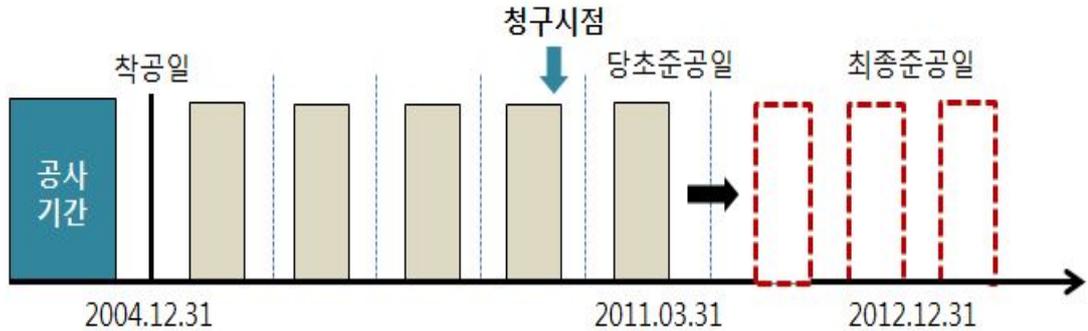
□ 청구시점 해석표

- 2008가합 9084판결
  - 각 차수별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판결
  - 총공사기간의 기간과 상관없이 각 차수별 준공대가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여 각 차수별 연장기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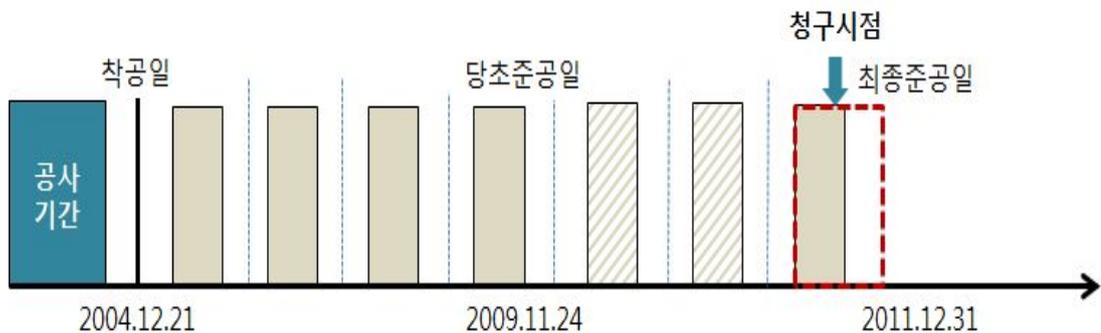
○ 2012가합 22179판결

- 각 차수의 연장과 상관없이 총 공사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 산정
-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 발주기관의 승인 등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있으면 충분
- 총 공사 기준으로 한 최종 준공대가 지급전 계약금액 조정신청 마치면 적법한 절차로 인정



○ 2012가합 26607판결

- 당초 총 공사기간 이후, 연장 발생한 차수공사에 대해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한 간접비 인정



2) 변경계약 시 간접비 포함여부

□ 유형 및 쟁점

- 변경계약 시 간접비 포함여부는 법원 판단 내용에 따라 상반된 판례가 있음.
  - ① 변경계약 시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 ② 변경계약 시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차수별 계약 또는 변경계약 시 변경된 공사금액에 간접비 부분(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각각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음.

표 2-10. 쟁점별 분석-변경계약 시 간접비 포함여부

사건번호	법원 판단 내용	세부의견
2003가합8460 2006가합50739 2009가합11282 2012가합103053	•변경계약 시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변경 내역서에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동 항목의 금액이 증가되었음은 원고가 청구하는 간접비가 이미 변경계약 시 반영되었다고 판단
2009가합11576 2012가합22179 2012가합100658 2005가합7150 2009가단30111 2010가합1384 2011가합69997 2013가합10587 2012가합21945	•변경계약 시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직접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간접비만 계약금액을 변경하는데 반영하였을 뿐,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된 간접비는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 □ 결과분석

- 변경계약서의 경우 향후 공사할 계약금액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의 경우, 이미 지출한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것임.
- 설계변경(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및 물가변동(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에도 간접비 항목이 변경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직접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임.
- 변경계약 시 내역서 상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 항목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의 변동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금액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간접비의 변동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와는 그 성격이 다름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변경계약에 의한 간접비의 변동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와는 엄밀히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3) 합의(서)

#### □ 유형 및 쟁점

- 합의(서)는 법원 판단 내용에 따라 상반된 판례가 있음.
  - 합의서 문구 :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
  - 합의서 작성만으로 간접공사비 청구권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건설사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보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중시하여 효력의 범위를 축소시킴.)
  - 합의서의 문언에 기초하여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효력 인정)
- 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결론이 상반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 사건 공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른 결과임.

표 2-11. 쟁점별 분석-합의(서)

사건번호	법원 판단 내용	세부의견
2008나35748 2011다45989 2013나2020067 2011가합107011 2014나2009203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당사자들의 행위를 기초로 하여 의사를 추단하는 방법으로 합의서의 효력 범위를 축소시킴(합의서의 내용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행위에 비추어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2006다39645 2006가합50739 2013나2017290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	●합의서의 문언에 기초하여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경우(건설사가 계약내용에 이의 없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비용지급 청구원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

#### □ 결과분석

-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말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으로 보이며 채권1)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함.
- 합의서의 존재 여부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1) 채권 : <법률>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4)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항목

## □ 불합리한 금액 청구 사례

## ○ 사건번호 2002가합3251

- 원고가 청구한 직원숙소 관리비는 계약예규 상 명시된 간접비 항목의 ‘경비’ 항목 중 ‘지급임차료’ 정도임.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말하는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라고 정의함.(제10조 제3항 제9호)

- 직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건물이라 할 수 없어 위 아파트관리비를 지급임차료로 산정할 수 없음.

## ○ 사건번호 2008가합20471

-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동 기간 동안 실제 투입된 인원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동 공사구간 내 타기관이 시행한 공사에 투입한 인원(3명)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제외되어야 함.

## ○ 사건번호 2012가합100658

- 책임감리원 또는 감리단장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도 관련 법 규정<sup>1)</sup>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한 조정신청

- 원고들은 적정 인원 배치를 위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 현장 인원수를 변경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투입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 모두 인정됨.

## ○ 사건번호 2012가합8524

- 피고는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현장관리인원을 기초로 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항목 모두 인정됨.

## ○ 사건번호 2013나11869

- 산출내역서 상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0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실제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역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간접공사비에 설계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1)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국토교통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 4장 제54조 제1항 및 제12항 등 참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용은 공사기간 연장을 직접원인으로 한 간접공사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사건번호 2011가합69997
  - 간접노무비 대상자인지 여부는 현장소장, 품질관리자, 현장경리 등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사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사건번호 2012가합21945
  - 피고는 원고가 관련 법령상 꼭 필요한 근로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인력을 과다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투입인력은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된 노무자를 대상으로 급여명세표와 급여 대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 법적 명시된 간접비 항목

표 2-12. 법적 명시된 간접비 항목

항목	산출방법	세부항목
간접노무비	실비	
경비	실비(직접계상)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비율(승률계상)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산출내역비율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증수수료	실비	계약보증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산출내역비율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76조 기준

#### □ 판례상 간접비 인정항목 및 범위

- 건설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한 경우 모두 인정
- 건설사가 간접공사비를 어떤 경우 구체적으로 몇 % 인정받는지 유형화시킬 수 없음.
- 간접공사비 중 동일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안별 구체적 인정범위가 차이 나게 되어 있음.
- 건설사 스스로가 지출한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입증하는지에 따라 구체적 인정범위가 차이남.
  - 예) 건설사가 간접공사비 중 간접노무비 100% 인정받았다면 관련 입증자료 모두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 70%만 인정받았다면 나머지 30%에 관한 입증자료 미제출하였거나, 공사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

#### 5) 공백기간

##### □ 유형 및 쟁점

- 공백기간은 법원 판단내용에 따라 상반된 판례가 있음.
  -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의 계약이 성립되어야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
  -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 계약기간 사이의 공백기간 또한 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공사기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표 2-13. 쟁점별 분석-공백기간

사건번호	법원 판단 내용	세부의견
2006가합12051 2012가합100658 2012가합8524 2012가합21945	●차수별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건설사는 전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차수별 공사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인원을 배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백기간도 공사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음.
2003가합8460	●차수별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는데, 공백기간은 계약 체결 사실이 없으므로 동 권리 및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 □ 결과분석

- 차수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면서 총 공사기간에는 포함되는 공백기간 또한 전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장유지의 필수인원 배치가 불가피한 기간이며, 그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됨.

○ 공백기간 해석에 대한 관점의 차이

- 공사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 : 전체계약의 관점

⇒ 공백기간을 공사기간의 범위에 포섭시키기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전체계약과 차수별계약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판단

-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차수별 계약의 관점

⇒ 전체 계약상 총공사의 준공기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 차수별 공사계약기간의 합이 반드시 총공사계약기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차수별 공사계약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계약상의 총공사기간에는 포함된다는 의미로 판단

6) 계약해지 후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 유형 및 쟁점

○ 사건번호 - (1심 : 2002가합3251, 2심 : 2004나666)

- 선행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불가, 공사 일시정지 통보

- 총 공기의 50%를 훨씬 초과한 공사정지기간 발생(일반조건 제46조 1항에 의거)으로 인해 공사도급계약 해지함.

- 이후 공기정지기간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함.

□ 결과분석

○ 계약이 해지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증가되는 공사비용을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7) 공동수급사의 개별청구

□ 유형 및 쟁점

○ 사건번호 - (1심 : 2008가합18584, 2심 : 2009나6585), 2012가합100658

- 공동수급체 중 일부 구성원이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 사건번호 - 2011가합69997
  - 공동수급체 중 소외 회사들에 대한 간접비 지급 여부
- 결과분석
  - 사건번호 1심 : 2008가합18584, 2심 : 2009나6585)
    - 공동수급체가 갖게 되는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성원별로 따로 정산되는 것이므로 간접노무비의 지급 청구 가능함.
  - 사건번호 2012가합100658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조합의 통상 사무를 단독으로 집행할 권한이 있으므로(민법 제 706조 제3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한 계약금액 조정도 인정됨.
  - 사건번호 2011가합69997
    -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들로부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채권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한 소송신탁을 받아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도 포함되어야 함.

## 8) 채권 소멸시효

### □ 유형 및 쟁점

- 사건번호 - (1심 : 2008가합18584, 2심 : 2009나6585)
  - 공사금액 증액 직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3년이 경과된 후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간접노무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 사건번호 2012가합100658
  - 차수별 계약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간접비채권의 소멸시효 진행된다고 주장함.
- 사건번호 - (1심 : 2012가합8524, 2심 : 2013나2032138)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은 변경계약일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간접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결과분석

- 사건번호 - (1심 : 2008가합18584, 2심 : 2009나6585)
  - 단순히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증액만으로 원고의 간접노무비 채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간접노무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결
- 사건번호 - 2012가합100658
  - 총괄 계약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간접비채권은 소멸되지 않음.
- 사건번호 - 2012가합8524
  -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을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면, 이는 시효로 인해 소멸할 여지가 있는 독립적인 채권이라 볼 수 없음.
  - 나아가 3년의 기간을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의미라면, 간접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되지 않음.

다. 공기연장 추가비용 추정

- 공기연장 추가비용 추정은 선행조사와 판례분석을 비교하여 추정하였으며, 비교결과 선행조사와 판례분석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행조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발주기관별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판례는 위에서 분석한 공기연장 관련 판결사례를 분석하였음.

표 2-14. 선행조사와 판례분석 비교

구분	선행조사	판례분석(평균)
현장당 일일 손실비율	0.001% ~ 0.003%	0.0024%
현장당 평균 공기연장일	720일 ~ 1,013일	865일
공사금액 내 공기연장비용 비율	0.7% ~ 2.3%	2.076%
공기연장 발생비율	30.9% <sup>1)</sup>	32.7% <sup>2)</sup>

1) 이영환 외(2013),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2) 판결사례는 공기연장이 발생한 사례들을 취합한 것으로 발생비율은 해당 연구 수행 시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의 공기연장 발생비율을 참고함.

## 1) 선행조사 분석

## □ 분석의 개요

- 선행조사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실태조사(2012년 4월) 취합현장(295개) 중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으로서 공사정보가 명확한 현장(60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 공사금액 내 공기연장 추가비용 비율(선행조사)

- 공사금액 내 공기연장 추가비용 비율은 현장당 일일 손실비율 평균을 볼 때 지자체가 0.0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공기업이 0.00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현장당 평균 공기연장일은 공공기관이 1,013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지방공기업이 720일로 상대적으로 가장 짧음.
- 현장당 일일 손실비율 평균과 현장당 평균 공기연장일을 곱한 비율은 지자체가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공기업이 0.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15. 공사금액 내 공기연장 추가비용 비율(선행조사)

구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현장당 일일 손실비율 <sup>1)</sup> 평균(A)	0.002%	0.002%	0.003%	0.001%
현장당 평균 공기연장일(B)	966일	1,013일	750일	720일
C = A × B	1.9%	2.0%	2.3%	0.7%

[자료] 대한건설협회(2013.05) 공기연장 비용 분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공기연장 추가비용 추정

- 공기연장 추가비용(E)은 예산(D), 공기연장 발생비율(30.9%<sup>2)</sup>), 공기연장비용 비율(C)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음.

표 2-16. 공기연장 추가비용 추정(선행조사)

[단위 : 억원]

구분	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11년 총사업비관리대상공사 발주규모(D)	181,369	28,747	110,182	14,184	28,256
E = (D × 30.9% × C)	1,012	169	681	101	61

[자료] 대한건설협회(2013.05) 공기연장 비용 분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일일 손실비율 = (공기연장 추가비용 ÷ 계약금액 ÷ 공기연장 일수 × 100)

2)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2013, 이영환 외)

2) 판례 분석

□ 분석의 개요

- 판례분석은 공기연장 관련 판결사례 30건의 대상 중 분석이 용이하지 않거나, 분석결과가 크게 다른 사례를 제외한 20건의 사건으로 분석하였음.

□ 공사금액 내 공기연장 추가비용 비율(판례)

- 판례분석결과, 공사금액 내 공기연장 추가비용 비율은 현장당 일일 손실비율 평균을 볼 때, 0.0024%, 현장당 평균 공기연장일은 865일, 공기연장비용 비율은 2.076%로 나타남.
- 법원의 판결사례는 확정된 판결금액으로 분석한 결과를 적용하여 추정금액 산출 시 법원의 판결사례에서 산출된 공기연장 추가비용 비율을 적용하여 분석함.

표 2-17. 공사금액 내 공기연장 추가비용 비율(판례)

구분	법원 판례
현장당 일일 손실비율 평균(A)	0.0024%
현장당 평균 공기연장일(B)	865일
$C = A \times B$	2.076%

3) 공기연장 추가비용 추정

- 공기연장 추가비용(G)은 '14년 국토교통부 SOC 발주규모(F), 선행조사 공기연장 발생비율(30.9%)와 당 연구 보고서 실태조사 공기연장 발생비율(32.7%), 공기연장비용 비율(C)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14년 기준 SOC 발주규모를 대상으로 추정하였을 시 545억원 ~ 577억원의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표 2-18. 공기연장 추가비용 추정(판례)

구분	추정금액
'14년 국토부 SOC 발주규모(F)	85,000억원
$G = (F \times (30.9\% < X < 32.7\%) \times 2.076\%)$	545억원 ~ 577억원

## 4) 법원 판결사례 총괄표

- 법원의 판결사례 중 분석에 사용된 20건의 총괄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법원 판결사례는 최종 판결금액을 기준으로 분석
  - 공기연장 관련 30건 판례 중 분석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상값이 존재하는 판례 10건은 분석에서 제외

표 2-19. 법원 판결사례 공기연장비용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일]

No.	사건번호 <sup>1)</sup>	공종	계약금액	청구금액	판결금액	공기연장 발생일수	일일 손실비율
1	2002가합3251	토목	2,118	124	74	380	0.0092%
2	2003가합8460	기타	2,488	223		991	
3	2006가합12051	토목	5,772	387	387	978	0.0069%
4	2008가합18584	토목	136,178	192	150	1,210	0.0001%
5	2008가합20471	토목	86,468	3,237	1,935	1,584	0.0014%
6	2008가합9084	건축	36,920	3,318	49	1,292	0.0001%
7	2009가합11282	건축	17,737	203		478	
8	2012가합103053	토목	123,230	110		1,463	
9	2013가합1496	토목	16,581	123		208	
10	2012가합22179	토목	676,984	14,633	14,130	641	0.0033%
11	2012가합26607	토목	35,520	1,024	383	767	0.0014%
12	2012가합8524	토목	22,313	1,131	1,131	751	0.0067%
13	2012가합20183	토목	14,424	1,392		1,697	
14	2011가합107011	토목	16,522	387	158	235	0.0041%
15	2011가합2286	토목	23,020	2,296	113	1,370	0.0004%
16	2005가합77683	기타	1,961	216		1,032	
17	2007가합6962	건축	93,677	5,738	1,857	345	0.0057%
18	2010가합9514	토목	8,483	1,409	209	1,055	0.0023%
19	2012가합5525	건축	11,438	493	120	675	0.0016%
20	2012가합5919	건축	2,085	229	13	154	0.0040%
계			1,333,919	36,865	20,709	17,306	0.0472%
평균			66,696	1,843	1,035	865	0.0024%

1) 1심 판결 기준

## 제 3 절 공사기간 연장 관련 해외사례

### 1. 스피어린 및 앤티라이스 원칙

#### 가. 스피어린 원칙

##### □ 주요내용

- 1915년 미국의 스피어린(Spearin Const. Co)이란 작은 건설업체가 브루클린 해군기지의 드라이독 건설공사를 미국 정부로부터 수주하여 공사 수행도중 제방 범람으로 인해 공사현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
- 시공자는 이 제방의 범람으로 인해 공사현장의 침수피해에 대한 책임은 미국정부에 있다고 주장
-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현장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제방의 범람에 대한 사전대책이 소홀히 하여 발생한 홍수피해는 시공자 책임

##### □ 판결요지

- 시공자에게 도급인이 작성한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가 있다면,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의 결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 스피어린 원칙

- 스피어린 원칙이라 함은 설계·시공 분리계약에서 수급인인 시공자는 설계 및 그 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원칙
- 이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원칙이 스피어린 원칙이며 오늘날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 원칙을 적용되고 있음.

#### 나. 앤티라이스 원칙

##### □ 주요내용

- 미국정부는 라이스(Rice Const. Co.)와의 도급계약 체결 후 설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공사의 착수를 지체

- 라이스사는 이에 대하여 당초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비 및 공사의 완공이 지체됨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를 도급인인 미국정부에 청구

#### □ 판결요지

-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설계 변경된 부분의 공사에는 적정비용의 보전을 허가함.
-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사가 지체됨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연장비용)의 보전은 기각함.

#### □ 앤티라이스 원칙

- 이 원칙이 소위 라이스원칙인데 시공자뿐만 아니라 정부공무원들로 부터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
- 1967년 미국정부는 공공공사표준계약조건의 개정 시 이러한 라이스원칙을 배제
- 소위 앤티라이스원칙(Anti-Rice Doctrine)을 채택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추가공사비와 함께 그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기간 중 추가간접비, 즉 연장비용도 정부가 부담
- 우리나라도 앤티라이스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표 2-20. 해외 중재판정 비교

구분	스피어린 원칙	앤티라이스 원칙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피어린 원칙이라 함은 설계·시공 분리계약에서 수급인이 시공자는 설계 및 그 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원칙</li> <li>• 오늘날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이 원칙을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뿐만 아니라 정부공무원들로부터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li> <li>•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추가공사비와 함께 그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기간 중 추가간접비, 즉 연장비용도 정부가 부담</li> <li>• 우리나라도 앤티라이스원칙을 채택</li> </ul>

## 2. 해외 공사기간 연장 클레임 청구사례

### 가. 미국 고속도로 구조물 공사(highway culvert project)<sup>1)</sup>

#### □ 주요내용

- 어느 시공회사가 운용 중인 여러 현장 중에서 Highway Culvert Project에 245일간의 완공기한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보상 클레임을 청구하였는데 보상 항목 중 본사관리비를 「Eichleay Formular」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우
- Highway Culvert Project의 계약기간은 1979년 1월 1일부터 1982년 2월 1일까지로 가정
- 추가 현장관리비는 전체 계약이행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에서 1일 간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여기에다 지연기간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본사관리비를 Eichleay식을 적용하여 산정

#### □ 산출방식 - 「Eichleay Formula」

- 가장 신뢰성이 있는 공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정 공사에 할당되는 본사관리비를 해당 공사의 매출액이 시공자의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산출하는 방법
- Eichleay Formula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1) 해당 공사에 할당되는 본사관리비  
= 해당 공사의 매출액 x 시공자의 본사관리비 총액 / 시공자의 총 매출액
  - 2) 해당 공사에 할당되는 일당 본사관리비  
= 해당 공사에 할당되는 본사관리비 적용 기간
  - 3) 공사 지연(연장)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본사관리비  
= 해당 공사에 할당되는 일당 본사관리비

#### □ 추가 현장관리비 산출

- ① 추가 현장관리비 청구금액 : \$812,952
  - 간접공사비 = \$3,633,396
  - = 간접인건비(\$3,023,921) + 고정 자재비(\$141,949) + 고정장비비(\$180,619) + 경비(\$286,916)

1) 건설교통부(2006), 해외건설사업의 클레임 사례분석을 통한 클레임 대응방안

- 계약이행기간 = 1,095일(1979.1.1. ~ 1982.12.31.)
- 1일 현장관리비 = 간접공사비 총계 ÷ 계약 이행기간 = \$3,633,396 ÷ 1,095일 = \$3,318/일
- 청구금액 = 1일 현장관리비 x 지연기간 = \$3,318/일 x 245일 = \$812,952
- 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본사관리비 청구금액 : \$472,850
  - 시공자 매출 총액 : \$104,558,396
  - 시공자 본사관리비: \$15,525,693
  - Eichleay Formula
    - 1) \$15,025,881 ÷ \$104,558,396=14%
    - 2) 14% x \$15,525,693= \$2,173,597
    - 3) \$2,173,597 ÷ 1,126일 = \$1,930/일
 ⇒ 청구금액 : \$1,930/일 x 245일 = \$472,850
- ③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청구금액 : \$1,285,802 (①+②)
  - 추가 현장관리비 청구금액 : \$812,952
  - 본사관리비 청구금액 : \$472,850

#### 나. 수단 도로공사(Kosti-Tendelti road project)<sup>1)</sup>

##### □ 주요내용

- 연장 116km 수단 도로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청구사례로서 당초 1,146일인 공사기간이 276일 연장되며 발생
- 사업비 재원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DB)이고, 발주자는 수단<sup>2)</sup>

##### □ 산출방식 - 「Hudson Formula」

-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식이며 이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사 관리비 효율이 사전에 합의되어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1) 현학봉(2012), 계약관리와 클레임, 씨플러스 인터내셔널

2) 계약금액단위 LS는 수단달러로서, 당시 적용환율은 1 USD당 2.525 LS이다.

- Hudson Formula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본사관리비(Extended Home office Overhead)

$$= \text{본사관리비율(H.O.Percentage)} \times \frac{\text{계약금액}}{\text{계약기간}} \left( \frac{\text{ContractSum}}{\text{ContractPeriod}} \right) \\ \times \text{공사지연기간(Period of Delay)}$$

□ 추가 현장관리비 산출

- 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LS 30,067,628

- 추가관리비용: LS 13,297,773

- 작업팀 및 장비대기비용: LS 6,683,582

- 하수급인 클레임: LS 300,000

- 추가자재 및 하수급인 추가비용: LS 6,274,089

- 금융비용: LS 3,512,184

- ② 현장관리비: LS 11,279,976

- 계약이행기간 : 1,146일(1987.7.12.~1990.8.31.)

- 1일 현장관리비 = LS 46,836,419 ÷ 1,146일 = LS 40,869.48/일

- 추가 현장관리비 = LS 40,869.48 x 276일(지연기간) = LS 11,279,976

- ③ 본사관리비 : 시공자는 본사관리비 산출근거로 계약문서에 Schedule NO.VII로 첨부된 주요 공종별 산출내역을 이용하였으며, 보상금액은 산출내역서에 기술된 주요 공종별 관리비의 평균치를 구한 후 Hudson식에 적용하여 산출

- 본사관리비 = 17.38% x  $\frac{LS38,489,264.70}{915\text{일}}$  x 276일 = LS 2,017,796.55

다. 두바이 항만공사(Jebel Ali new container terminal stage 1, MCC2 project/Dubai)

□ 주요내용

- 두바이 항만공사로서 발주자가 제공해야 하는 해상구간 기초 목적물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38일(1.27개월)동안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한 경우



□ 추가 현장관리비 산출

- ①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청구금액: AED<sup>1)</sup> 7,718,679

표 2-21. 두바이 항만공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내역

구분	금액(AED)	비고
• 직접비 추가비용(해상장비 대기비용)	5,145,539	
• 간접비 추가비용		
1.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546,185	
2. 현장관리자 급여 및 지출비용	1,143,645	
3. 현장 제경비	883,310	
합계	7,718,679	

- ②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AED 546,184.72

표 2-22. 두바이 항만공사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구분	금액(AED)	비고
• 계약적 제공사양	515,676.15	
• 감독 숙소관리비	5,776.00	
• 감독 경비	7,507.71	
• 감독 장비비	2,307.15	
• 감독 고용인력	14,917.71	
합계	546,184.72	

- ③ 현장관리자 급여 등: AED 1,143,645

표 2-23. 두바이 항만공사 간접노무비 청구내역

구분	단가(월)	수량	금액(AED)
직원	한국인	526,855	
	필리핀&인도	95,700	
관리자	한국인	226,953	
간접	사무실 직원	51,000	
합계		900,508	1.27
			1,143,645

1) 아랍에미리트의 화폐단위로서, 1 USD=3.6 AED(Arab Emirates Dirham)

- ④ 현장 제경비: AED 883,308
  - 식대 등 23개 세부 경비항목의 월 평균 비용 = AED 695,520
  - 지연일수 38일(1.27개월)의 추가비용 = AED 695,520 x 1.27개월 = AED 883,308
- ⑤ 본사관리비 및 이윤 : 본 사례 공사는 산출내역서에 별도의 본사관리비 및 이윤 비목이 없었으므로, 추가비용 산정 시 본사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지 않았음.

## 라. 외국 고속철도 건설사업

### 1) 일본의 신칸센 건설사업

- 동경에서 대판까지 515km 구간으로 1959년 4월 노반공사가 착공하여 5년 6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
- 용지매수는 공사착공부터 공사 준공 10개월 전인 1964.1월까지 용지매수가 진행됨으로 인해 공사추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됨.
-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교량을 재설계하고 철근과밀에 따른 시공 및 품질 상의 문제로 인해 설계검증을 하는 등의 공기지연사항과 지질조사 미흡, 노선 변경 등의 주요한 설계 결함사항 등도 발생하지 않았음.
- 기술적인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아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도카이도 신칸센 개통

### 2) 독일의 ICE 고속철도

- 1992년 하노바와 베를린을 잇는 264km의 제2의 ICE(Inter City Express) 고속철도 신설 건설사업
- 선정된 노선의 일부가 철새 도래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류보호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으로 인해, 건설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 보호방벽을 쌓아 새들의 보호 조치 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97년 개통에서 98년 개통으로 1년의 공사기간 연장을 초래하였고 공사비 증액도 이루어짐.

### 3) 프랑스 TGV 지중해선

- 바롱스에서 바르세이유를 잇는 TGV 지중해선 건설사업의 연장 295km구간 건설에 대한 논의가 1989년부터 시작
- 예정된 노선에 기념물, 유적 등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튀베롱 국립공원 지대의 훼손이

우려되면서 사업공사가 1992년 10월에야 협의가 이루어짐.

- 공사 착수 전 까지 30개월 이상의 협의, 2000회 이상의 협의회 등을 거치고 1994년 총리의 승인을 거쳐 1995년 9월 착공이 이루어짐.

표 2-24. 외국 고속철도 건설사업 공기지연사유 비교

구분	공기지연사유	비고
신칸센(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 미 매수</li> <li>• 교량설계</li> <li>• 도심통과구간의 소음진동</li> </ul>	
ICE(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류보호구역 통과에 따른 설계변경</li> <li>• 조류 보호벽 설치</li> </ul>	
TGV(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물, 유적 통과 구간에 대한 노선 변경</li> <li>• 국립공원 통과구역의 훼손 우려에 따른 협의</li> </ul>	

### 3. 해외사례 특징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추가비용에 대하여 공통점은 현장관리비, 본사관리비 및 이윤 항목에 관한 것임.
- 먼저 사례의 현장은 모두 현장관리비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현장관리비용 총액을 집계한 후, 이를 전체계약기간으로 나누어 1일 현장관리비를 산출하고, 산출된 1일 현장관리비에 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청구함.
- 본사관리비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과 본사관리비율 및 지연기간에 따른 시간의 함수방식으로 산정

표 2-25. 해외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 비교

구분	해외사례	우리나라
현장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현장관리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지연기간을 곱하여 보상금액 산출</li> <li>• 실질적인 검토는 지연기간에 관한 공정 분석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지연 기간을 산정하고, 해당기간 동안의 간접노무비, 현장경비를 실비로 산출</li> <li>• 각종보험료는 간접노무비와 현장경비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의 비목 비율로 적용</li> </ul>
차이점	• 상대적으로 간편함	• 시간과 노력이 과다 요구됨
본사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의 함수방식 적용(Hudson formula 등)</li> <li>• 현장관리비 청구금액과 연동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관리비 청구금액에 산출내역서 비목 비율 적용</li> <li>• 현장관리비 청구액에 연동됨</li> <li>• 본사관리비의 과소산출</li> </ul>
차이점	• 합리적 수준의 보상금액 반영	• 추가비용의 과소 반영
이윤	• 반영하지 않음	• 반영근거에 따라 계산되고 있으나, 적용금액은 낮음

#### 4. 기타 해외 공사기간 연장관련 연구

- 해외의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연구 문헌을 고찰한 결과,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 일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중 일부만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이외에도 대부분 해외 연구는 공사기간 연장 발생 요소 및 원인 분석에 관한 것임.

표 2-26. 해외 공사기간 연장관련 연구

연구자	제목	주요 내용
Braimah 외 (2009)	Consultants' Perceptions on Construction Delay Analysis Methodolo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지연분석은 복잡다단한 업무임에도 적산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문제</li> <li>• 복잡한 방법보다는 다소 신뢰가 떨어지지만 쉬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li> <li>• 정교한 방법론 적용시 문제점은, 정확한 정보의 부족, CPM프로그램 미사용,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불성실 등임.</li> <li>• 최신 프로그램과 정확한 기록은 방법론의 신뢰를 높임.</li> </ul>
Ndekugri 외 (2008)	Delay Analysis within Construction Contracting 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지연 분석 방법론(DAM)을 더 증진시키는 공기지연 클레임분석 체계개발을 목적</li> <li>• 공기지연 클레임 해결에는 유발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요구됨.</li> </ul>
Sweis (2008)	Delays in Construction Projects: The Case of Jord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은 고용과 수익창출의 주요산업</li> <li>• 공기와 비용을 초과하여 공정지연이 다수 발생함.</li> <li>• 가장 큰 원인은 현지 공사수행 중 자료수집과 고급기술자와의 인터뷰 의존에 있음.</li> <li>• 재정적 어려움과 발주자에 의한 다수 설계변경이 공사지연의 주원인임, 오히려 악천후와 법제도는 가장 낮은 원인에 해당</li> </ul>
Kuprenas (2008)	Infulence of Quality on Construction Co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 패러다임은 비용, 공정 및 품질의 삼각관계에 있고, 한 개 요소의 증감은 다른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침.</li> <li>• 지난 4년간 완성된 50개의 대형 교육시설물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자들이 다른 공공부문에도 단시간 내 적용할 수 있는 훈련방안을 제안</li> </ul>
Odeh 외 (2002)	Causes of Construction Dealy: Traditional Contra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지연 요소를 발주자 등 계약적 요소 및 기후 등의 외적요소의 8개 그룹으로 구분</li> <li>• 조기완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공자의 이행능력 가치 증치 상향 및 CM 계약방식으로 접근을 제시</li> </ul>
Assaf 외 (2006)	Causes of Delay in Large Construction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지연 요인분석을 위한 73개 요소 정의</li> <li>• 대부분 시공자 및 컨설턴트는 예정공기 10%~30% 사이에 공사기간 연장 경험</li> <li>• 공통된 공기지연의 원인은 발주자의 설계변경 요구임.</li> </ul>

# 공사기간 연장 실태 및 설문조사 , 03

1. 공사기간 연장 실태조사
2. 공사기간 연장 발주처·건설사 설문조사



## 제 3 장 공사기간 연장 실태 및 설문조사

### 제 1 절 공사기간 연장 실태조사

#### 1. 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공공공사 현장에서의 공사기간 연장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공사기간 연장 발생비율, 발생사유, 공종별 발생비율, 귀책여부 등

##### □ 조사대상

- 공공공사
  - 최근 5년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공사
- 조사대상 건설회사
  - 2012년 도급순위 상위 100위 업체 대상 중 협조에 응한 업체
  - 협조공문 요청에 승인한 업체 : 78개 업체

#####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3년 10월 11일 ~ 2014년 4월 12일
- 조사방법 : 실태조사지 배포 후 이메일 회수 및 현장방문 회수

##### □ 조사 내용

- 공사종류, 계약방식, 공사기간 연장 귀책여부,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기간 연장사유 등

##### □ 분석방법

- 분석데이터 : 공사기간 연장 550개 현장 (유효데이터 180개 현장)
- 통계프로그램을 통한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실시

## 2. 실태조사 결과

### 가. 실태조사 총괄표

표 3-1. 실태조사 총괄표

구분	도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기타			합계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가. 계약방식																		
1) 장기계속	144	33	22.92	12	8	66.67	10			2	1	50.00				168	42	25.00
2) 계속비	170	34	20.00	26	7	26.92	14	8	57.14							210	49	23.33
3) 장기→계속비	30	9	30.00	1	1	100.00										31	10	32.26
4) 무응답	110	69	62.73	21	8	38.10	7			2	1	50.00	1	1	100.00	141	79	56.03
합계	454	145	31.94	60	24	40.00	31	8	25.81	4	2	50.00	1	1	100.00	550	180	32.73
나. 계약금액																		
1) 500억 미만	119	24	20.17	18	11	61.11	11	2	18.18	3	2	66.67	1	1	100.00	152	40	26.32
2) 500 ~ 1000억 미만	97	18	18.56	14	4	28.57	8	4	50.00							119	26	21.85
3) 1000 ~ 1500억 미만	45	12	26.67	6	4	66.67	2									53	16	30.19
4) 1500 ~ 2000억 미만	37	8	21.62	6	3	50.00	1									44	11	25.00
5) 2000억 이상	30	12	40.00	3	2	66.67	2	2	100.00							35	16	45.71
6) 무응답	126	71	56.35	13			7			1						147	71	48.30
합계	454	145	31.94	60	24	40.00	31	8	25.81	4	2	50.00	1	1	100.00	550	180	32.73

[표 계속]

구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계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다. 발생사유													
1) 응답		86			23			8			2		
㉠ 인허가 지연		7			1			2					
㉡ 용지보상 지연		7											
㉢ 예산부족		28			4								
㉣ 선행공사 지연		2			1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10			8			1			1		
㉥ 발주처 요청		3			1								
㉦ 민원 발생		3						1					
㉧ 미계약		1											
㉨ 문화재 시굴조사		1			3								
㉩ 동절기 휴지기간		8						1					
㉪ 공사용지 미확보		1			2			1					
㉫ 기타		15			3			2			1		
2) 무응답		59			1								
합계	454	145	31.94	60	24	40.00	31	8	25.81	4	2	50.00	

나. 공사기간 연장 발생비율

1) 총괄

- 실태조사 결과, 3곳 중 1곳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행한 공사현장 총 550개 현장 중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한 경우는 180개 현장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한 평균 비율은 32.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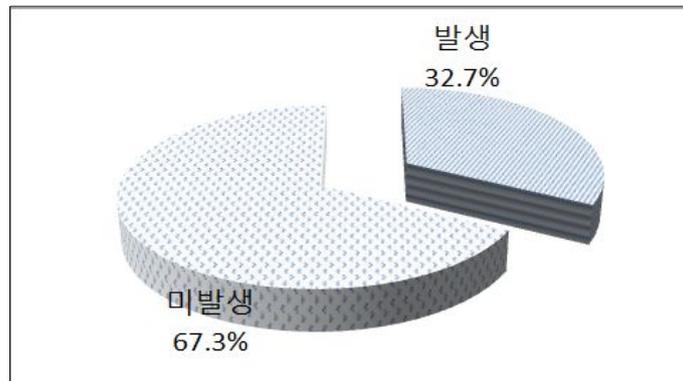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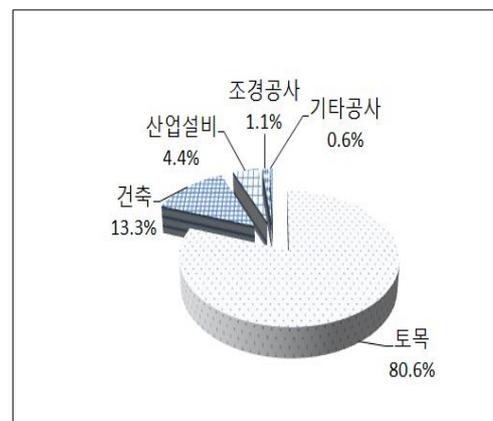
그림 3-1. 총괄 공사기간 연장 발생비율

2) 공종별

- 공사기간 연장 발생현장의 공종별 발생 현황 분석결과, 토목공사가 80.6%(14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건축공사 13.3%(24개), 산업설비공사 4.4%(8개), 조경 및 기타공사 0.6%(1개) 순으로 나타남.

- 유효데이터 180개 분석

구분	조사현장			대비 비율	
	전체 (a)	발생 (b)	발생율 (b ÷ a)	전체	발생현장
토목	454	145	31.9%	26.4%	80.6%
건축	60	24	40.0%	4.4%	13.3%
산업설비	31	8	25.8%	1.5%	4.4%
조경	4	2	50.0%	0.4%	1.1%
기타	1	1	100.0%	0.2%	0.6%
합계	550	180		3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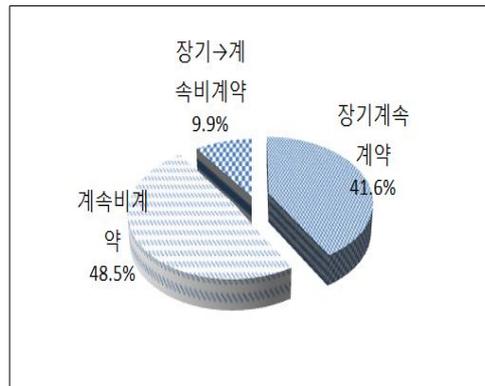
<발생현장 공종별 비율>

3) 계약방식별

- 공사기간 연장 발생현장의 공사계약별 발생 현황 분석결과, 계속비계약이 48.5%(4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계속계약 41.6%(42개),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전환 9.9%(10개) 순으로 나타남.

- 발생현장 180건 중 유효데이터 101개 분석(무응답 79건 제외)

구분	조사현장			대비 비율	
	전체 (a)	발생 (b)	발생율 (b ÷ a)	전체	발생현장
장기계속	168	42	25.0%	7.6%	41.6%
계속비	210	49	23.3%	8.9%	48.5%
장기 → 계속비	31	10	32.3%	1.8%	9.9%
무응답	141	79	56.0%	14.4%	
합계	550	180		3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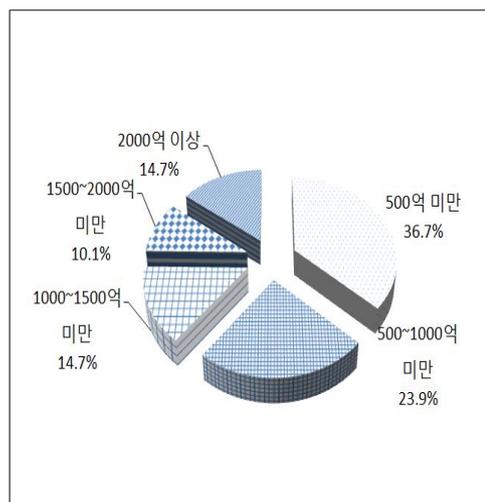
<발생현장 계약별 비율>

4) 계약금액별

- 공사기간 연장 발생현장을 총공사계약금액별 비율로 나눠 분석한 결과, 500억원 미만이 36.7%(40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1,000억원 23.9%(26개), 1,000~1,500억원·2,000억원 14.7%(각 16개)순으로 나타남.

- 발생현장 180건 중 유효데이터 109개 분석(무응답 71건 제외)

구분	조사현장			대비 비율	
	전체 (a)	발생 (b)	발생율 (b ÷ a)	전체	발생현장
500억 미만	152	40	26.3%	7.3%	36.7%
500~1000억	119	26	21.8%	4.7%	23.9%
1000~1500억	53	16	30.2%	2.9%	14.7%
1500~2000억	44	11	25.0%	2.0%	10.1%
2000억 이상	35	16	45.7%	2.9%	14.7%
무응답	147	71	48.3%	12.9%	
합계	550	180		32.7%	100.0%



<발생현장 계약금액별 비율>

## 다. 공사기간 연장 발생현장 사유

### 1) 총괄

- 공사기간 연장 발생사유를 총괄 분석할 경우 예산부족이 26.7%(32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기타 18.3%(22개),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16.7%(20개)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사유 : 지반변형, 설계오류, 매립재료변경 등

- 발생현장 180건 중 유효데이터 120개 분석(무응답 60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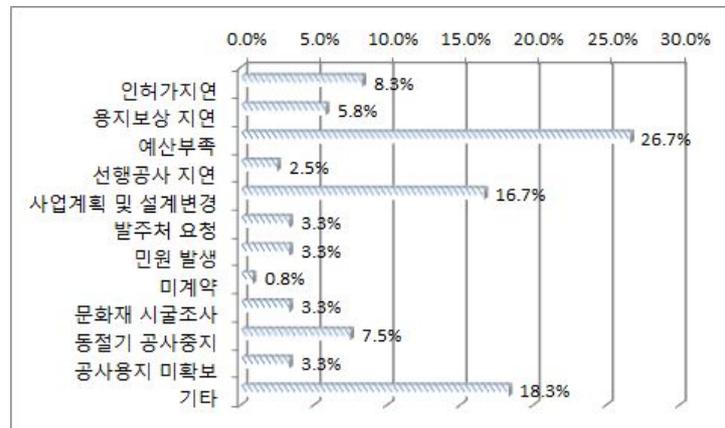


그림 3-2. 공기연장 발생사유 총괄

### 2) 공종별

#### □ 토목공사

- 공기연장 발생사유 토목현장의 경우도 예산부족이 32.6%(28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7.4%(16개),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11.6%(10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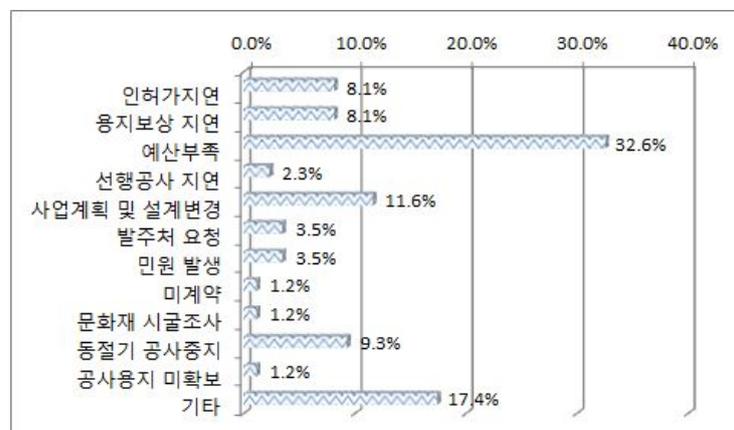


그림 3-3. 공기연장 발생사유 (토목)

□ 건축공사

- 공기연장 발생사유 건축현장의 경우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이 34.8%(8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부족 17.4%(4개), 문화재 시굴조사·기타 각 13.0%(3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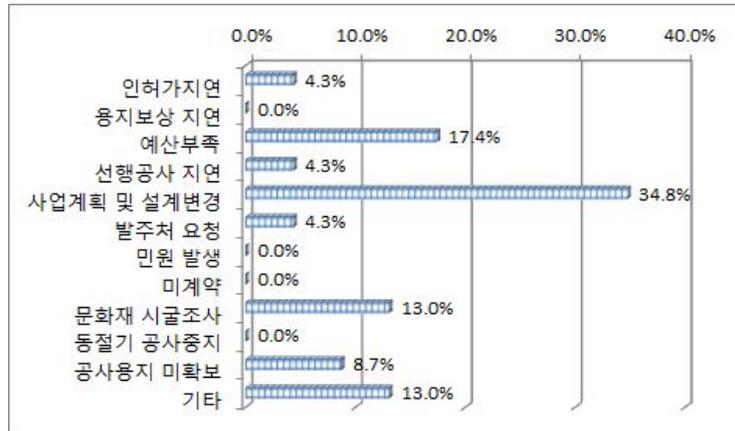


그림 3-4. 공기연장 발생사유 (건축)

□ 산업설비공사

- 공기연장 발생사유 산업설비현장의 경우 인허가지연과 기타가 각 25.0%(2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절기 공사중지·사업계획 및 설계변경·민원발생 12.5%(1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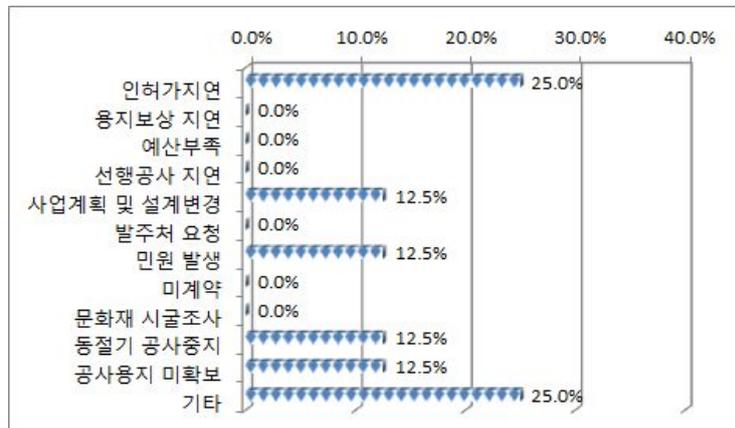


그림 3-5. 공기연장 발생사유 (산업설비)

□ 조경·기타공사

- 공중 중 조경공사와 기타 공사는 공기연장 발생현장이 각각 2개, 1개로 많지 않음.
  - 조경공사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기타 각 1개
  - 기타공사 : 기타 각 1개

## 3) 계약방식별

## □ 장기계속계약

-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기연장 발생사유는 예산부족에 대한 사유가 42.1%(1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3.2%(6개),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10.5%(4개), 공사용지 미확보 7.9%(3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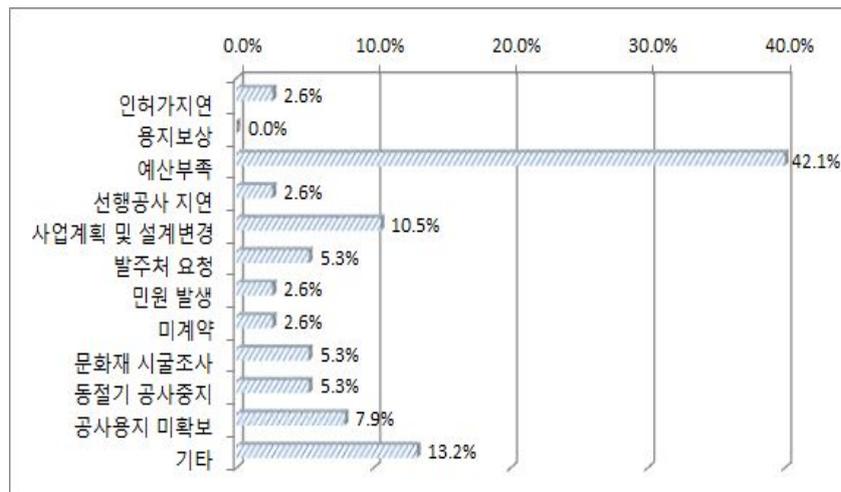


그림 3-6. 장기계속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 계속비계약

- 계속비계약 방식의 경우 기타에 대한 사유가 20.4%(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허가지연 18.4%(8개),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14.3%(7개), 예산부족 12.2%(6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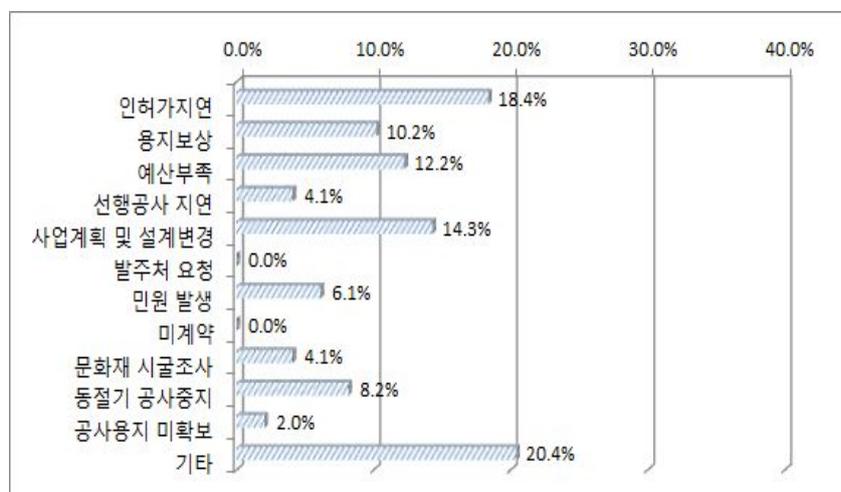


그림 3-7. 계속비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전환

-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로 전환된 경우 예산부족에 대한 사유가 62.5%(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사유 25.0%(2개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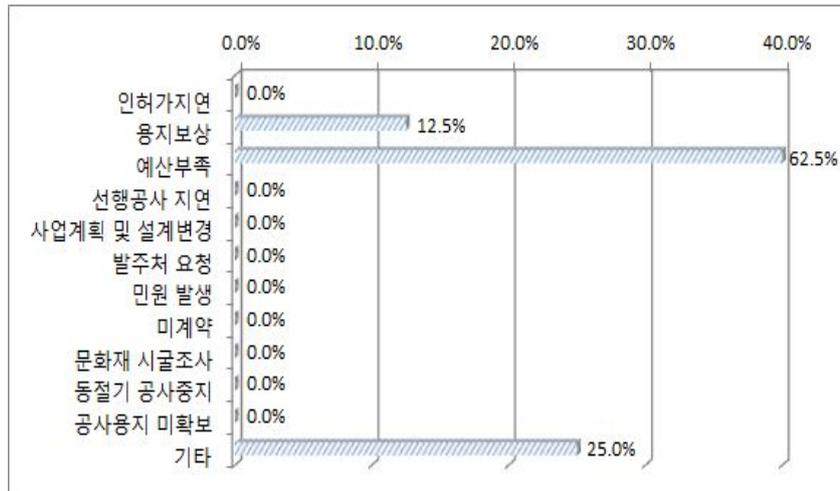


그림 3-8.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전환 공기연장발생 사유

4) 계약금액별

□ 500억 미만

- 500억원 미만 공기연장 발생현장의 발생 사유는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이 28.9%(1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부족 26.3%(10개), 기타 15.8%(6개)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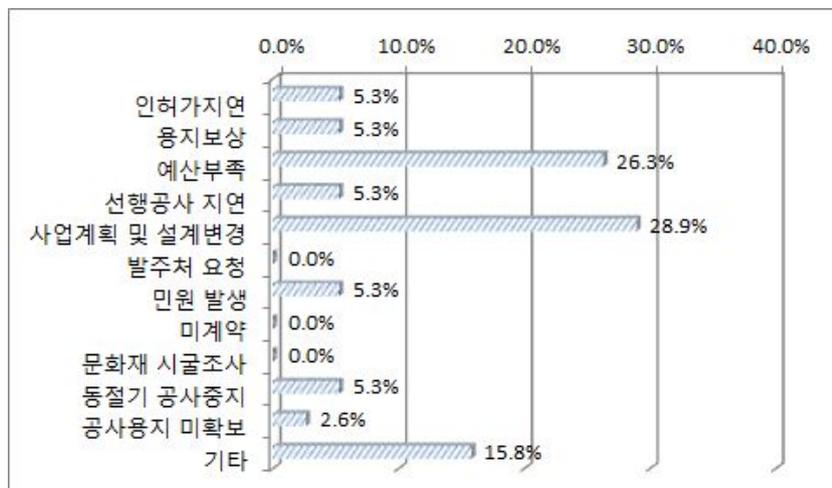


그림 3-9. 500억원 미만 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500 ~ 1,000억 미만

- 500~1,000억원 미만 공기연장 발생현장의 발생 사유는 기타가 30.4%(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부족·인허가지연·동절기 공사중지 13.0%(3개)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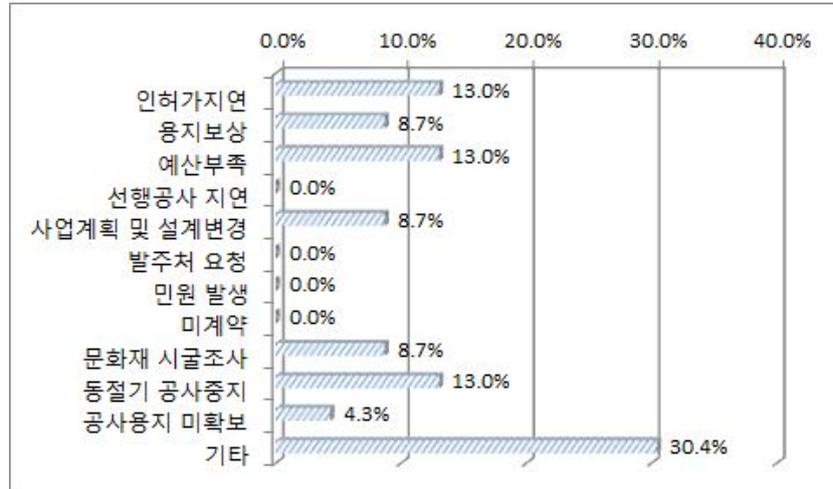


그림 3-10. 500~1,000억원 미만 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1,000 ~ 1,500억 미만

- 1,000~1,500억원 미만 공기연장 발생현장의 발생 사유는 예산부족이 31.3%(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사용지 미확보·기타 12.5%(2개)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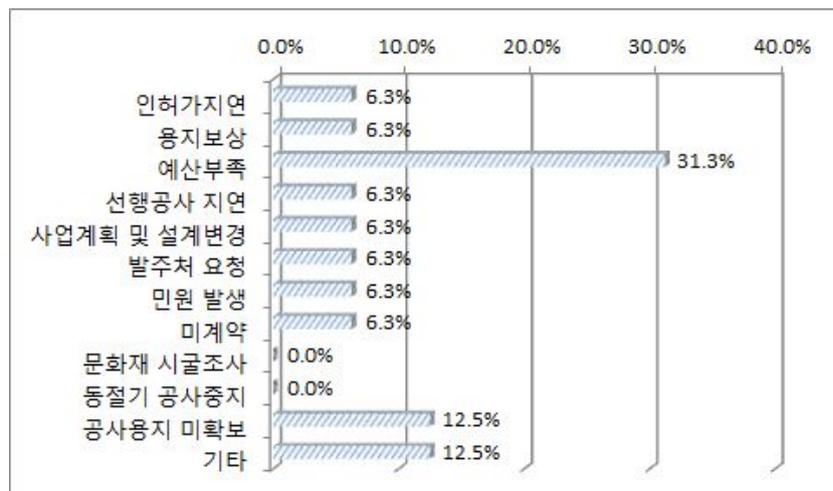


그림 3-11. 1,000~1,500억원 미만 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1,500 ~ 2,000억 미만

- 1,500~2,000억원 미만 공기연장 발생현장의 발생 사유는 예산부족이 40.0%(4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기타 20.0%(2개)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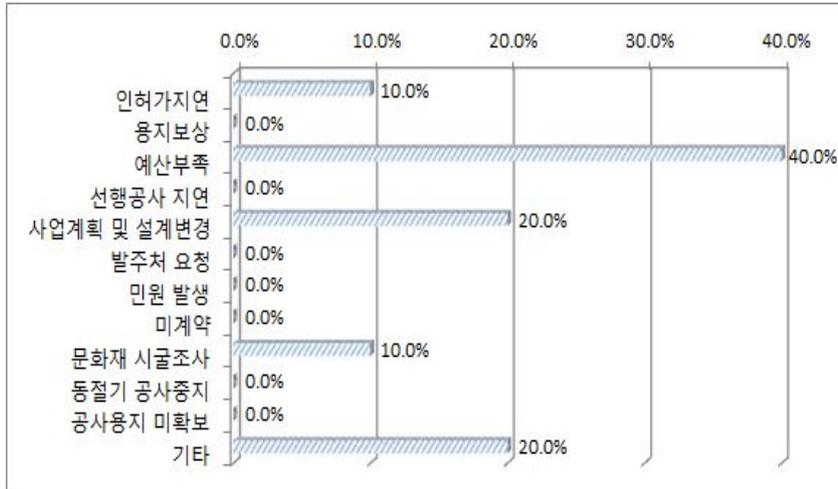


그림 3-12. 1,500~2,000억원 미만 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2,000억 이상

- 2,000억원 이상 공기연장 발생현장의 발생 사유는 예산부족이 33.3%(5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허가지연 20.0%(3개),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13.3%(2개)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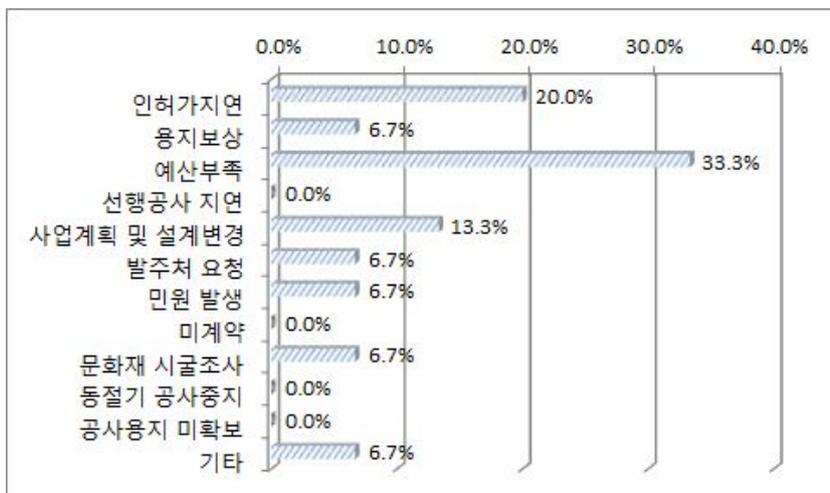


그림 3-13. 2,000억원 이상 계약 공기연장발생 사유

### 3. 결론 및 시사점

#### □ 결론

- 전체 조사현장 중 32.7%의 비율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됨.
- 공종별 비율로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기연장 발생현장 중 특히 토목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였음.
- 계약방식별 비율은 계속비와 장기계속 간 비율의 차이가 미비함.
- 금액별 비율로는 500억 미만 공사가 공기연장 발생현장 대비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기연장 발생사유는 예산부족이 발생현장 대비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시사점

- 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기 분석된 보고서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2013.05. 이영환 등)」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 도출
  - 공기연장 발생 비율 : 30.9%
  - 계속비계약 50.8% > 장기계속계약 49.2%
- 실태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긴 토목공사현장에서 공기연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발생사유로 예산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조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 4. 총사업비 대상사업 실태조사

### 가.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연구에 반영하기 위함.
  - 공사기간 연장 발생비율, 연장사유, 사업유형 등

#### □ 조사대상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
  - 2014년 9월 총사업비 대상사업 468개
  -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 조사내용

- 사업유형, 총사업비, 공사기간, 공사기간 연장사유 등

### 나. 실태조사 결과

#### 1) 발생비율

- 총사업비 대상 468개 사업 중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한 경우는 122개 사업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한 평균 비율은 2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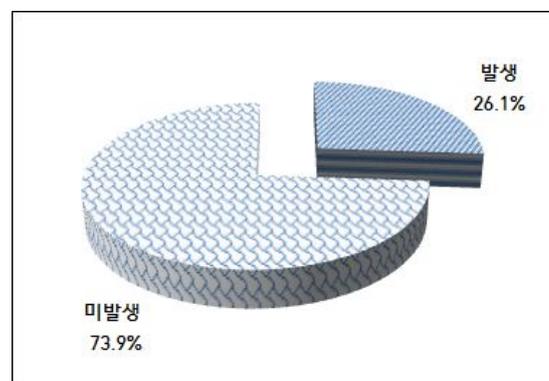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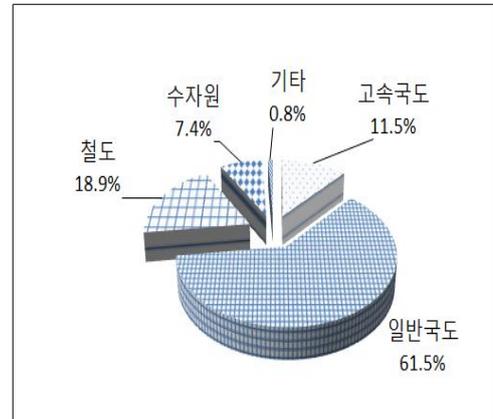


그림 3-14. 총사업비 대상사업 공기연장 발생비율

가) 사업유형별

-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사업유형별 발생 현황 분석결과, 일반국도가 61.5%(7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철도 18.9%(23개), 고속국도 11.5%(14개) 순으로 나타남.

구분	조사현장			대비 비율	
	전체 (a)	발생 (b)	발생율 (b ÷ a)	전체	발생현장
고속국도	33	14	42.4%	3.0%	11.5%
일반국도	362	75	20.7%	16.0%	61.5%
철도	50	23	46.0%	4.9%	18.9%
수자원	19	9	47.4%	1.9%	7.4%
기타	4	1	25.0%	0.2%	0.8%
합계	468	122		2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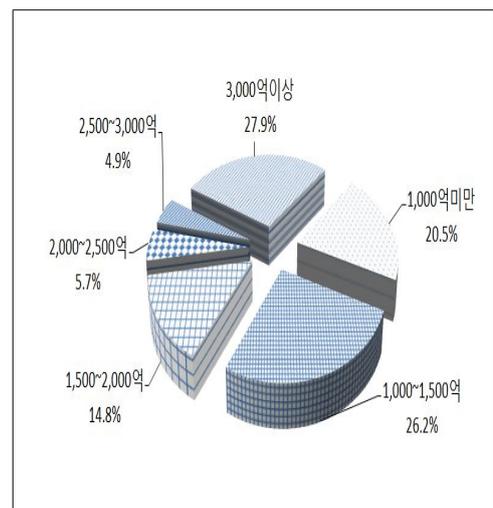


<발생 사업유형별 비율>

나) 사업규모별

-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사업규모별 비율로 나눠 분석한 결과, 3,000억 이상 27.9%(34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1,500억원 26.2%(32개), 1,000억 미만 20.5%(25개)순으로 나타났으며, 2,500~3,000억원 4.9%(6개)로 가장 낮게 나타남.
- 3,000억 이상 사업이 전체 95개중 34개의 사업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 35.8%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나타냄.

구분	조사현장			대비 비율	
	전체 (a)	발생 (b)	발생율 (b ÷ a)	전체	발생현장
1,000억 미만	137	25	18.2%	5.3%	20.5%
1,000~1,500억	113	32	28.3%	6.8%	26.2%
1,500~2,000억	67	18	26.9%	3.8%	14.8%
2,000~2,500억	35	7	20.0%	1.5%	5.7%
2,500~3,000억	21	6	28.6%	1.3%	4.9%
3,000억 이상	95	34	35.8%	7.3%	27.9%
합계	468	122		26.1%	100.0%



<발생 사업규모별 비율>

2) 공사기간 연장 발생사업 사유

- 조사의 전제는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 대상사업 468개 중 122개의 발생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발생사유가 2개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하였음.
  - 122개 사업에서 190건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음.
-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발생사유를 분석한 결과, 예산부족이 35.3%(6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31.1%(59개)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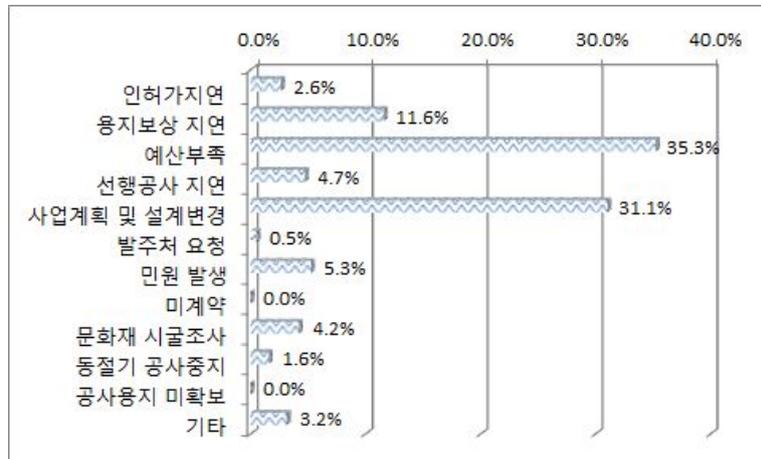


그림 3-15. 총사업비 대상사업 공사기간 연장사유

다. 결론 및 시사점

- 총사업비 대상사업 중 26.1%의 비율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됨.
- 발생사업유형별 비율로는 일반국도가 61.5%로 가장 높았으며, 철도 18.9%, 고속국도 11.5% 순으로 나타남.
- 사업규모별 비율로는 3,000억 이상의 사업이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공사기간 연장 발생사유로는 예산부족 35.3%,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이 3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발생사유 조사결과 본 연구용역의 실태조사와 같이 예산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

## 라. 총사업비 대상사업 총괄표

표 3-2. 실태조사 총괄표

구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도			수자원			기타			합계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계	발생	비율(%)	전체	발생	비율(%)
가. 사업비																		
1) 1,000억 미만	1			130	24	18.5				5	1	20.0	1			137	25	18.2
2) 1,000 ~ 1,500억	2			105	30	28.6				4	2	50.0	2			113	32	28.3
3) 1,500 ~ 2,000억	2	2	100.0	61	12	19.7	2	2	100.0	1	1	100.0	1	1	100.0	67	18	26.9
4) 2,000 ~ 2,500억				30	4	13.3	2	1	50.0	3	2	66.7				35	7	20.0
5) 2,500 ~ 3,000억				18	5	27.8				3	1	33.3				21	6	28.6
6) 3,000억 이상	28	12	42.9	18			46	20	43.5	3	2	66.7				95	34	35.8
합계	33	14	42.4	362	75	20.7	50	23	46.0	19	9	47.4	4	1	25.0	468	122	26.1
나. 연장사유																		
1) 인허가지연					4						1							5
2) 용지보상 지연					21			1										22
3) 예산부족					46			12			8			1				67
4) 선행공사 지연		6			2			1										9
5)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10			28			17			4							59
6) 발주처 요청					1													1
7) 민원 발생					9			1										10
8) 미계약																		
9) 문화재 시굴조사					8													8
10) 동절기 공사중지					3													3
11) 공사용지 미확보																		
12) 기타					5			1										6
합계		16			127			33			13			1				190

## 제 2 절 공사기간 연장 발주처 · 건설사 설문조사

###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정산기준(안) 및 공기연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처와 건설사의 의견수렴
- 조사대상
  - 발주처
    -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광역지자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 건설사
    -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의 국내 건설사 현장소장 및 관련 업무 담당자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2014년 6월 4일 ~ 2014년 6월 20일
  - 조사방법 : 설문조사지 배포 후 이메일 · 우편 · 팩스 회수 및 담당자 인터뷰
- 조사내용
  - 응답자 일반특성,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식, 인정범위, 관련 제도개선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대책 등
  - 총 유효부수 505개(발주처 : 268개, 건설사 : 237개) 분석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목적	정산기준(안) 및 공기연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처와 건설사의 의견수렴	
조사 대상	발주처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광역지자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의 국내 건설사 현장소장 및 관련 업무 담당자
조사기간	2014.06.04 ~ 2014.06.20	
조사방법	설문조사지 배포 후 이메일/우편/팩스 회수 및 담당자 인터뷰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특성,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식, 인정범위, 관련 제도개선 및 공기연장 방지대책	

그림 3-16. 공사기간 연장비용 관련 설문조사 개요

## 2. 설문조사 결과

### 가. 응답자 일반특성

구 분	연령대				경력				직종		
	30미만	30~40	40~50	50이상	5년미만	5~10년	10~15년	15년이상	토목	건축	기타
발주처(268)	8	109	124	27	28	67	52	120	171	57	37
건설사(237)	-	71	134	32	10	36	59	131	214	15	7

그림 3-17. 응답자 일반특성

#### 1) 발주처

- 연령별로는 40 ~ 50대 연령이 124명(46.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30대 미만은 8명(3.0%)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냄.
- 15년 이상의 경력 인원이 120명(44.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5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명(10.5%)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냄.
- 토목직종의 조사인원이 171명(64.5%)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축 57명(21.5%), 기타 37명(14.0%) 순으로 나타남.

#### 2) 건설사

- 건설사도 발주처와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설문응답자는 40 ~ 50대가 134명(56.5%)으로 절반이상을 나타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30대 미만의 경우는 조사대상에 없었음.
- 경력기간별 설문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131명(5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 미만이 10명(4.2%)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직종별로는 토목 종사자가 214명(90.7%)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 15명(6.3%), 기타 7명(3.0%) 순으로 나타남.
- 발주처와 건설사 설문응답자 일반특성을 비교하면 설문응답자의 공통적 특성이 나타남.
  - 연령대별 설문응답자는 40 ~ 50대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력은 15년 이상의 설문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토목직종의 종사자가 설문응답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나.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식

### 1) 산정방식 선호도

- 연장비용 산정방식은 발주처 및 건설사 모두 효율이 실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발주처 : 효율(40.3%) > 실비(38.8%) > 정산(10.8%) > 혼합(9.7%) > 기타(0.4%)
  - 건설사 : 효율(39.7%) > 실비(35.9%) > 혼합(13.1%) > 정산(11.0%)

표 3-3.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식 선호도.

구분	효율	실비	혼합	정산	기타
발주처	40.3%	38.8%	9.7%	10.8%	0.4%
건설사	39.7%	35.9%	13.1%	1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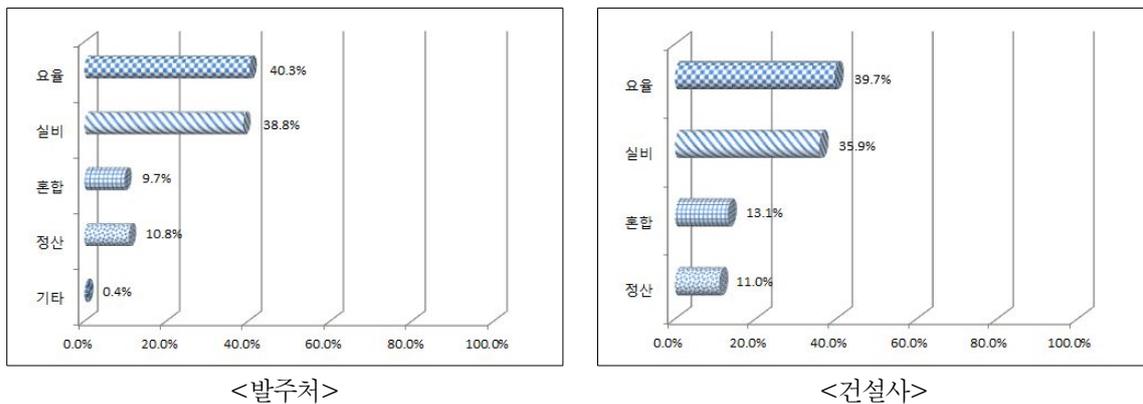


그림 3-18.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식 선호도

### 2) 산정방식별 선택 의견

#### □ 효율방식 동의 이유

- 효율방식 동의 이유로는 발주처 및 건설사 모두 '산정이 간편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효율방식 동의 이유로 청구 및 검토 수월과 손실 비용 반영 협의 수월 항목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표 3-4. 효율방식의 동의 이유

구분	산정 간편	청구 및 검토 수월	손실비용 반영 협의 수월	기타
발주처	38.5%	25.7%	26.6%	9.2%
건설사	29.5%	24.2%	27.4%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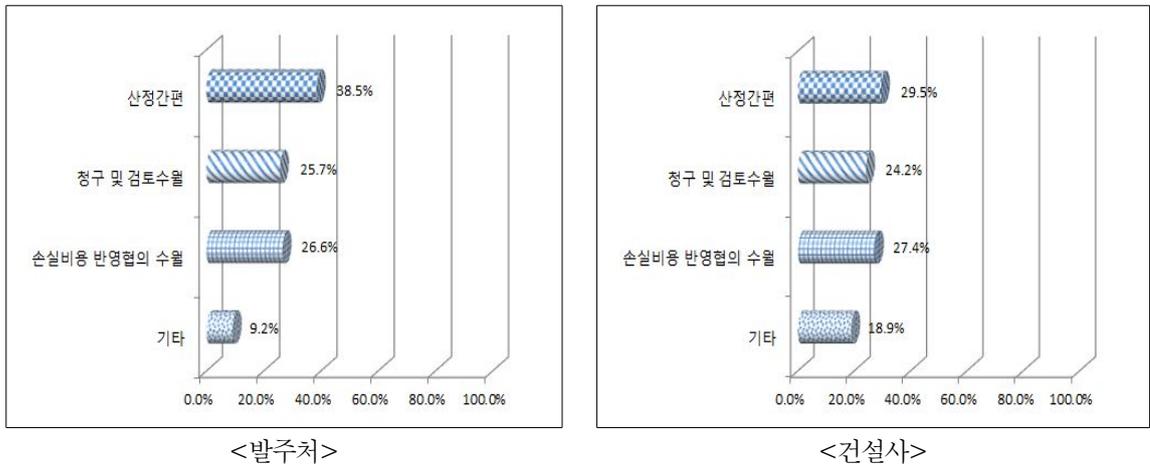


그림 3-19. 요율방식의 동의 이유

□ 요율방식 비동의 이유

- 요율방식 비동의 이유로는 발주처 및 건설사 모두 ‘손실비용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울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발주처는 ‘악용소지’도 14.1%의 소수견해가 있음.

표 3-5. 요율방식 비동의 이유

구분	간단하여 악용소지	청구 남발	손실비용의 부정확성	기타
발주처	14.1%	7.0%	76.1%	2.8%
건설사	—	2.8%	89.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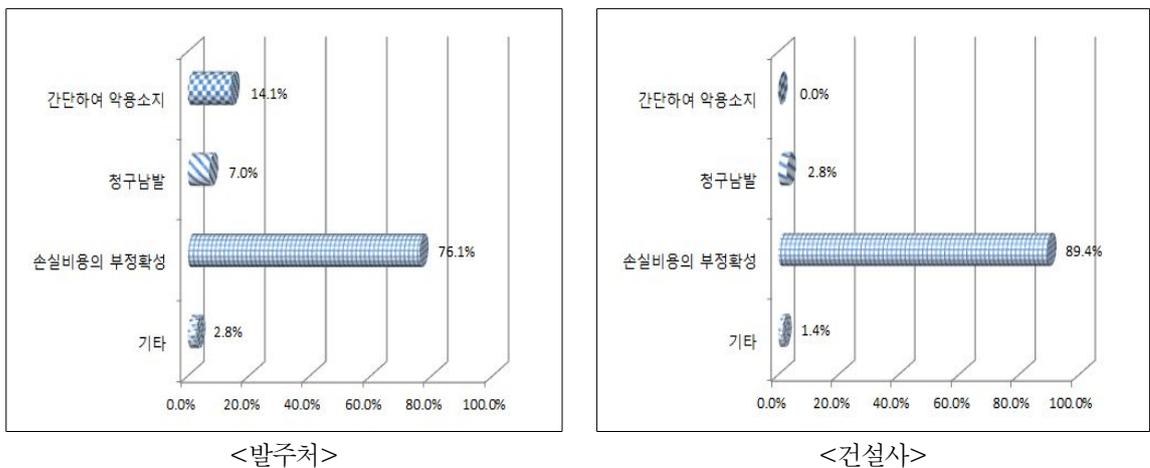


그림 3-20. 요율방식 비동의 이유

□ 실비산정방식 동의 이유

- 실비산정방식 동의 이유로는 발주처 및 건설사 모두 ‘실제 발생비용의 정확한 반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발주처 및 건설사 모두 ‘자체지침 산정기준이 실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6. 실비산정방식 동의 이유

구분	실제 발생비용의 정확한 반영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명시	자체지침 산정기준이 실비	기타
발주처	74.5%	23.6%	0.9%	0.9%
건설사	87.1%	12.9%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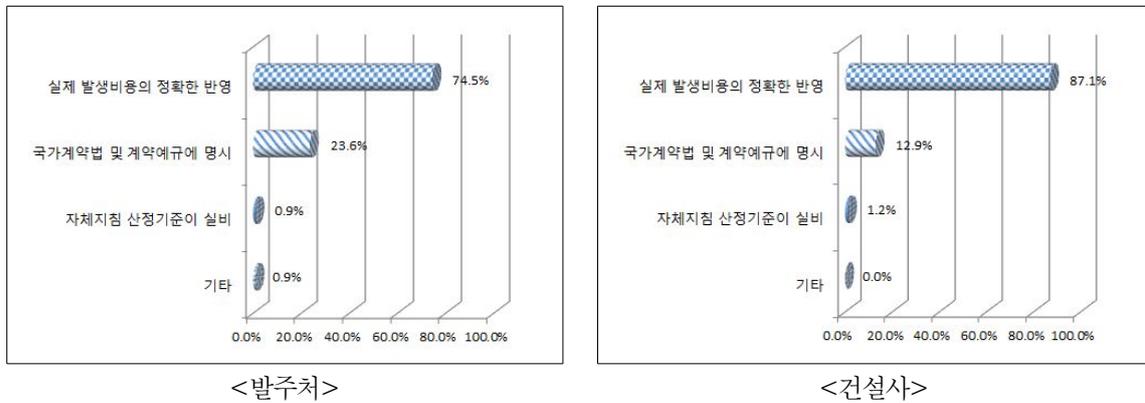


그림 3-21. 실비산정방식 동의 이유

□ 실비산정방식 비동의 이유

- 실비산정방식 비동의 이유로는 발주처 및 건설사 모두 ‘실비 인정기준 모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실비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비 인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됨.
-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간접노무비, 경비, 입증자료 방대·계산복잡’과 ‘실비정산 서류 입증 어려움’에서 비슷한 견해를 보임.

표 3-7. 실비산정방식 비동의 이유

구분	간접노무비, 경비 입증자료 방대·계산복잡	실비정산 서류 입증 어려움	실비 인정기준 모호	기타
발주처	21.2%	25.5%	49.6%	3.6%
건설사	22.5%	23.2%	39.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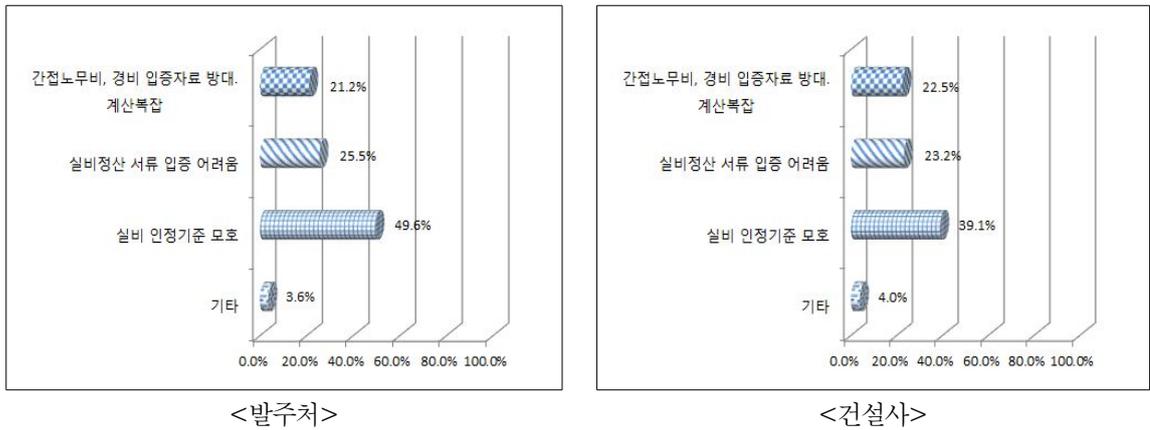


그림 3-22. 실비산정방식 비동의 이유

3)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근거

- 공사기간 연장비용 승인 시 비용 산정의 근거
  - 발주처 및 건설사 모두 공사기간 연장비용 승인 시 비용 산정의 근거를 ‘계약예규 실비 산정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정근거로 ‘공공 발주기관의 자체비용보상 지침’에서 발주처와 건설사의 견해 차이가 다소 있음.

표 3-8.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근거

구분	계약예규 실비 산정기준 (국가계약 법령)	간접노무비율, 경비율 (완성공사 원가분석 자료)	공공 발주기관의 자체비용보상 지침	기타
발주처	61.9%	12.3%	14.9%	5.2%
건설사	73%	12.7%	4.6%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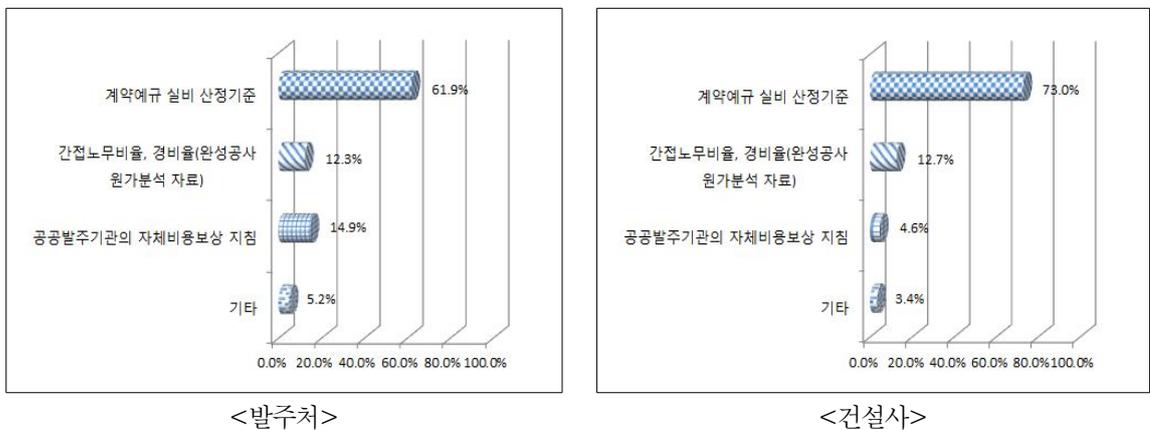


그림 3-23.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근거

4) 노무량 산정방안에 관한 의견

- 노무량 산정방안은 발주처는 공사 잔여 금액에 따른 노무량 산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사는 공사 총 금액에 따른 노무량 산정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공사 총 면적’에 따른 노무량 산정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9. 노무량 산정방안에 관한 의견

구분	공사 총 금액	공사 잔여 금액	공사 총 면적	공사 잔여 면적	기타
발주처	28.7%	55.6%	2.2%	4.1%	6.3%
건설사	43.6%	34.7%	0.4%	0.8%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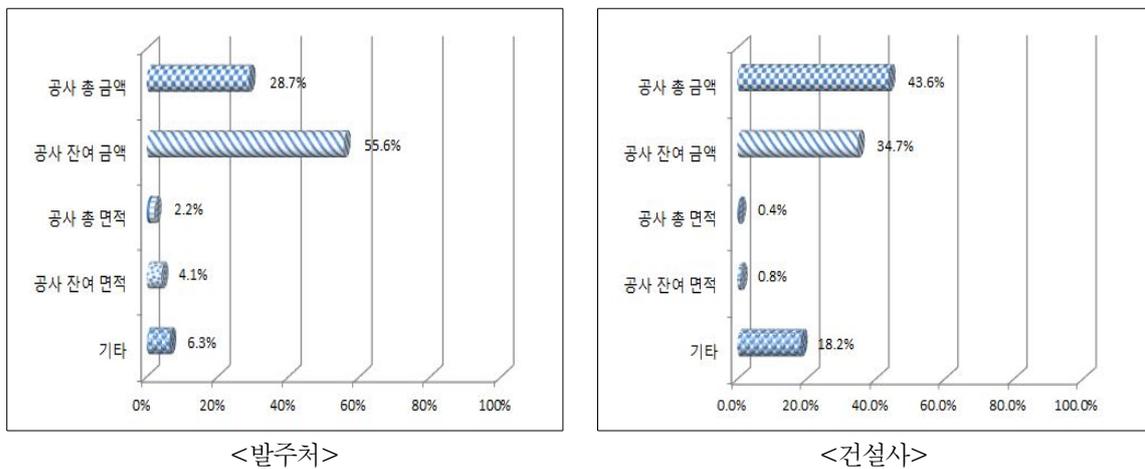


그림 3-24. 노무량 산정방안에 관한 의견

5) 청구과정 및 검토과정의 어려움

- 발주처 및 건설사 모두 ‘실비 산정기준이 모호’의 이유가 연장비용 청구과정 및 검토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합적 귀책사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공사의 연장기간 산정’의 이유는 발주처가 건설사보다 높게 나타남.

표 3-10.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과정 및 검토과정의 어려움

구분	공사의 연장기간 산정	실비 산정기준 모호	복합적 귀책사유 (귀책소지 파악 불분명)	기타
발주처	12.0%	42.7%	39.3%	3.7%
건설사	3.8%	47.3%	33.8%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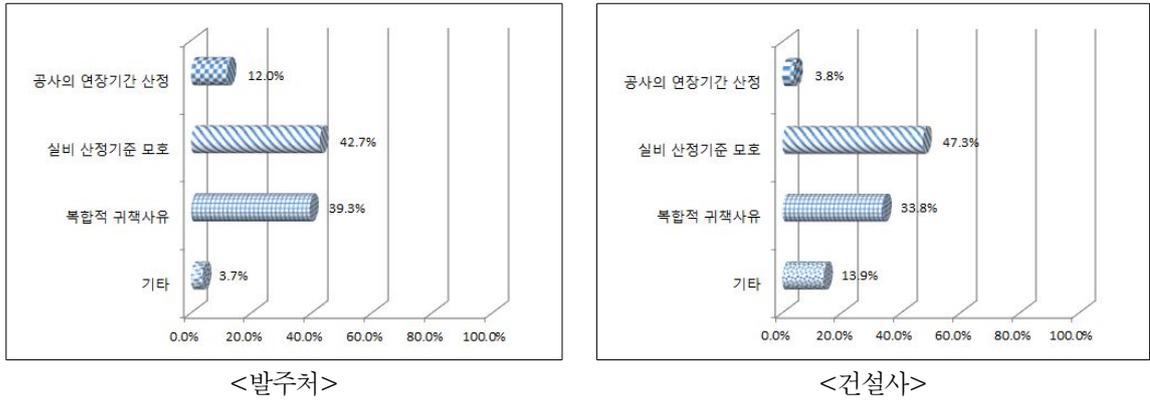


그림 3-25.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과정 및 검토과정의 어려움

다. 공사기간 연장 기간 범위

□ 설계당시 공사기간 산정 고려항목(중복 응답)

- 설계당시 공사기간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항목은 발주처와 건설사의 견해차이가 존재함.
  - 발주처 : 사업규모별 순공사기간(80.6%)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66.8%) > 우기 공사중단기간(57.8%) > 공휴일 휴지일수(48.1%) > 혹서기 공사중단기간(40.3%) > 기타(0.4%)
  - 건설사 : 동절기 공사중단기간(90.3%) > 우기 공사중단기간(80.6%) > 공휴일 휴지일수(73%) > 사업규모별 순공사기간(72.2%) > 혹서기 공사중단기간(64.6%) > 기타(22.8%)

표 3-11. 설계당시 공사기간 산정 고려항목

구분	사업규모별 순공사기간	동절기 공사중단기간	우기 공사중단기간	혹서기 공사중단기간	공휴일 휴지일수	기타
발주처	80.6%	66.8%	57.8%	40.3%	48.1%	5.6%
건설사	72.2%	90.3%	80.6%	64.6%	73%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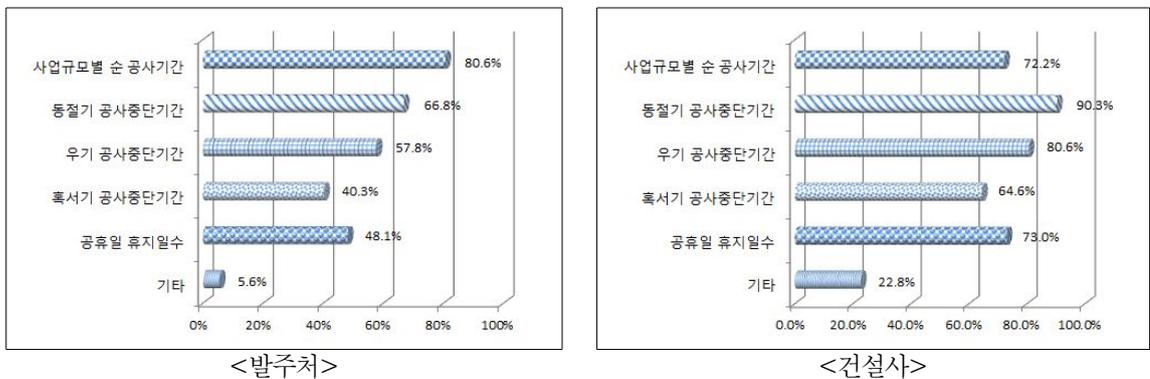


그림 3-26. 설계당시 공사기간 산정 고려항목

라.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범위

1) 휴지기 및 미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의견

- 발주처 및 건설사 모두 휴지기 및 미계약기간의 연장비용 ‘모두 포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건설사의 경우 ‘공사휴지기간만 포함’, ‘모두 불포함’ 고르게 높게 나타난 반면, 건설사는 ‘모두 포함’이 8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12.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의견

구분	미계약기간만 포함	공사휴지기간만 포함	모두 포함	모두 불포함
발주처	10.2%	24.4%	31.2%	24.1%
건설사	7.2%	6.8%	83.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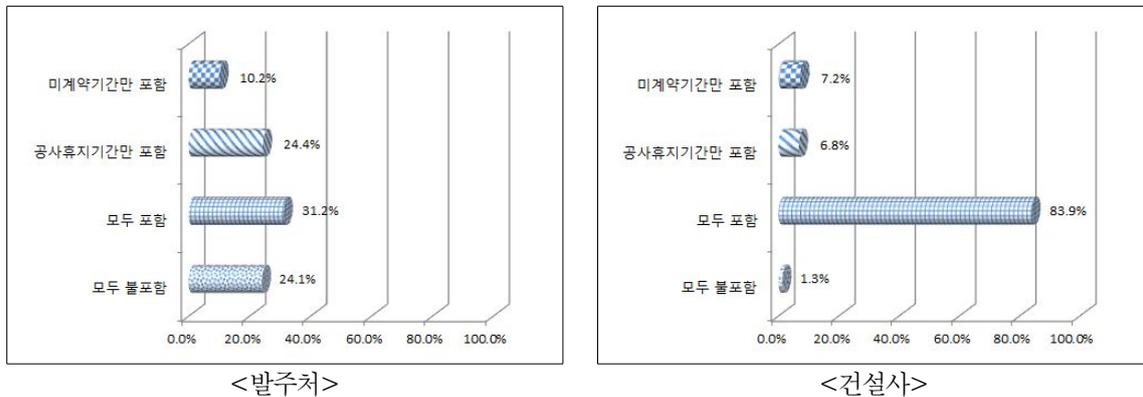


그림 3-27.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의견

2)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희망 항목(중복 응답)

- 공사기간 연장기간동안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 어느 항목까지 지급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발주처는 경비가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건설사의 경우 간접노무비(92.0%)로 가장 높게 났으며, 경비(91.1%), 일반관리비(86.5%)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희망 항목에 대해 발주처와 건설사 간의 다소 다른 견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3.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희망 항목

구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발주처	67.5%	78.4%	62.7%	10.8%	2.6%
건설사	92.0%	91.1%	86.5%	35.9%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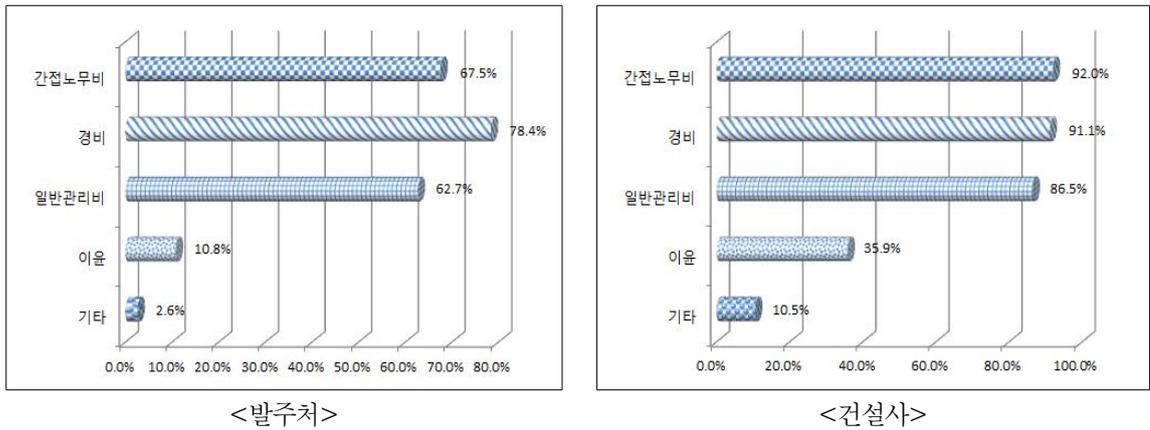


그림 3-28.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희망 항목

3) 지급임차료 중 직원숙소의 범위(중복 응답)

- 지급임차료 중 직원숙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발주처는 현장사무소가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건설사의 경우도 현장사무소가 9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부 직원숙소(빌라, 아파트 등)도 80.2%로 높게 나타나 발주처와 견해 차이가 나타남.

표 3-14. 지급임차료 중 직원숙소의 범위

구분	현장사무소	외부 직원숙소 (빌라, 아파트 등)	기타
발주처	87.7%	23.9%	1.9%
건설사	90.7%	80.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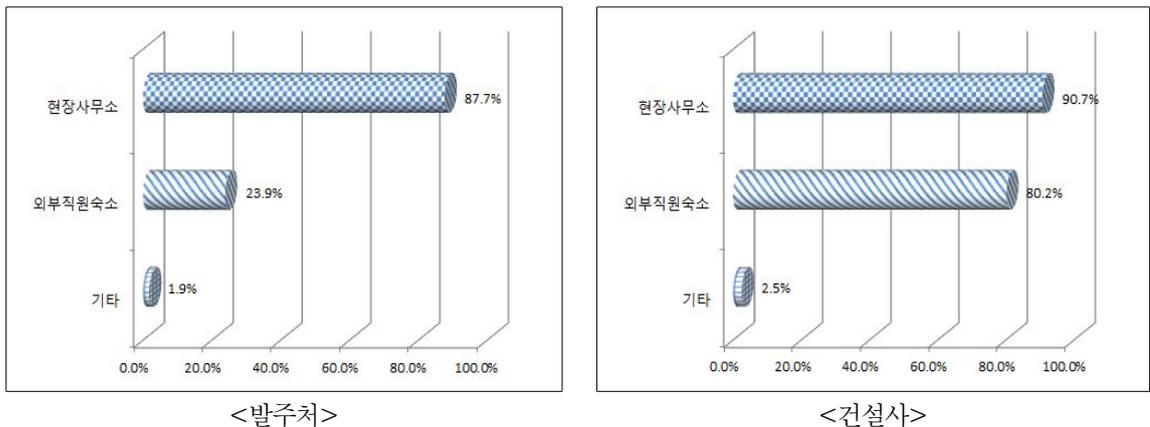


그림 3-29. 지급임차료 중 직원숙소의 범위

4)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직종에 대한 의견

-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범위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한 의견으로는 발주처와 건설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장소장’은 발주처(98.3%), 건설사(98.7%) 모두 연장비용 인정 직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발주처는 현장소장, 안전관련담당자, 공구담당원 순으로 나타남.
  - 현장소장(98.3%) > 안전관련담당자(79.7%) > 공구담당원(67.6%) > 현장사무원(66.1%) > 시험관리원(55.5%) > 기획설계부문종사자(37.2%)
- 건설사는 현장소장, 안전관련담당자, 현장사무원 순으로 나타남.
  - 현장소장(98.7%) > 안전관련담당자(94.4%) > 현장사무원(92.3%) > 시험관리원(89.3%) > 공구담당원(74.6%) > 기획설계부문종사자(69.7%)

표 3-15.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직종에 대한 의견

NO.	직무	전체		토목		건축	
		발주처	건설사	발주처	건설사	발주처	건설사
1	현장소장	98.3%	98.7%	94.0%	99.1%	98.1%	100.0%
2	현장사무원	66.1%	92.3%	55.5%	91.5%	79.2%	93.3%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37.2%	69.7%	36.8%	67.9%	27.5%	66.7%
4	노무관리원	26.4%	39.8%	19.6%	38.7%	37.3%	40.0%
5	자재구매관리원	29.3%	50.2%	26.8%	53.8%	35.3%	53.3%
6	공구담당원	67.6%	74.6%	60.7%	73.6%	84.3%	60.0%
7	시험관리원	55.5%	89.3%	53.5%	91.0%	60.8%	73.3%
8	교육산재담당원	14.4%	21.0%	12.0%	19.3%	15.7%	26.7%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5.7%	20.1%	5.8%	18.9%	5.9%	20.0%
10	경비원	31.9%	48.2%	23.0%	44.8%	54.9%	66.7%
11	청소원	25.7%	59.8%	19.7%	59.0%	41.2%	90.0%
12	측량관련담당자	19.6%	54.7%	23.3%	54.7%	5.9%	26.7%
13	안전관련담당자	79.7%	94.4%	78.9%	94.8%	72.5%	80.0%
14	기타	6.0%	13.4%	7.4%	11.3%	4.8%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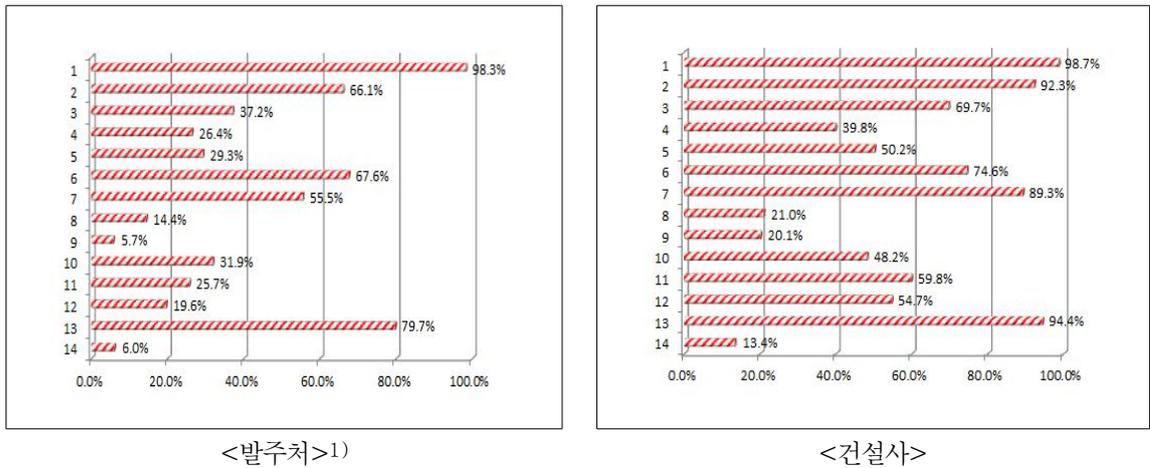


그림 3-30.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직종에 대한 의견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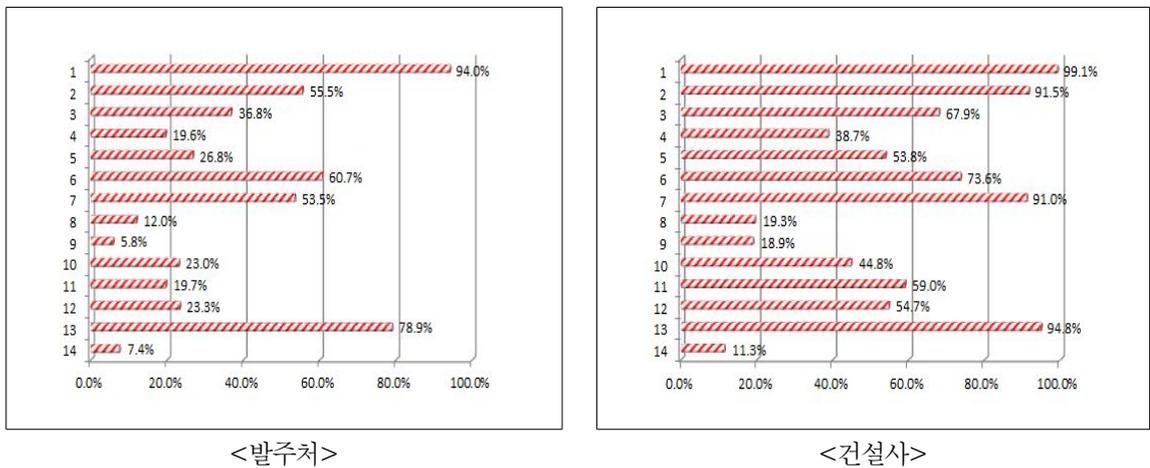


그림 3-31.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직종에 대한 의견 (토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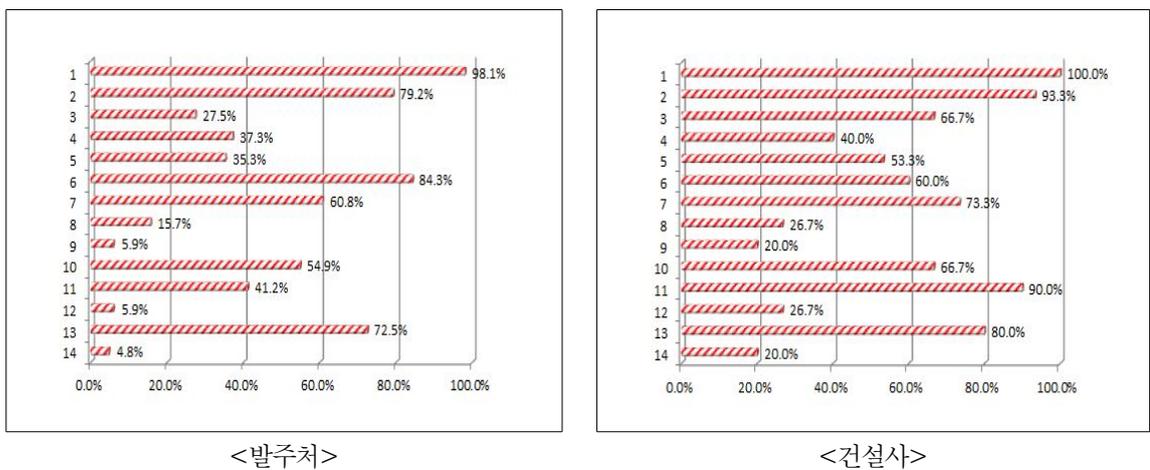


그림 3-32.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직종에 대한 의견 (건축)

1) 그래프 세로축의 숫자는 「표 3-15.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 직종에 대한 의견」 직무와 일치

가) 발주처 : 공사규모별 분석 (87억 이상 ~ 130억 미만)

- 87억 이상 ~ 13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16. 87억 이상 ~ 13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NO.	직무	선택율 <sup>1)</sup>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93.3%	14				
2	현장사무원	53.3%	6	2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26.7%	3		1		
4	노무관리원	20.0%	2	1			
5	자재구매관리원	13.3%	2				
6	공구담당원	46.7%	5		2		
7	시험관리원	26.7%	4				
8	교육산재담당원	0.0%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0.0%					
10	경비원	33.3%	5				
11	청소원	20.0%	3				
12	측량관련담당자	13.3%	2				
13	안전관련담당자	73.3%	11				
14	기타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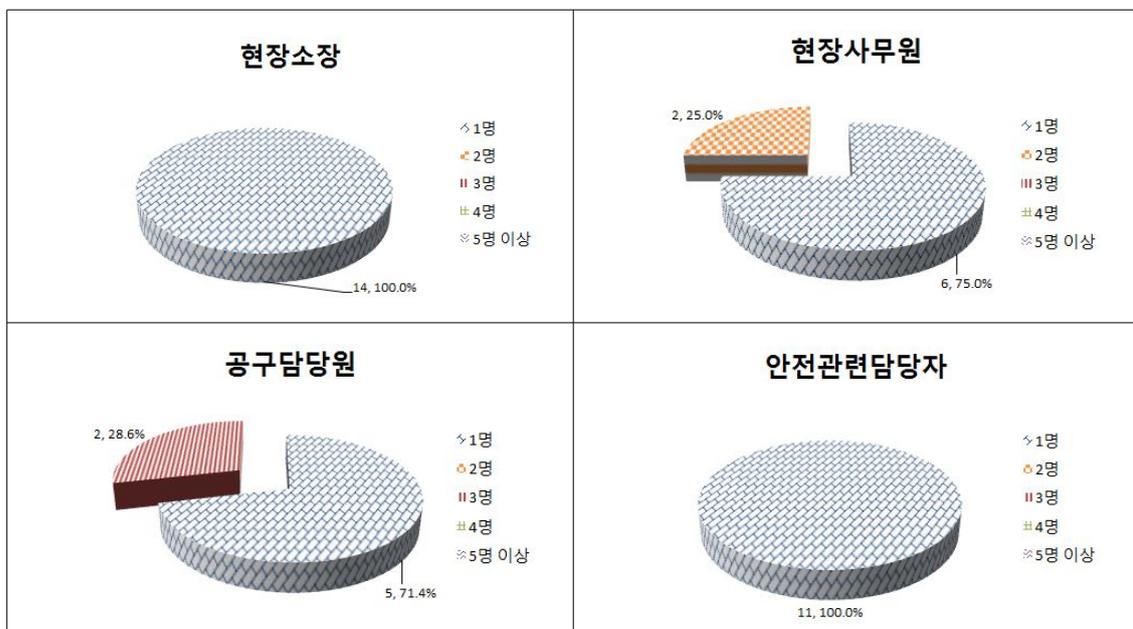


그림 3-33. 87억 이상 ~ 13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1) 발주처 대상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항목 및 인원 설문항목 유효부수 251부 중 필요직무로 선택한 비율

나) 발주처 : 공사규모별 분석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17.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93.3%	14				
2	현장사무원	86.7%	10	2	1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20.0%	2		1		
4	노무관리원	26.7%	4				
5	자재구매관리원	20.0%	4				
6	공구담당원	46.7%	7				
7	시험관리원	33.3%	5				
8	교육산재담당원	6.7%	1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6.7%	1				
10	경비원	33.3%	4	1			
11	청소원	26.7%	3	1			
12	측량관련담당자	40.0%	6				
13	안전관련담당자	86.7%	13				
14	기타	13.3%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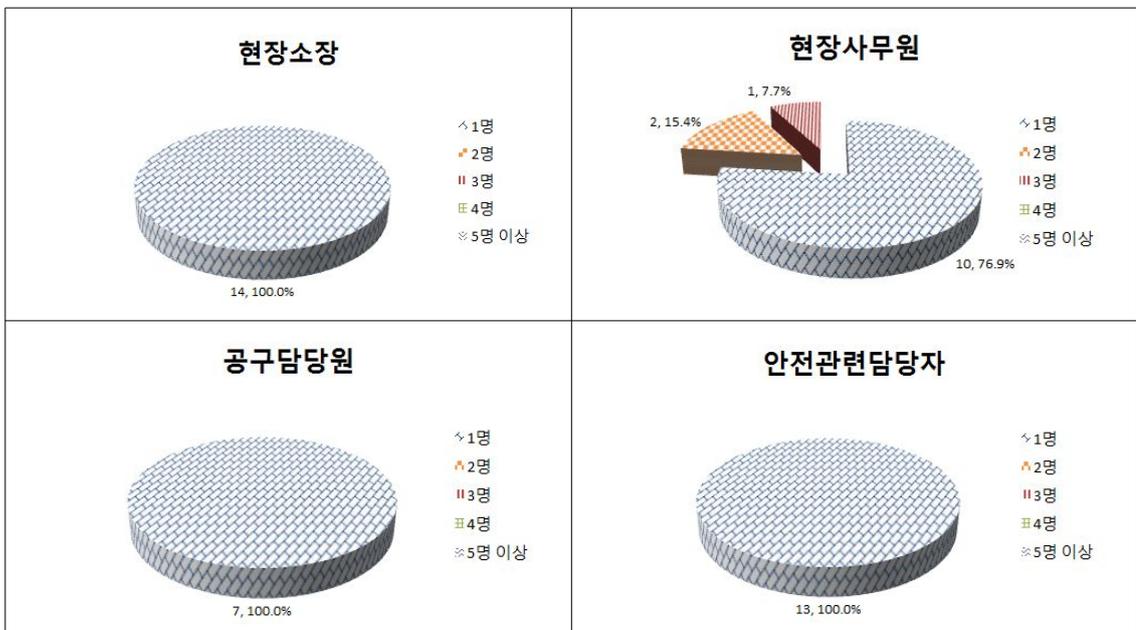


그림 3-34.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다) 발주처 : 공사규모별 분석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18.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93.8%	30				
2	현장사무원	56.3%	14	4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18.8%	4	2			
4	노무관리원	18.8%	6				
5	자재구매관리원	18.8%	6				
6	공구담당원	71.9%	13	4	1		5
7	시험관리원	50.0%	11	2	3		
8	교육산재담당원	3.1%	1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0.0%					
10	경비원	28.1%	4	5			
11	청소원	18.8%	6				
12	측량관련담당자	6.3%	1	1			
13	안전관련담당자	75.0%	24				
14	기타	3.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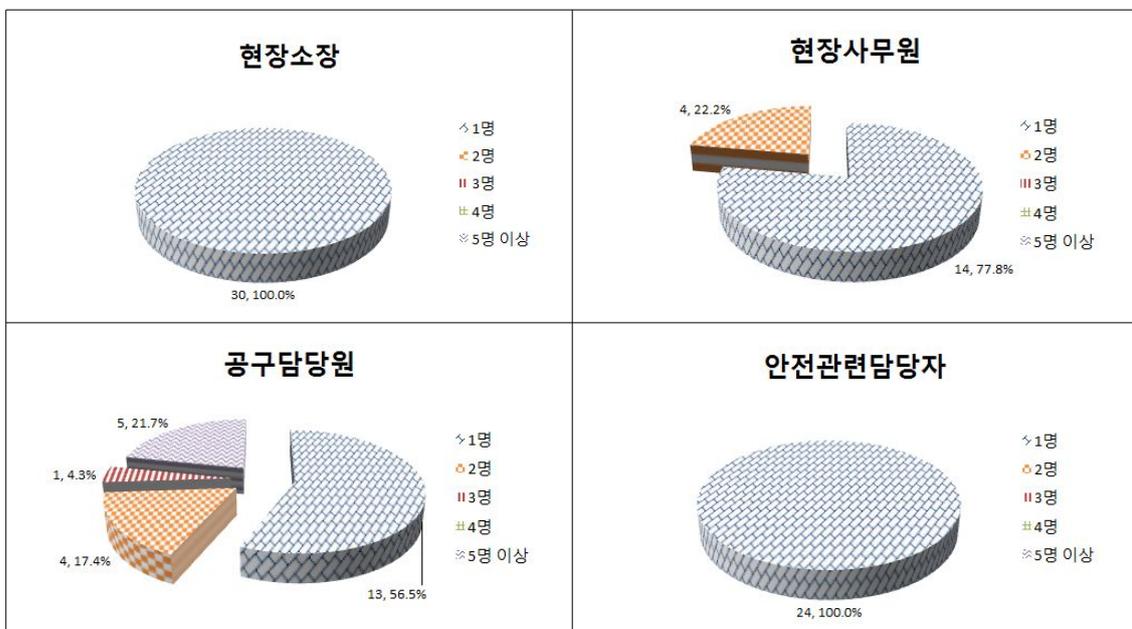


그림 3-35.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라) 발주처 : 공사규모별 분석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19.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100.0%	21				
2	현장사무원	52.2%	10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52.2%	8	2			
4	노무관리원	21.7%	2				1
5	자재구매관리원	34.8%	2				
6	공구담당원	73.9%	9	3	1	1	1
7	시험관리원	82.6%	11	6			
8	교육산재담당원	30.4%	7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13.0%	1	1			
10	경비원	26.1%	5	1			
11	청소원	21.7%	3				
12	측량관련담당자	17.4%	4				
13	안전관련담당자	78.3%	17	1			
14	기타	4.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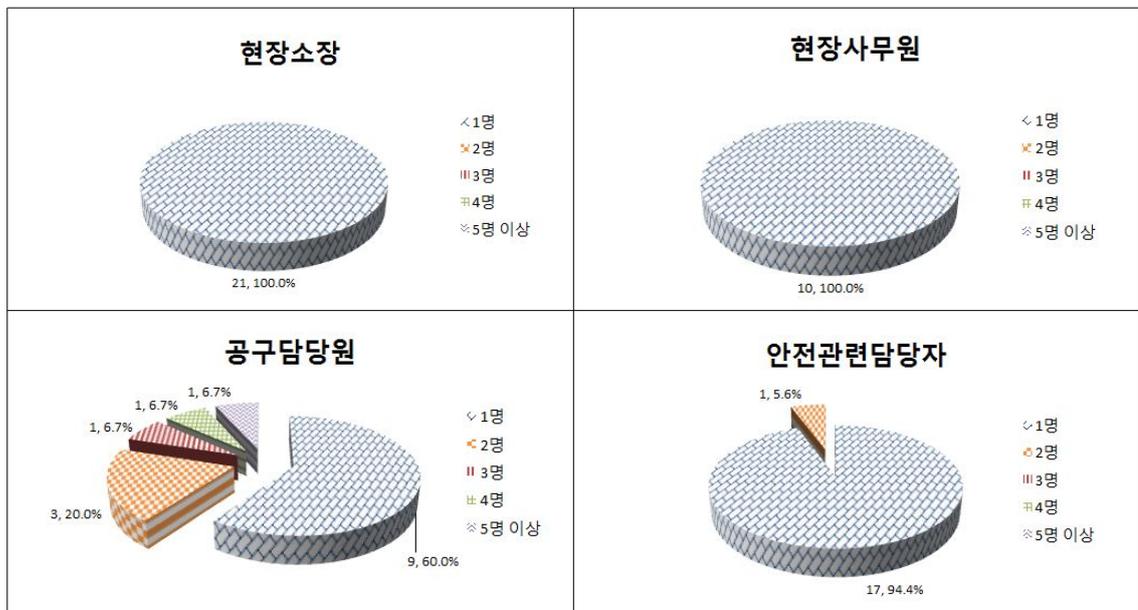


그림 3-36.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마) 발주처 : 공사규모별 분석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20.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94.7%	35				
2	현장사무원	60.5%	17	5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26.3%	5	1	1	1	
4	노무관리원	31.6%	9				2
5	자재구매관리원	31.6%	9				
6	공구담당원	65.8%	9	2	4	4	4
7	시험관리원	57.9%	9	10	1		
8	교육산재담당원	13.2%	4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10.5%	3				
10	경비원	36.8%	4	3	4	2	
11	청소원	31.6%	9		1		
12	측량관련담당자	18.4%	4		1	1	
13	안전관련담당자	65.8%	17	3	1	1	
14	기타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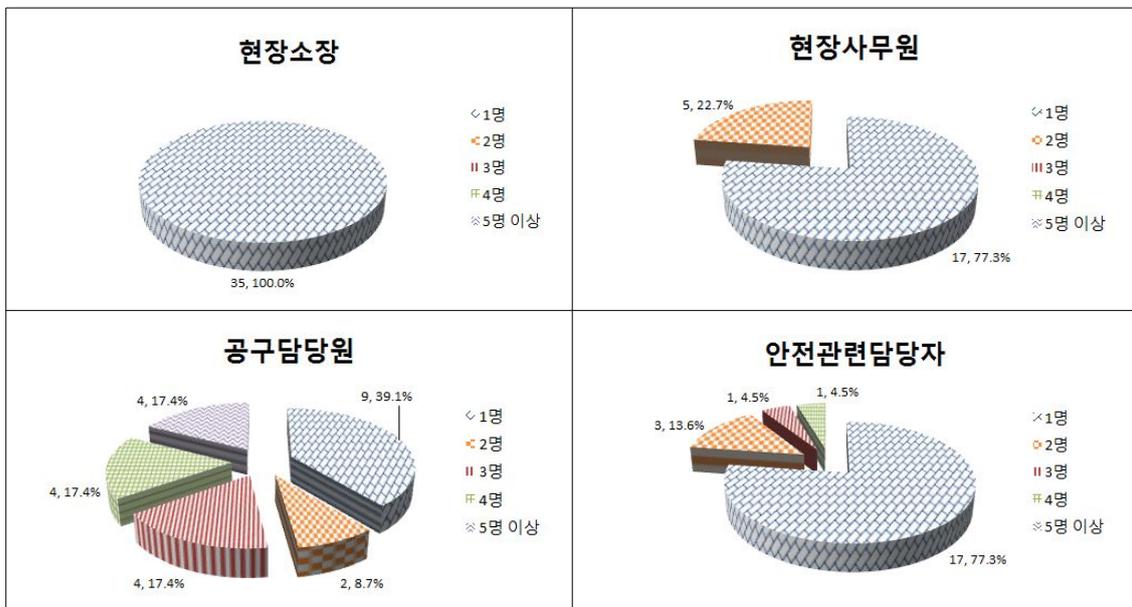


그림 3-37.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바) 발주처 : 공사규모별 분석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21.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97.6%	39				
2	현장사무원	68.3%	19	9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46.3%	17	2			
4	노무관리원	26.8%	11				
5	자재구매관리원	34.1%	11				
6	공구담당원	80.5%	15	5	5	1	6
7	시험관리원	41.5%	5	6	4	1	1
8	교육산재담당원	19.5%	7	1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0.0%					
10	경비원	34.1%	8	5		1	
11	청소원	36.6%	13	1			
12	측량관련담당자	19.5%	4	4			
13	안전관련담당자	80.5%	23	8	1		
14	기타	2.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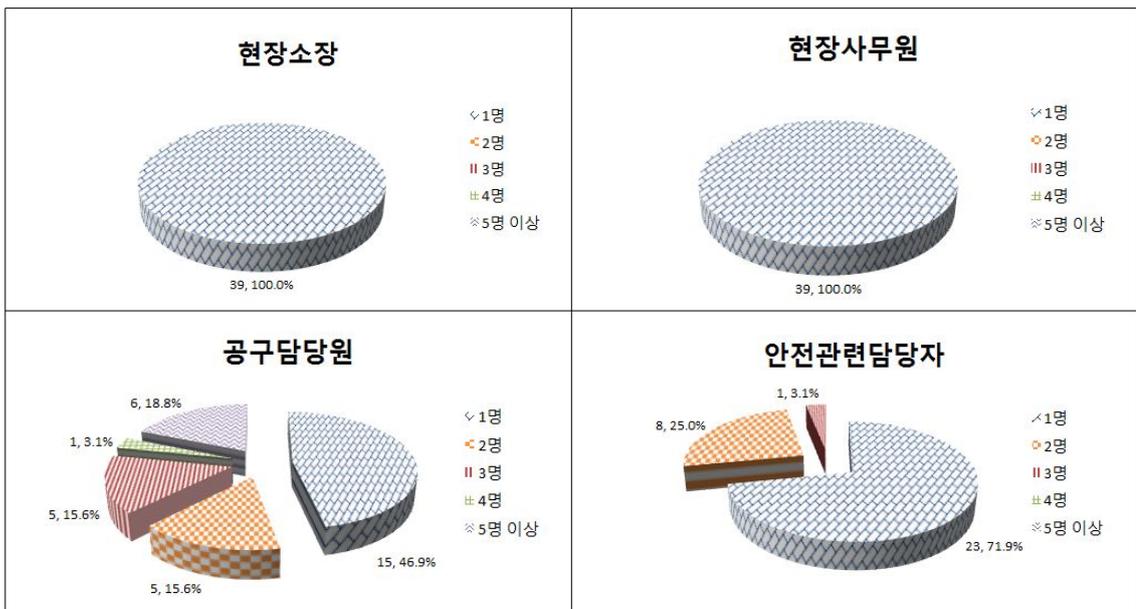


그림 3-38.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사) 발주처 : 공사규모별 분석 (1,500억 이상)

- 1,500억 이상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22. 1,500억 이상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100.0%	23				
2	현장사무원	65.2%	11	3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56.5%	11				1
4	노무관리원	21.7%	4				
5	자재구매관리원	34.8%	4	1			
6	공구담당원	87.0%	13	4	2		
7	시험관리원	73.9%	10	4	2		
8	교육산재담당원	4.3%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8.7%	1				
10	경비원	21.7%	4				
11	청소원	13.0%	2				
12	측량관련담당자	17.4%	3				
13	안전관련담당자	87.0%	15	4			
14	기타	4.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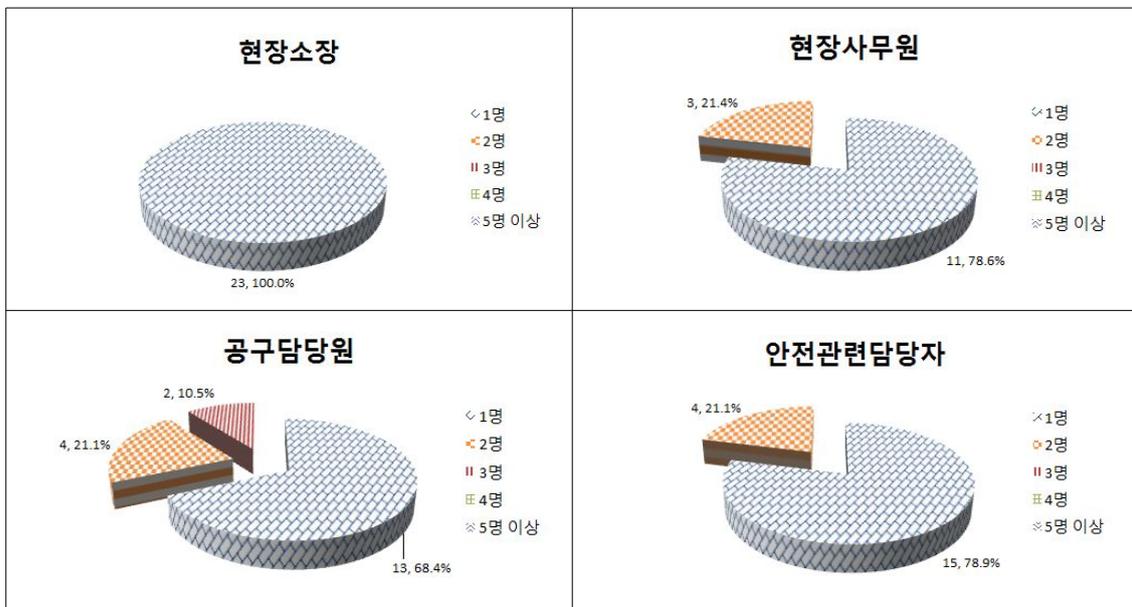


그림 3-39. 1,500억 이상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아) 발주처 : 공사규모별 분석 (기타)

- 87억 이하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23. 기타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70.3%	44				
2	현장사무원	48.4%	23	6		1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21.9%	8		2	2	
4	노무관리원	17.2%	10				
5	자재구매관리원	15.6%	10				
6	공구담당원	25.0%	12	1	1		
7	시험관리원	32.8%	14	2	1	2	1
8	교육산재담당원	12.5%	8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3.1%	2				
10	경비원	14.1%	6	2		1	
11	청소원	10.9%	6	1			
12	측량관련담당자	15.6%	4	5	1		
13	안전관련담당자	51.6%	30	2			
14	기타	7.8%	3		1		



그림 3-40. 기타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발주처)

자) 건설사 : 공사규모별 분석 (87억 이상 ~ 130억 미만)

- 87억 이상 ~ 13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24. 87억 이상 ~ 13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NO.	직무	선택율 <sup>1)</sup>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100.0%	11				
2	현장사무원	81.8%	6	3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36.4%	2	1	1		
4	노무관리원	18.2%	2				
5	자재구매관리원	27.3%	3				
6	공구담당원	63.6%	4	2	1		
7	시험관리원	72.7%	6	2			
8	교육산재담당원	9.1%	1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9.1%	1				
10	경비원	36.4%	4				
11	청소원	9.1%	1				
12	측량관련담당자	63.6%	6		1		
13	안전관련담당자	54.5%	5	1			
14	기타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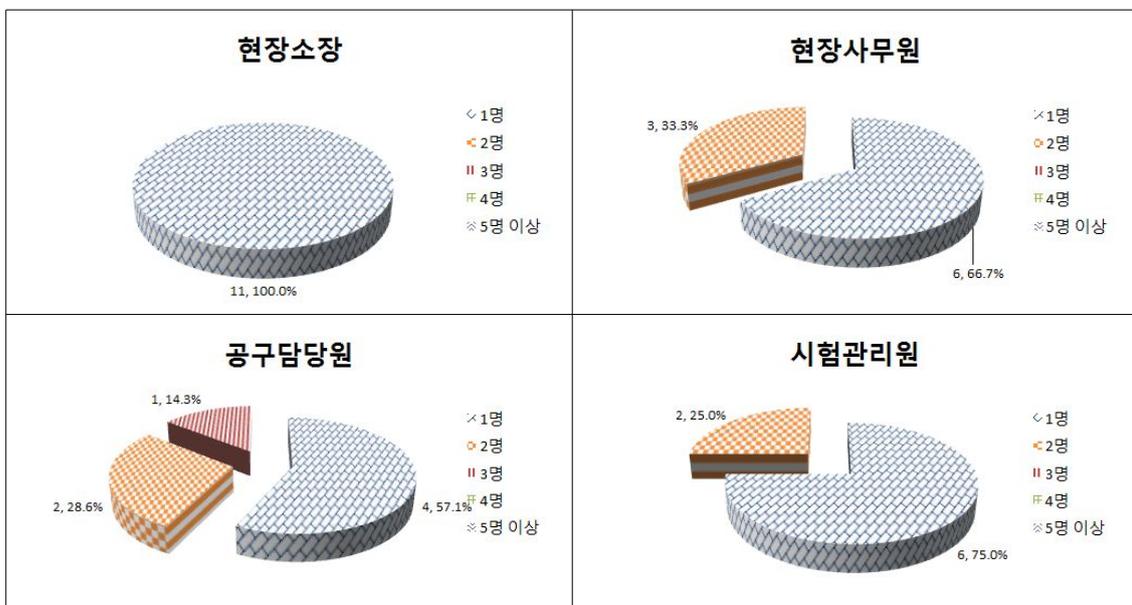


그림 3-41. 87억 이상 ~ 13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1) 건설사 대상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항목 및 인원 설문항목 유효부수 235부 중 필요직무로 선택된 비율

차) 건설사 : 공사규모별 분석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25.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100.0%	7				
2	현장사무원	75.0%	5	1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37.5%	3				
4	노무관리원	0.0%					
5	자재구매관리원	12.5%	1				
6	공구담당원	50.0%	3			1	
7	시험관리원	87.5%	4	3			
8	교육산재담당원	0.0%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0.0%					
10	경비원	25.0%	2				
11	청소원	37.5%	3				
12	측량관련담당자	62.5%	4	1			
13	안전관련담당자	100.0%	7	1			
14	기타	1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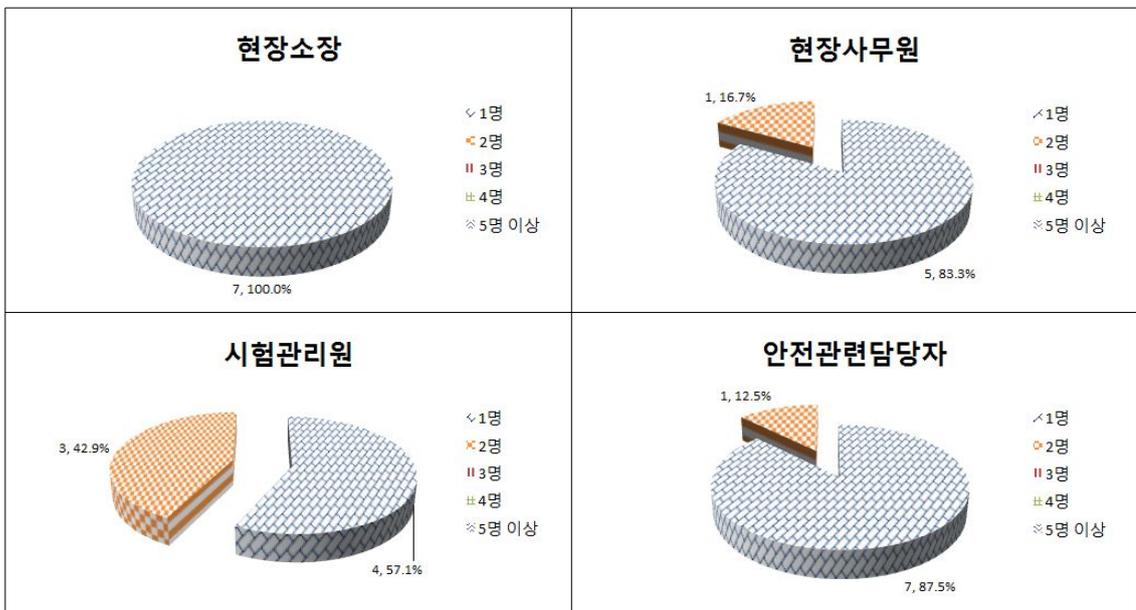


그림 3-42. 130억 이상 ~ 2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카) 건설사 : 공사규모별 분석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26.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100.0%	21				
2	현장사무원	76.2%	13	3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47.6%	7	2	1		
4	노무관리원	14.3%	2				
5	자재구매관리원	61.9%	5				
6	공구담당원	38.1%	4	3			
7	시험관리원	90.5%	12	7			
8	교육산재담당원	9.5%	3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0.0%	1				
10	경비원	28.6%	6	1			
11	청소원	38.1%	8				
12	측량관련담당자	28.6%	3	3			
13	안전관련담당자	95.2%	20				
14	기타	9.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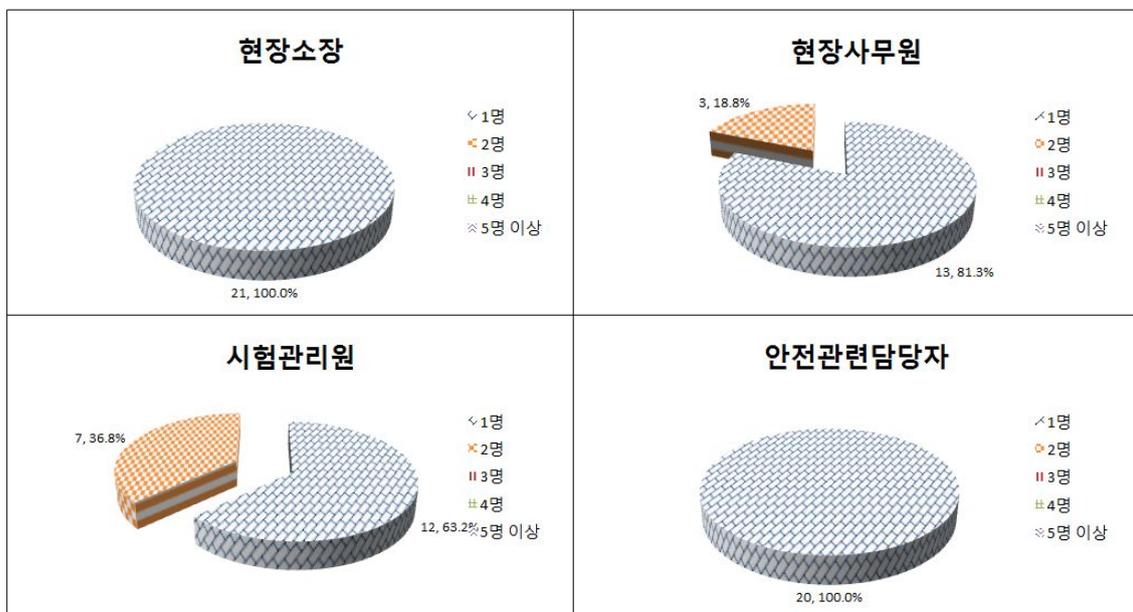


그림 3-43. 200억 이상 ~ 36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타) 건설사 : 공사규모별 분석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27.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100.0%	23				
2	현장사무원	87.0%	16	4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69.6%	10	6			
4	노무관리원	34.8%	8				
5	자재구매관리원	39.1%	9				
6	공구담당원	69.6%	8	5	1		2
7	시험관리원	95.7%	11	9	2		
8	교육산재담당원	8.7%	2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13.0%	3				
10	경비원	47.8%	7	3			
11	청소원	52.2%	10	1			
12	측량관련담당자	34.8%	6	2			
13	안전관련담당자	95.7%	20	2			
14	기타	8.7%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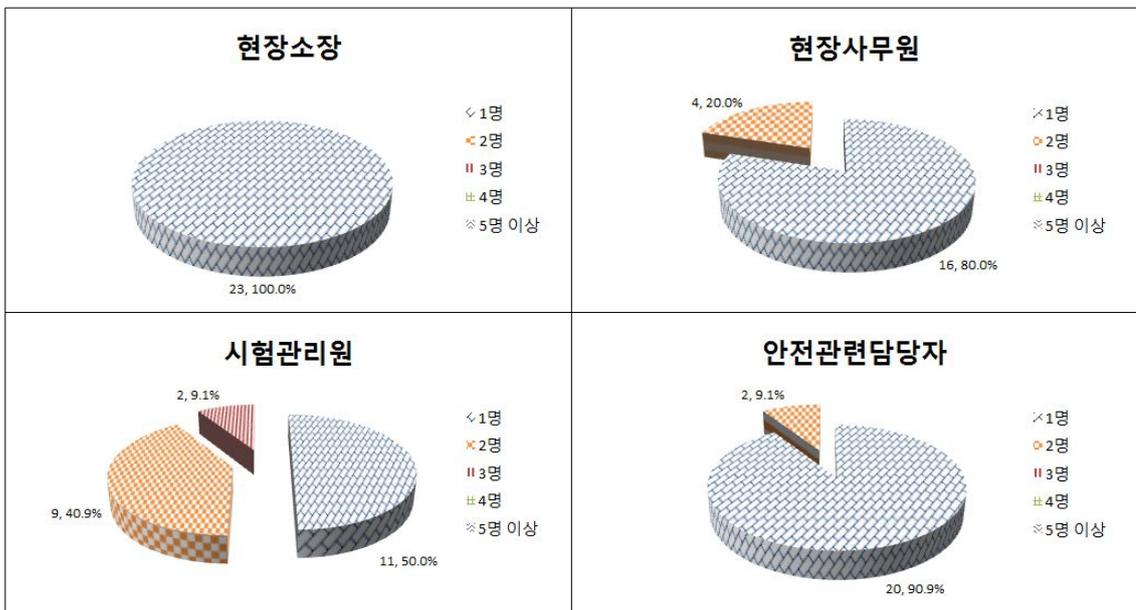


그림 3-44. 360억 이상 ~ 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파) 건설사 : 공사규모별 분석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28.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96.1%	48	1			
2	현장사무원	94.1%	21	23	1	3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68.6%	15	6	13		
4	노무관리원	41.2%	19	1			
5	자재구매관리원	54.9%	25	2			
6	공구담당원	82.4%	8	11	9	7	6
7	시험관리원	90.2%	13	17	15		
8	교육산재담당원	27.5%	13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27.5%	14				
10	경비원	58.8%	20	8	1		
11	청소원	70.6%	35	2			
12	측량관련담당자	58.8%	17	13			
13	안전관련담당자	92.2%	30	14	1		
14	기타	13.7%	1	2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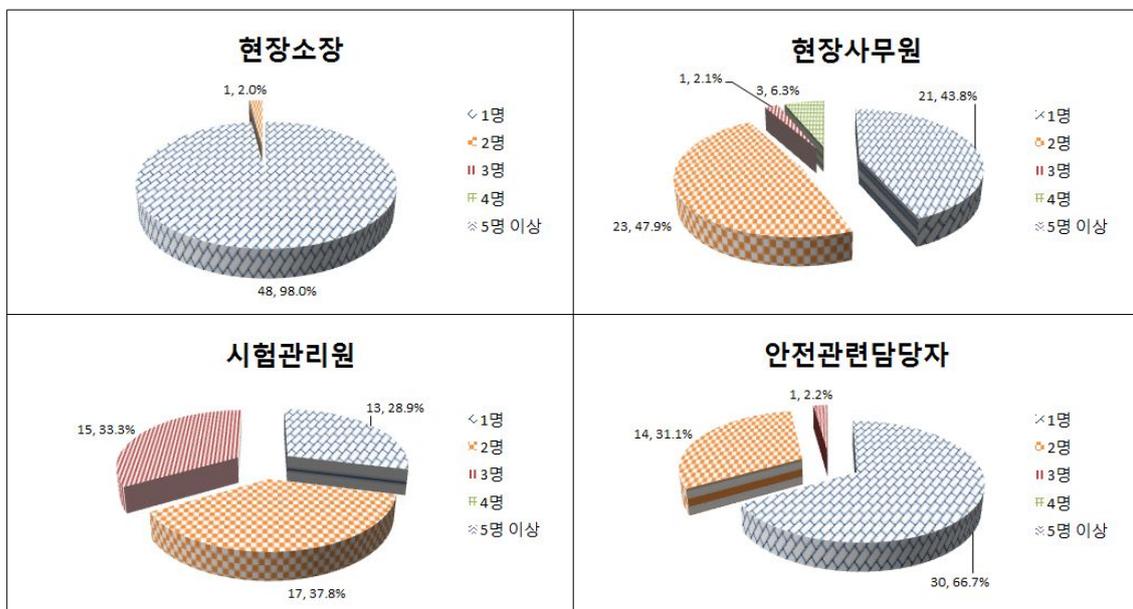


그림 3-45. 500억 이상 ~ 85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하) 건설사 : 공사규모별 분석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29.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98.5%	63				
2	현장사무원	100.0%	25	29	7	1	2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83.1%	16	13	14	8	3
4	노무관리원	47.7%	29		1		
5	자재구매관리원	73.8%	45	1		1	
6	공구담당원	84.6%	5	12	16	6	15
7	시험관리원	93.8%	6	28	23	2	1
8	교육산재담당원	23.1%	11	2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23.1%	13	1			
10	경비원	44.6%	22	5	1		
11	청소원	76.9%	49	1			
12	측량관련담당자	58.5%	16	15	5		1
13	안전관련담당자	98.5%	14	42	6		
14	기타	13.8%	1	2	3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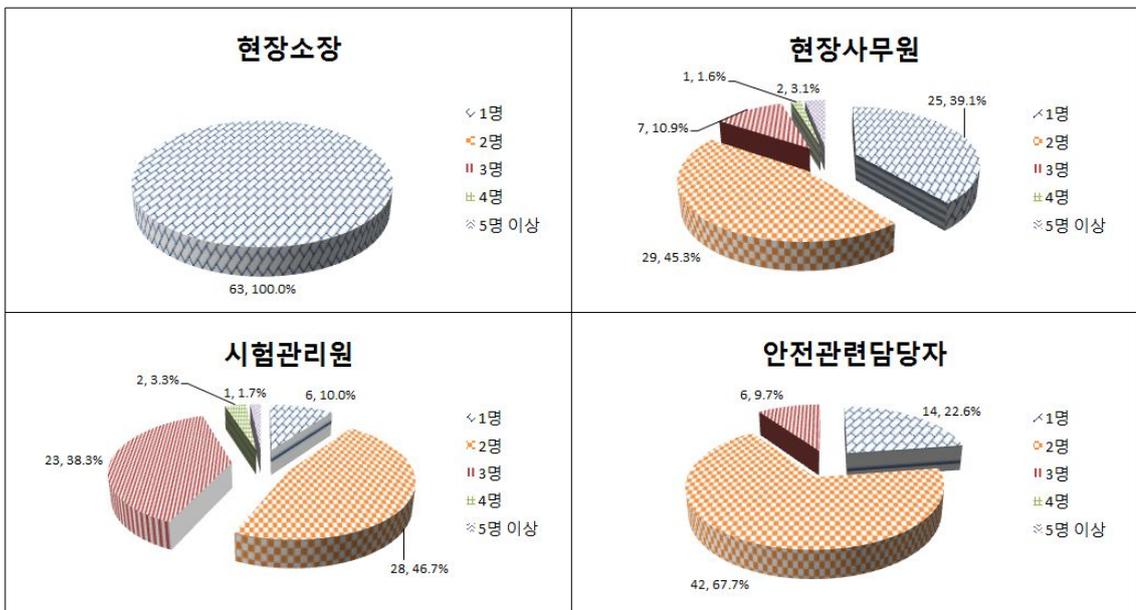


그림 3-46. 850억 이상 ~ 1,500억 미만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거) 건설사 : 공사규모별 분석 (1,500억 이상)

- 1,500억 이상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30. 1,500억 이상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100.0%	35				
2	현장사무원	97.3%	11	11	3	1	8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78.4%	7	11	5	2	3
4	노무관리원	62.2%	18	4			
5	자재구매관리원	24.3%	26	1			
6	공구담당원	89.2%	8	2	8	8	5
7	시험관리원	97.3%	4	16	12	1	1
8	교육산재담당원	29.7%	7	2	1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27.0%	8	2			
10	경비원	54.1%	10	2	5	1	1
11	청소원	64.9%	19	4			
12	측량관련담당자	70.3%	8	9	2	1	4
13	안전관련담당자	100.0%	5	8	11	2	9
14	기타	16.2%		1	3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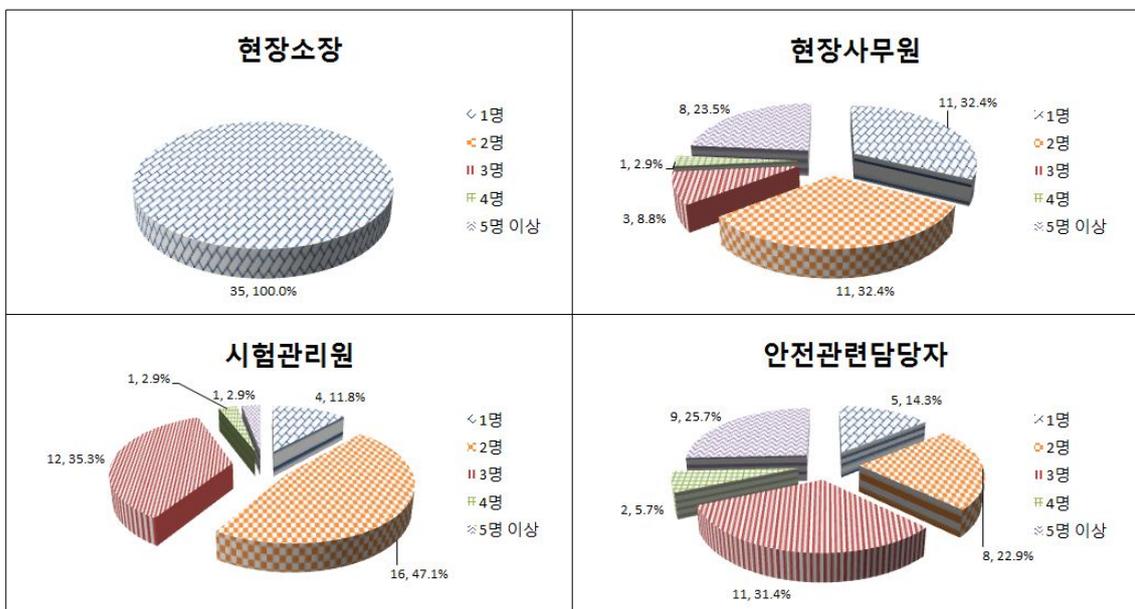


그림 3-47. 1,500억 이상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너) 건설사 : 공사규모별 분석 (기타)

- 87억 이하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3-31. 기타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NO.	직무	선택율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	현장소장	94.7%	17		1		
2	현장사무원	78.9%	8	5		1	1
3	기획설계부문종사자	42.1%	6		2		
4	노무관리원	10.5%	2				
5	자재구매관리원	21.1%	4				
6	공구담당원	26.3%	2		1	1	
7	시험관리원	47.4%	6		3		
8	교육산재담당원	10.5%	2				
9	복지후생부문종사자	10.5%	2				
10	경비원	36.8%	5	2			
11	청소원	15.8%	3				
12	측량관련담당자	15.8%	1	2			
13	안전관련담당자	78.9%	13	2			
14	기타	15.8%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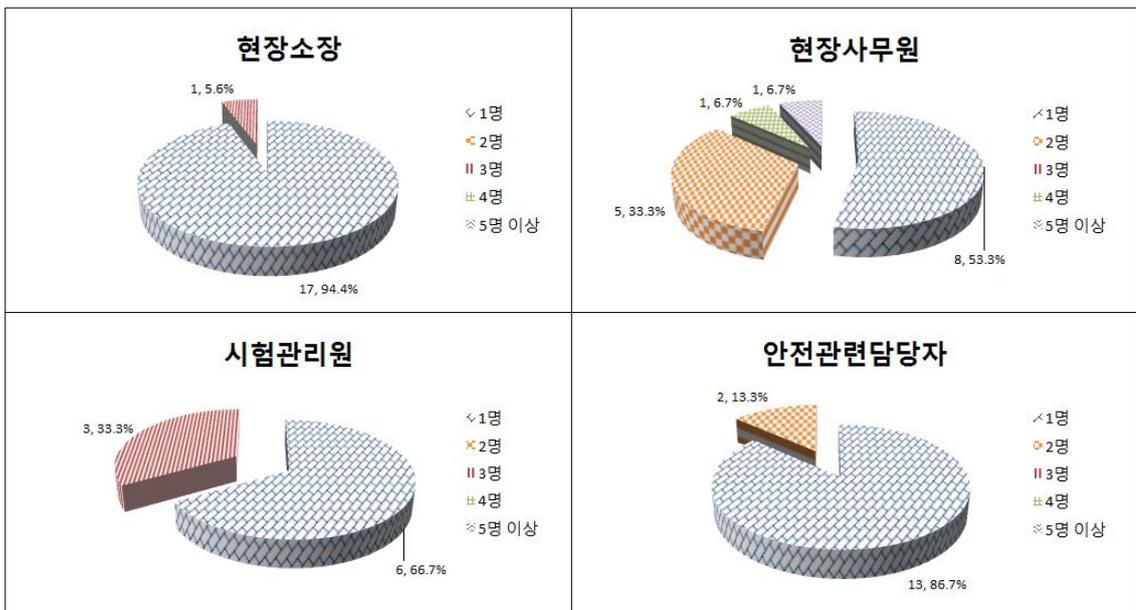


그림 3-48. 기타 공사기간 연장비용 인정직무 및 인원(건설사)

5) 불가항력에 대한 입장

-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의 부담은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발주처가 부담 하여야 한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견해 차이를 보임.
  - 발주처의 경우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24.3%)’, ‘비율에 의하여 분담하여 부담해야 한다(21.3%)’ 등의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건설사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5.2%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3-32. 불가항력에 대한 입장

구분	발주처 부담	법 개정 필요	비율에 의하여 분담하여 부담	기타
발주처	45.1%	24.3%	21.3%	4.9%
건설사	85.2%	7.2%	2.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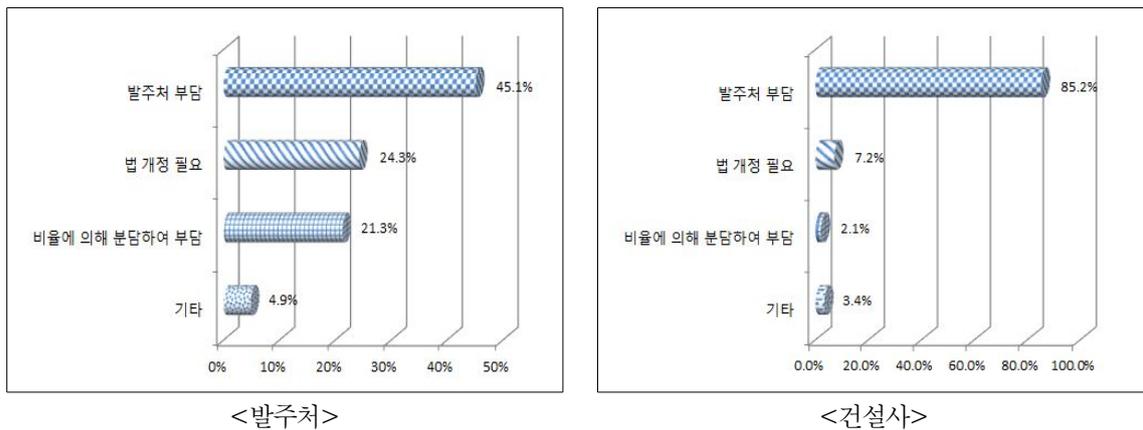


그림 3-49. 불가항력에 대한 입장

6) 귀책사유에 대한 설문

□ 귀책사유에 대한 발주처 입장

- 발주처가 응한 설문조사 결과, ‘예산부족(93.8%)’ 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발주처 책임이 높으며, ‘완공시험 지연(73.5%)’은 건설사 책임이 높다고 응답함.
  - ‘용지보상(86.2%)’, ‘인허가지연(77.8%)’, ‘문화재 시굴조사(83.6%)’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발주처 책임이 높다고 응답함.

- 발주처의 경우 ‘민원발생’, ‘장소변경 및 추가시험’, ‘도면이나 지시의 지연’은 발주처와 건설사의 귀책비율이 비슷하다고 응답함.

표 3-33. 귀책사유에 대한 발주처 입장(비율)

NO.	직무	전체		
		발주처	건설사	기타
1	인허가지연	77.8%	36.0%	37.1%
2	용지보상	86.2%	26.0%	37.2%
3	예산부족	93.8%	19.4%	33.1%
4	선행공사지연	57.5%	70.2%	34.8%
5	설계변경	69.1%	42.6%	25.7%
6	발주처요청 공사중단	88.5%	35.3%	27.4%
7	민원발생	48.8%	53.0%	47.8%
8	문화재 시굴조사	83.6%	33.3%	67.9%
9	동절기 공사중지	69.4%	49.3%	78.5%
10	공사용지미확보	80.1%	44.0%	30.8%
11	공사중단 후 계약해지	59.8%	65.3%	50.3%
12	지장물 철거	63.5%	55.9%	39.7%
13	도면이나 지시의 지연	57.7%	57.0%	27.3%
14	화석 출현	76.1%	41.6%	86.0%
15	장소변경 및 추가시험	55.6%	52.5%	49.1%
16	완공시험 지연	46.3%	73.5%	33.2%
17	법규의 변경	73.8%	36.7%	82.3%
18	기타( )	41.7%	50.0%	100.0%

#### □ 귀책사유에 대한 건설사 입장

- 건설사가 응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발주처 귀책비율이 높다고 응답함.
  - ‘예산부족(97.9%)’, ‘용지보상(96.7%)’, ‘발주처요청 공사중단(95.7%)’ 항목에서 발주처의 귀책비율이 높음.
  - ‘선행공사지연(76.3%)’, ‘완공시험 지연(71.4%)’ 항목에서는 건설사와 발주처의 귀책비율이 비슷하다고 응답함.

표 3-34. 귀책사유에 대한 건설사 입장(비율)

NO.	직무	전체		
		발주처	건설사	기타
1	인허가지연	88.7%	33.4%	44.5%
2	용지보상	96.7%	17.1%	42.0%
3	예산부족	97.9%	16.7%	41.4%
4	선행공사지연	76.3%	62.0%	45.7%
5	설계변경	77.9%	41.4%	41.1%
6	발주처요청 공사중단	95.7%	37.1%	31.1%
7	민원발생	68.6%	44.3%	61.7%
8	문화재 시굴조사	92.8%	36.6%	87.1%
9	동절기 공사중지	87.1%	49.8%	87.3%
10	공사용지미확보	92.3%	47.3%	41.1%
11	공사중단 후 계약해지	82.3%	49.4%	80.4%
12	지장물 철거	77.4%	47.7%	52.0%
13	도면이나 지시의 지연	79.8%	44.0%	36.8%
14	화석 출현	92.9%	44.1%	94.8%
15	장소변경 및 추가시험	78.4%	42.9%	70.3%
16	완공시험 지연	71.4%	64.6%	63.2%
17	법규의 변경	90.0%	39.1%	86.3%
18	기타( )	77.5%	30.0%	50.0%

마.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경험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신청 여부

-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발주처가 50.7% 정도 ‘신청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건설사의 경우에는 신청한 적이 있다와 없다가 43.9%로 동일한 응답률을 보임.

- 발주처의 경우 ‘신청 받은 적이 있다’의 여부를 조사

- 건설사의 경우 ‘신청한 적이 있다’의 여부를 조사

표 3-35.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여부

구분	있음	없음	연장된 적 없음
발주처 (신청 받은 적이 있다.)	50.7%	45.5%	3.4%
건설사 (신청한 적이 있다.)	43.9%	43.9%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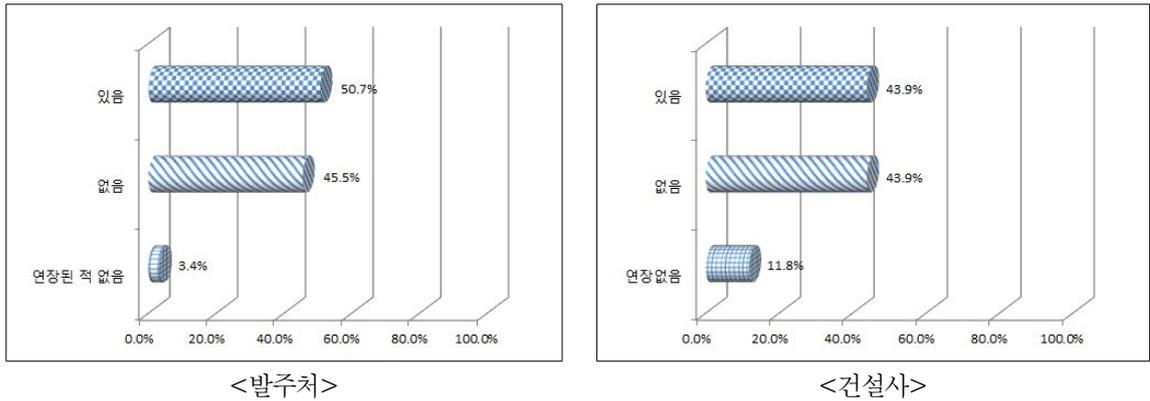


그림 3-50.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여부

2) 건설사 경우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대상

- 건설사의 경우 연장비용을 청구하는 대상은 주로 '발주처(공사감독관)(88.5%)'으로 나타남.

표 3-36. 건설사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대상

구분	발주처(공사감독관)	책임감리원	기타
건설사	88.5%	9.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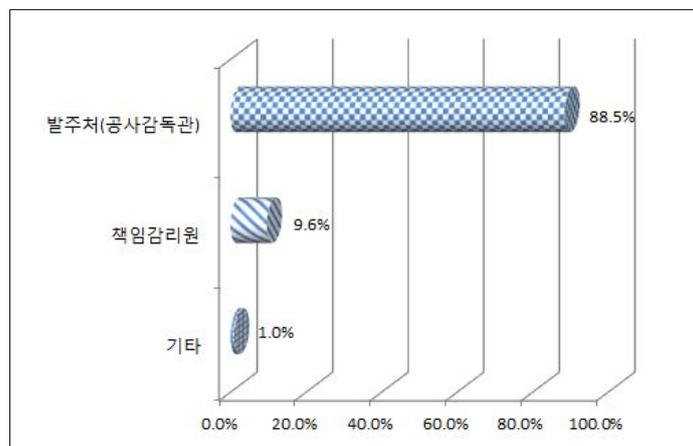


그림 3-51. 건설사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대상

3) 신청한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여부

- 신청한 공사기간 연장비용에 대해서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지급한적과 받은 적이 있음 (각각 74.3%, 54.3%)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함.
- 건설사의 경우 신청한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40.4%가 응답해 지급받은 비율만큼이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함을 알 수 있음.

표 3-37.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여부

구분	있음	없음	기타
발주처 (지급한 적이 있다.)	74.3%	22.8%	2.9%
건설사 (지급 받은 적이 있다.)	54.3%	40.4%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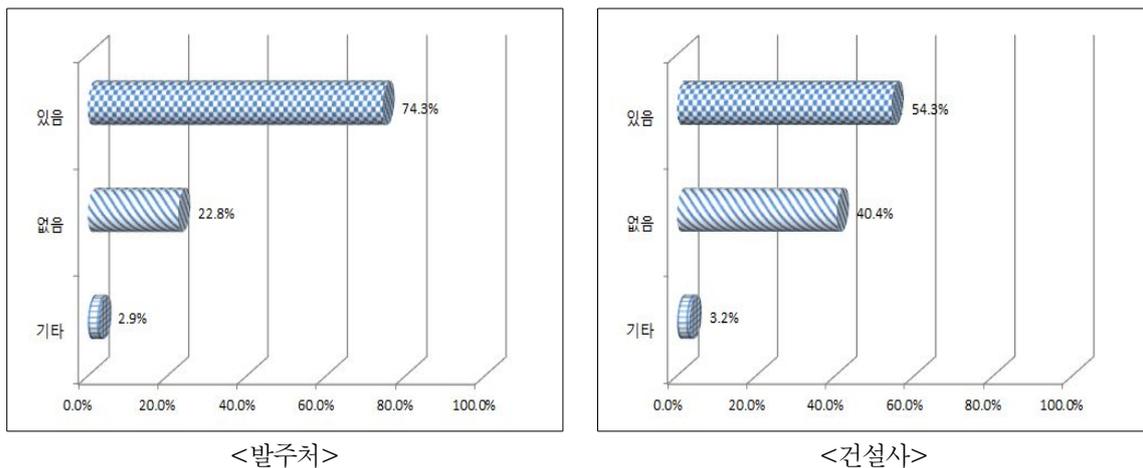


그림 3-52.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여부

4)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조치 방식

- 설문조사 결과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조치 방식은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발주기관이 직접 협의절차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38.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조치방식

구분	발주기관이 직접 협의절차에 응함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협의절차에 응하도록 함	기타
발주처	93.1%	4%	1%
건설사	90.2%	3.9%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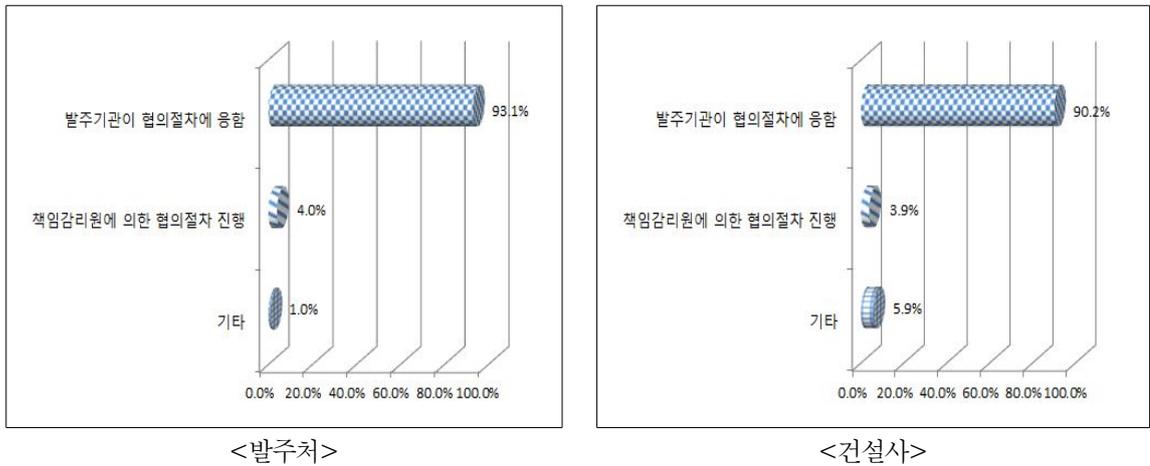


그림 3-53.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조치방식

5) 건설사 경우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시 문제점(중복 응답)

- 건설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발주처의 무지급 관행(53.4%), 발주처와의 관계 문제(45.5%) 순으로 나타났다.
- 청구절차의 복잡함(6.3%)에 대한 대답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39. 건설사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시 문제점

구분	발주처와의 관계 문제	산정방법 복잡성과 증빙의 어려움	청구절차의 복잡함	발주처의 무지급 관행	기타
건설사	45.5%	15.9%	6.3%	53.4%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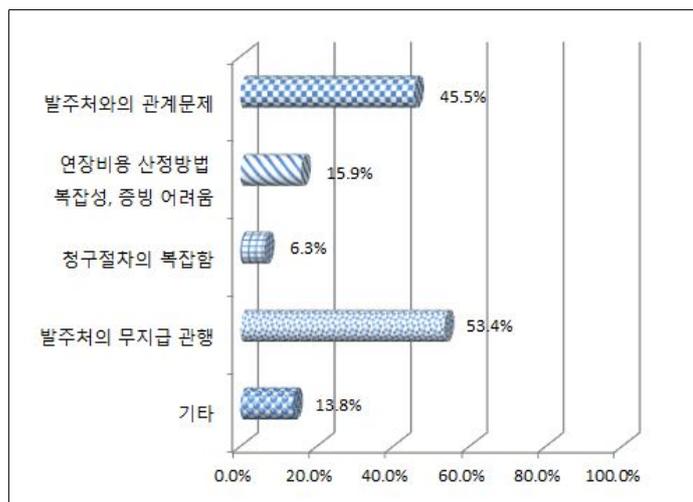


그림 3-54. 건설사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시 문제점

6) 발주처 경우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사유

- 발주처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사유로는 ‘공사기간 연장 관련법상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62%)’는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공시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사유로 ‘연장비용 검토의 복잡함(26.1%)’, ‘청구된 공사기간 연장비용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신빙성이 없음(31.7%)’, ‘공사금액의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비용 증가분에 포함되었다고 판단(28.7%)’은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표 3-40. 발주처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사유

구분	공사기간 연장 관련법상 연장비용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음	연장비용 검토의 복잡함	청구된 연장비용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신빙성이 없음	공사금액의 증가에 따른 연장비용 증가분에 포함되었다고 판단	기타
발주처	62%	26.1%	31.7%	28.7%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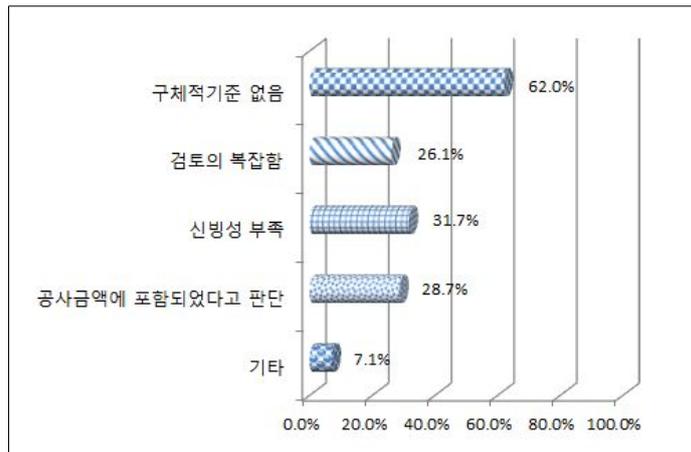


그림 3-55. 발주처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사유

7) 건설사 경우 공사기간 연장 시 발주처로부터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알림 여부

- 건설사 공사기간 연장 시 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신청에 대해 설명이나 고지를 받지 못했다(83.5%)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3-41. 공사기간 연장 시 발주처로부터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알림 여부

구분	있음	없음	기타
건설사	10.1%	83.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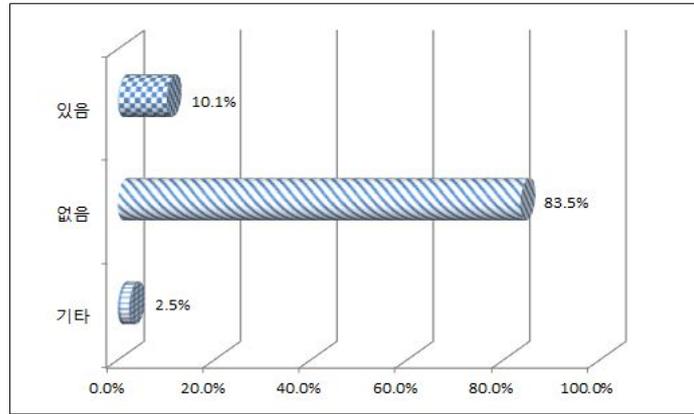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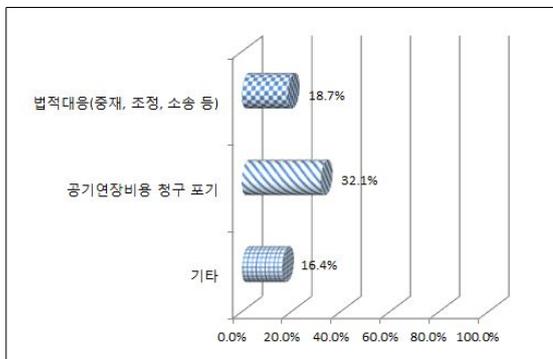
그림 3-56. 발주처로부터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알림 여부

8)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시 대응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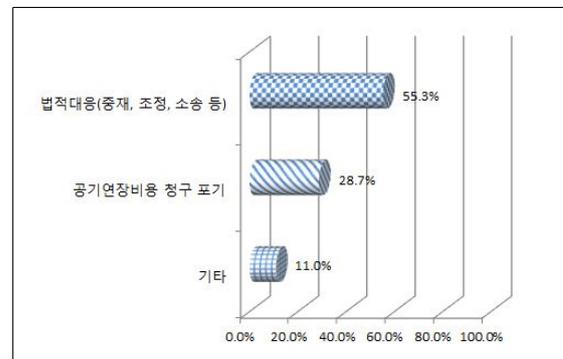
-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시 발주처 입장에서의 건설사 대응과 건설사 입장에서의 대응방식은 차이를 보임.
  - 발주처 입장에서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시 건설사가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를 포기(32.1%)’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 건설사는 발주처가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시 발주처에 대한 법적대응(55.3%) 방식을 가장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2.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시 대응방식

구분	법적대응(중재, 조정, 소송 등)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를 포기	기타
발주처	18.7%	32.1%	16.4%
건설사	55.3%	28.7%	11%



<발주처>



<건설사>

그림 3-57.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지급 시 대응방식

바.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시점

□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시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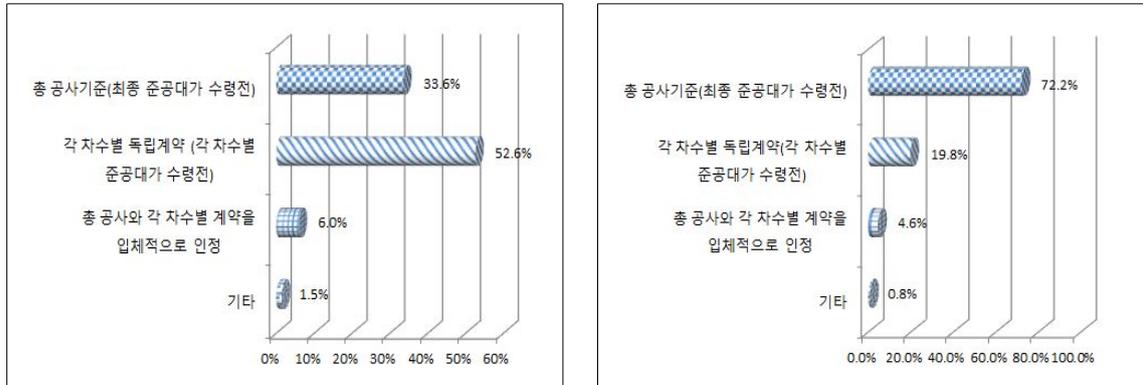
○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시점은 발주처와 건설사간의 견해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발주처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청구하여야 적법한 청구절차로 보는 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건설사는 총 공사를 기준으로 전체의 한 공사로 인정하여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청구하여야 적법한 청구절차로 보는 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3.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시점 의견

구분	총 공사기준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	각 차수별 독립계약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총 공사와 각 차수별 계약을 입체적으로 인정	기타
발주처	33.6%	52.6%	6.0%	1.5%
건설사	72.2%	19.8%	4.6%	0.8%



<발주처>

<건설사>

그림 3-58.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시점 의견

사.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1)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필요 여부

○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필요 여부는 발주처와 건설사의 견해차이가 나타남.

-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건설사는 조사자의 92.8%가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발주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의견도 41.8%로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3-44.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필요 여부

구분	필요가 있다	필요하지 않다	기타
발주처	50%	41.8%	6.3%
건설사	92.8%	5.9%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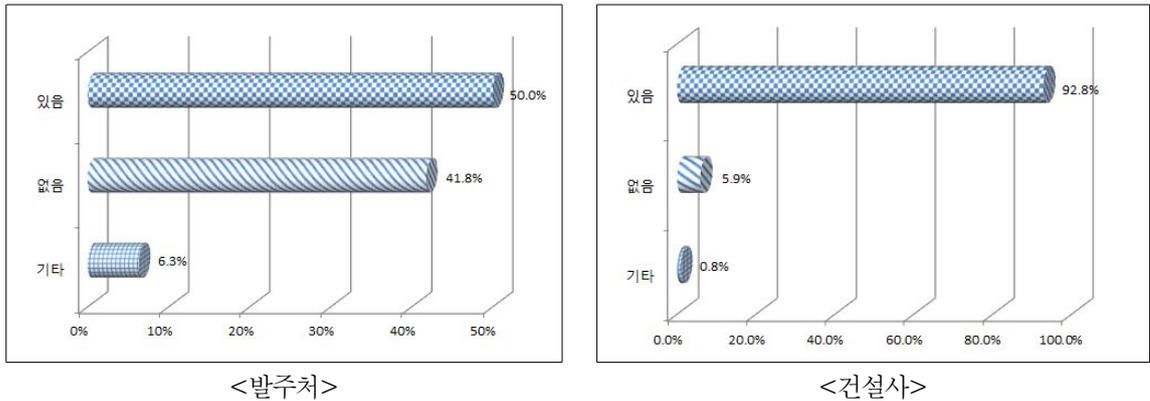


그림 3-59.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필요 여부

2)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사례

- 하도급 연장비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청구한 적이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함.
  - 그 중 발주처의 경우 91.8%가 청구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해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청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45.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사례

구분	있다	없다	기타
발주처(청구 받은 적이)	4.5%	91.8%	1.5%
건설사(청구한 적이)	28.3%	67.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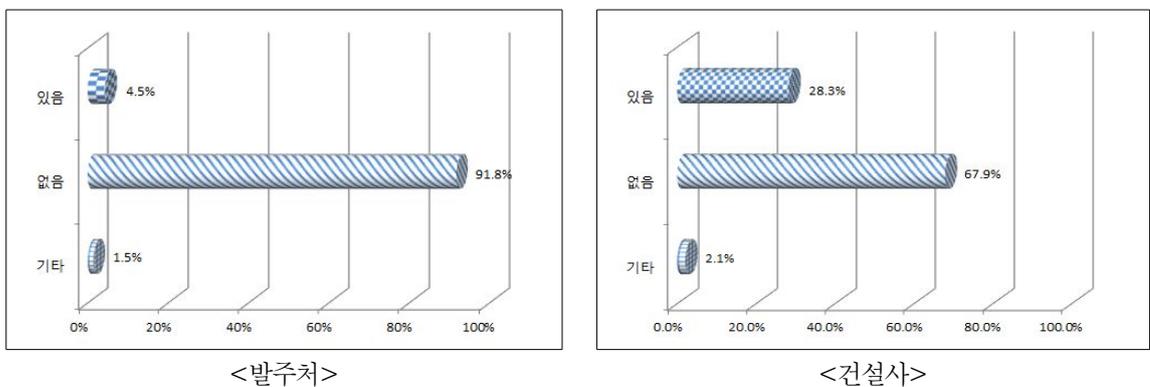


그림 3-60. 하도급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사례

3) 발주처 경우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시 조치방식

- 발주처는 청구 받은 하도급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비용은 ‘청구 받은 사례에 대하여 지급했다(50%)’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6.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시 조치방식(발주처)

구분	지급기준 등의 부재로 지급하지 않음	지급사례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청구 받은 사례에 대하여 지급함	기타
발주처	16.7%	8.3%	50.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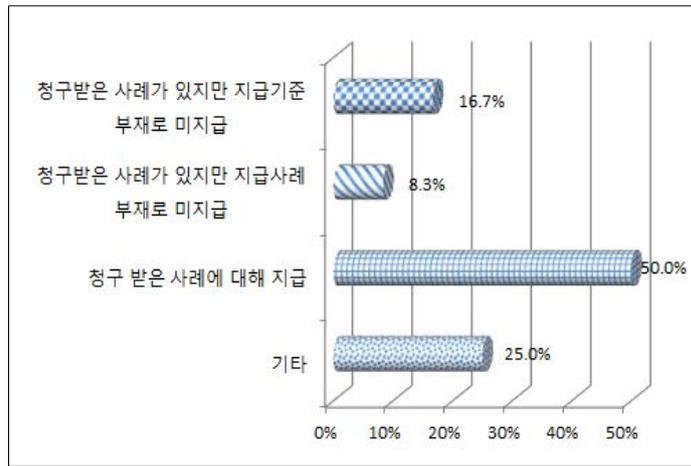


그림 3-61.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시 조치방식(발주처)

4) 건설사 경우 하도급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시 조치방식

- 건설사의 경우 하도급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요청 시에 ‘발주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청구하지 않았다(61.2%)’고 가장 많이 응답해 하도급사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주처에 청구하였으며 금액 또한 인정받았음(1.5%)’은 가장 적게 응답해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청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47. 하도급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시 조치방식(건설사)

구분	청구 받은 사례가 있지만 발주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 청구하지 않음	발주처에 청구하였으나 인정받지 않음	발주처에 청구하였으며 금액 또한 인정받았음	기타
건설사	61.2%	22.4%	1.5%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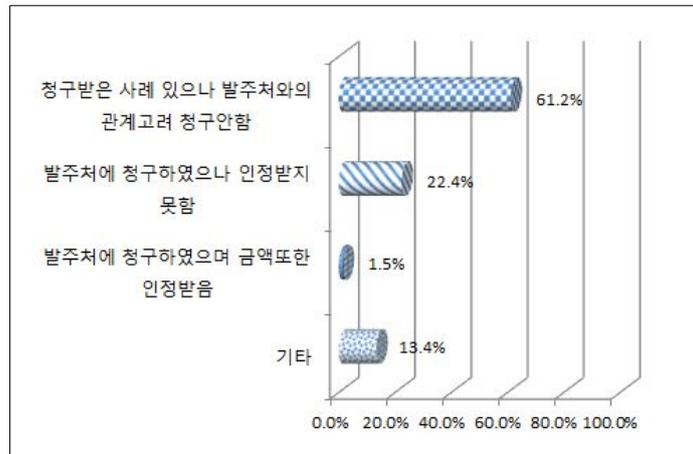


그림 3-62.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시 조치방식(건설사)

아. 기타 사항

□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계약금액 조정 관련 기준 신설 필요성 및 방향 제시

발주처	건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시</li> <li>•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요율 적용</li> <li>• 공사기간 연장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li> <li>• 물가변동과 동일한 기준 신설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조정항목으로 신설필요</li> <li>•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반영</li> <li>• 연장비용 산정의 명확한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명시</li> <li>•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조정</li> <li>•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지침 필요</li> </ul>

□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관점

○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인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발주처	건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수별 공사 시·종점 기간과 전체기간의 산정비용 등 적용 곤란</li> <li>• 공사기간 연장비용은 기준시점에서 장래 실행 물량 및 비용으로 신청함이 타당함</li> <li>• 시공업체의 반발 가능성, 물가상승률 반영방법 결정</li> <li>• 실질적인 작업이 되지 않는 기간(동절기 등)을 연장기간에 반영 시 예산낭비 우려</li> <li>• 행정처리(연차 계약)복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협의기간 부족</li> <li>• 공사의 연속성 및 계약의 지속성 미흡</li> <li>• 전체 공기산정 시 발주처-건설사간 이견 가능성 높음</li> <li>• 공기산정기준 모호</li> <li>• 공사기간 연장비용 발생은 선집행이므로 원가부담이 가중</li> <li>• 작업이 다소 복잡할 수 있어 간편한 업무 처리 불가능</li> </ul>

○ 각 차수별 계약을 독립적인 공사로 인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발주처	건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을 총체적으로 연기하여 사업추진이 곤란</li> <li>• 차수와 차수의 사이 기간 공사기간 연장비용 미 인정에 따른 계약 상대자 손해발생</li> <li>• 차수별 준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발생</li> <li>• 예산낭비 우려</li> <li>• 하자처리기간 및 하자처리 보증금 집행 모호</li> <li>• 실제 현장관리는 하고 있으나 공사기간 연장비용 수령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연장비용을 총사업비 내에 반영</li> <li>• 각 차수별 공사 휴지기간에 대한 연장비용 산정불가</li> <li>• 공사기간 연장이 자주 발생 시, 연장비용 증가 우려</li> <li>• 공무행정서류 증가</li> <li>• 건설사 및 하도급 인력 수급유지 어려움</li> <li>• 미계약기간(휴지기간 포함)과 전체공사관계간의 딜레마</li> </ul>

□ 현행 실비산정기준 개선방향

발주처	건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 실비산정방법, 연장비용 요율이 정해져야 함</li> <li>• 지체상금과 유사하게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단순화 필요</li> <li>• 잔여공사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요율 적용</li> <li>• 최소필요인원에 대한 경비, 일반관리비 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출기준 변경 및 요율 상향</li> <li>• 실제 투입금액에 대한 실비인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li> <li>• 실비 정산 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li> <li>• 요율 산정방식이 타당</li> <li>• 공사기간 연장비용 및 공사정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 통합</li> </ul>

□ 공사기간 연장비용 실비산정기준과 지체상금 요율산정기준 비교

발주처	건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 연장비용 또한 요율 산정방식 필요</li> <li>• 남은 공정 및 공사비를 고려한 금액산정</li> <li>• 공사기간 연장비용 적용기준의 명확화 필요</li> <li>• 현행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율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준 명확</li> <li>• 동일한 방식으로 일원화</li> <li>• 지체 상금은 준공일 기준 잔여공사비에 대해 산정</li> <li>• 현장 여건을 감안한 요율 재산정하여 차등 적용</li> </ul>



#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법리적 분석 , 04

1. 관련 현황 검토
2. 검토 결과



## 제 4 장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법리적 분석

### 제 1 절 관련 현황 검토

#### 1. 선행연구 분석

-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비용과 관련된 논문, 연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연구된 주제는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 및 제도 개선방안, 공사기간 연장 발생원인, 공사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계약방식, 그 외 기타 관련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연장 발생 시 연장비용 지급을 전제로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을 제시함.
  - 최민섭(2010)<sup>1)</sup>은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처 사유로 인해 공기 연장이 발생할 경우 추가 간접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산정기준인 계약예규의 실비산정 기준과 공공기관의 연장비용 지급사례를 통한 지급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 산정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음.
  - 조영준 등(2005)<sup>2)</sup>은 공공건설프로젝트 공사 수행 중에 공기관련 설계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사기간연장절차와 계약금액 조정 시 처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재섭(2007)<sup>3)</sup>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공기지연 발생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2년의 공사기간 연장을 가정하여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포함한 전체 손실이 공사원가의 약 1/3정도까지 발생하였음을 연구

#### 2. 조정 · 중재 · 판결 사례 분석

-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분쟁, 건설공사 타절에 따른 계약금 정산관련 분쟁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

---

1) 최민섭(201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리적인 간접비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2) 조영준 등(2005), 공공건설사업에서 계약기간 연장처리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3) 이재섭(2007), 공사기간 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분쟁 사례는 공기 연장 사유에 따라 인정 되는 연장비용의 청구 시기와 범위가 주된 쟁점임.

- 중재 시 공기지연으로 인한 연장비용 인정 범위 사례는 공기지연 사유별에 따라 공사기간 범위와 연장비용 인정이 주된 쟁점 이며,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으로 인정 되어 그 연장된 기간 동안은 관련 법령에 의해 연장비용 청구는 가능 하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연장비용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동절기 공사가 발생 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므로 지연 사유로 인정 하지 않고 있음.
  - 공기 연장에 소요된 현장관리비는 상호간의 합의 하에 별도의 지급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인정하고 있음.
  - 공기가 연장되어 그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사례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투입된 간접비용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
- 법원 판결사례 분석 결과, 건설사의 귀책 없이 합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공사기간 연장비용은 대부분 인정되고 있음.
  -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건설사는 발주처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 하고 있음.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기와 그 가능 여부에 대해 주된 쟁점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연장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내용 조정을 완료 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공사정지로 인한 공기 연장은 공사정지로 인해 증가되는 공사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비용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 하여 지급하고 있음.
  - 계속비계약으로 사업비부족에 따른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비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 3. 설문조사 분석

- 설문조사지 배포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의 일반특성,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 방식, 인정범위, 관련 제도개선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대책에 관한 발주처와 건설사의 의견수렴

-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시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발주처는 74.3%가 지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건설사의 경우에도 54.3%가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발생 시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발주처가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견해 차이가 발생함.
- 귀책사유에 대한 입장 또한 예산부족, 용지보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발주처 귀책비율이 높다고 응답하였음.
- 연장비용 지급 범위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한 의견으로는 발주처와 건설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개 직종 중 현장소장, 안전관련담당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4. 관련 법규 검토

-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법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있으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66조에 해당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12.31.>
  - ② 제65조제6항<sup>1)</sup>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 지체상금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 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의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 공사의 일시정지

-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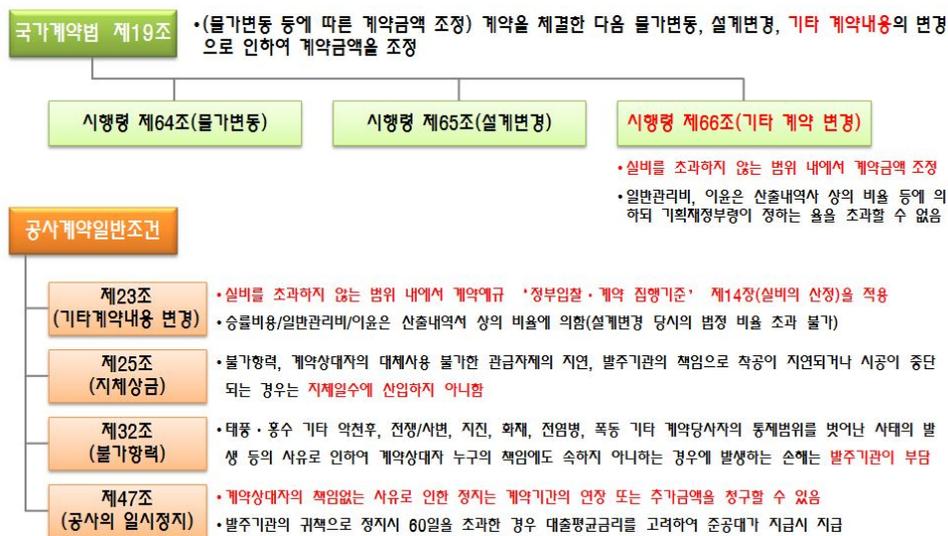


그림 4-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관련 법규

## 제 2 절 검토 결과

- 선행연구 분석결과, 최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증가로 공사기간 연장비용 관련 각종 소송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소송에 따른 사회간접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됨.
- 법원 판결 사례 분석 결과,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한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판결 결과 합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산정한 공사기간 연장비용은 대부분 인정됨.
- 설문조사 결과,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시 과반수이상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규 상,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존재 시 공사기간 연장비용은 지급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지급해야 함.
- 또한 2014년 5월 26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비용을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연장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1. 지급 필요성 종합분석

구 분	분석 근거 및 내용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증가로, 연장비용 관련 소송 늘고 있는 추세</li> <li>•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을 전제로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을 제시</li> </ul>
조정 · 중재 · 판결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한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등) 판결 결과 합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산정한 공사기간 연장비용은 대부분 인정</li> <li>• 소송에 따른 사회간접비용 증가</li> </ul>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 연장비용 신청 시 지급 여부에 대해 발주처, 건설사 모두 과반수 이상 지급하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li> </ul>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법률 시행령 제64 · 65 · 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 · 25 · 32 · 47조</li> </ul>

## 공사기간 연장비용 관련 대통령 발언내용 - '14.5.2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 -

“그 동안 공공기관은 공사발주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다든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비용을 건설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늘어나는 공사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법령에도 없는 특약을 정하여 건설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된다.”

“실제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 뽑도록 해달라. 또한 **건설협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림 4-2. 공사기간 연장비용 관련 대통령 발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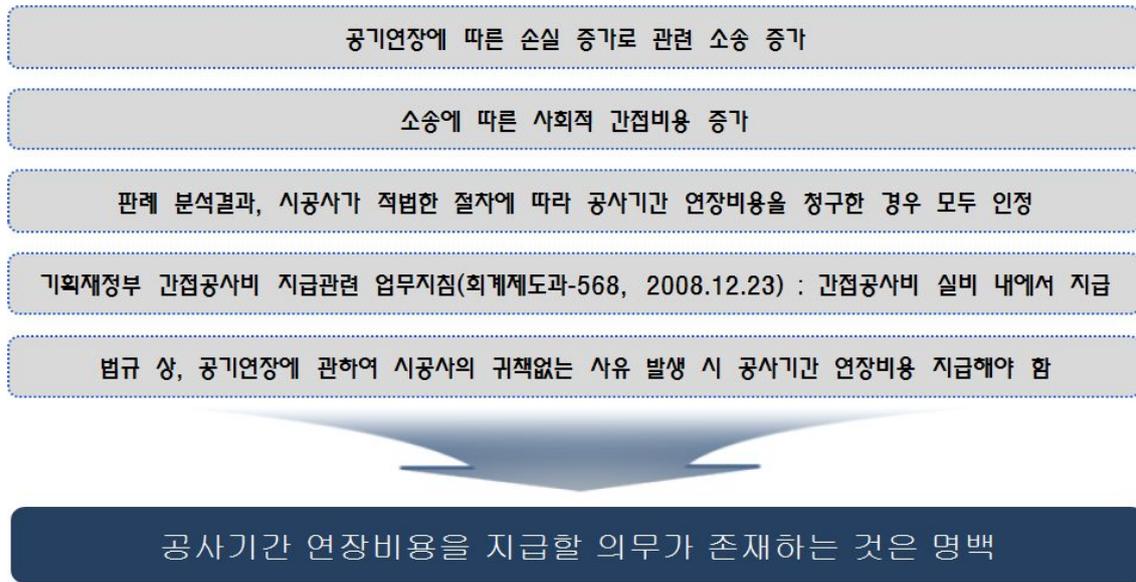


그림 4-3.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필요성 검토

# 공사기간 연장비용 정산기준안 , 05

1. 항목별 이슈 분석
2. 정산기준안
3. 향후 고려사항



## 제 5 장 공사기간 연장비용 정산기준(안)

### 제 1 절 항목별 이슈 분석

#### 1.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요건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건설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 ① 발주기관 책임에 의한 사유로 공사지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 ② 건설사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사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조사·확인한 후 공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사실
  - ④ 건설사가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사실
  -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 건설사가 위의 요건 중 한 개라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다면, 건설사로서는 청구하고자 하는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개별 사건들에 관한 분쟁이 그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는가와 관련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한 해석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기 때문임.

#### 2. 공사기간

- 민법에서 ‘기간(期間)’이란 時(年, 月, 週, 日, 時 등)의 집합으로서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함.
- 바꾸어 말하면 두 시점 사이의 시간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본 것이 기간(期間)임.
- 따라서 연차별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착공년월일부터 준공년월일까지의 계속된 시간이

공사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말함.

- 차수별 계약이 존재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백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음.

표 5-1. 차수별계약 시 공백기간의 공사기간 포함 여부(법원사례)

사건번호	법원 판단 내용	세부의견
2006가합12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수별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사는 전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차수별 공사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인원을 배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백기간도 공사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음.</li> </ul>
2003가합8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수별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는데, 공백기간은 계약 체결 사실이 없으므로 동 권리 및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li> </ul>

### 3. 공사기간 연장비용

#### 가. 간접노무비

- 「건설기술 진흥법」의 법적 인력배치 기준 및 발주처별 자체 인력배치 기준 등이 상이하고 실비정산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산정기준이 모호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최소인력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② 노무량 산출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함.

#### 나. 경비

-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항목으로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있으며, 판례를 보면 적법한 청구절차와 적절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을 인정해주고 있음.

- 각 항목별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도 있음.
- 아파트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건물이라 할 수 없어 아파트관리비를 지급임차료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음.<sup>1)</sup>
- 설문조사 결과 직원의 숙소로 발주처는 현장사무소(87.7%), 외부 직원숙소(23.9%), 건설사는 현장사무소(90.7%), 외부 직원숙소(80.2%)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현행 제도상 경비는 직접계상(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희장비비 등), 승률계상(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으로 구분함.
- 또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공사손해보험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특히 공사기간 연장비용 중 경비 항목은 그 세부 비목이 다양하고, 현행 제도 상 승률과 실비 항목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다.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연장비용 산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 반영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을 실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중복계상에 해당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에 의한 간접노무비 등의 비용이 당해 공사원가계산 시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을 감안
-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없는 경우 공인된 기간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간접노무비 등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 그 연장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을 계상하는 것은 중복계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간접노무비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어야 함.

1) 법원 판결사례 사건번호 2002가합3251

#### 라.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의 효시

- 미국정부는 라이스(Rice Const. Co.)와의 도급계약체결 후 설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공사의 착수를 지체하게 되었던 바, 당초 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 및 공사의 완공이 지체됨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도급인인 미국 정부에 청구하였음.
- 그러나 미국최고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에서, 설계변경된 부분의 공사(Changed Work)에는 적정비용의 보전을 허가하였으나,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사(Unchanged or Remaining Work)가 지체됨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연장비용)의 보전을 기각하였다. 이 판례에서 정립된 원칙이 소위 라이스 원칙(Rice Doctrine)이며 이 원칙은 1960년대 후반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이 되었음.
- 이후 20여년이 지난 1967년 드디어 미국정부는 공공공사 표준계약조건의 개정시 소위 앤티라이스원칙(Anti-Rice Doctrine)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주요 요지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추가공사비와 함께 그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기간 중 추가간접비, 즉 연장비용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임.
- 우리나라 역시 앤티라이스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 4.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대상기간

- 공사중단 등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최소의 인원(1~2인)으로 현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변경된 기간’의 현장인원은 당초 공사목적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조직임.
- 따라서 ‘변경된 기간’의 현장인원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이 아니더라도 당초부터 투입되어야 할 간접노무비이기 때문에 ‘연장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타당할 것임.
  - 그간 경험에 비추어 ‘변경된 기간’을 대상으로 청구한 연장비용은 다분히 과다청구의 소지가 있음.

## 제 2 절 정산기준(안)

### 1. 개요

#### 가. 목적

- 이 정산기준(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중 공사기간이 연장(이하 “공사기간 연장”이라함)되는 경우 주요 내용 등을 검토, 관리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손실비용 논쟁을 축소시키고, 국가예산의 낭비와 사회적 편익 손실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나. 범위

##### 1) 공간적 범위

-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2) 시간적 범위

- 시행일 : 이 정산기준(안)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
-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정산기준(안) 시행일 이후의 연장기간에 대하여 적용

##### 3) 내용적 범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및 계약조건의 현재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법률·지침 등 재·개정에 따라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비용에 대해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서는 과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변경 할 수 있음.

#### 다.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타 관계법규 및 지침

## 2. 청구절차

-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청구절차 그림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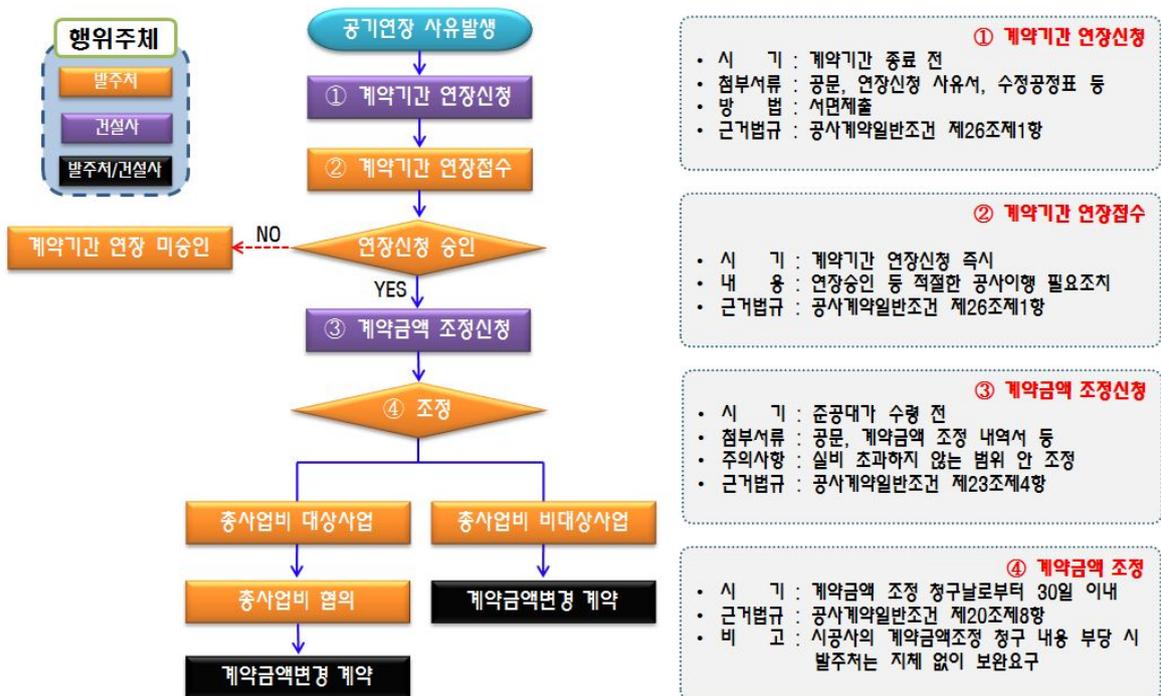


그림 5-1.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절차

### 가. 계약기간 연장신청

- 공사(계약) 이행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연장신청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 공사기간 연장 신청공문, 연장 사유서, 수정예정공정표, 투입인력계획서 등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 근거

#### 나. 계약기간 연장접수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 즉시 연장사유를 조사·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절차 및 공사의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공사기간 연장 사유서를 검토하여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예정공정표가 공사이행에 문제가 없는지 계약상대자, 공사 감독관 및 감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검토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늘어난 공사이행기간 중 투입되는 인력 또한 협의·검토하여 과다, 과소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
- 공사기간 연장의 승인여부는 00일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알려 공사 진행에 피해가 없어야 함.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공문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대비하여야 함.
  - 필요서류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문, 청구 보고서 등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항 근거

#### 다. 계약금액 조정신청

-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아래의 내용을 유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 1) 청구기간

-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청구하는 기간이 공사의 목적물을 유지·관

리하는데 필요한 기간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 간 공백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공사 목적물 유지·관리에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청구기간에 포함여부를 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 2) 청구범위

-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청구범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변경된 공사기간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사용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야 함.

## 3) 청구시점

### □ 계속비계약 공사

- 계속비계약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청구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약정한 당초 총공사 준공일 전까지 청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청구시점을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

### □ 장기계속계약 공사

-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청구는 각 차수별 연장기간과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약정한 총 공사 준공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

## 라. 계약금액 조정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의 계약금액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8항 근거
- 계약금액 조정 검토 시 필요한 자료 및 서류는 다음과 같음.

### - 1)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출내역서

- 2) 당초 및 수정 공사에정공정표
- 3) 인력투입계획서 및 현장조직도
- 4) 직접계상 비목에 대한 객관적인 영수증 자료 등

### 3. 산정방법

- 연장기간에 대한 비용 산출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4장 실비의 산정에 의하여 산출함.

#### 가. 간접노무비

##### 1) 관련규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제2항」 규정에 제시된 간접노무비 지급관련 서류를 활용하여 산출
  -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산출

##### 2) 산정방법 및 인정범위

-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법령상에 정해져있는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이외에 공사, 공무 등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노무량을 산출
-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세워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인력투입계획서 및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토·협의하여야 함.
  - 간접노무비 대상인원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공무책임자, 사무직 등 현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이외 인원에 대하여는 공사별 담당자 협의조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인력투입계획서에 의해 협의된 인력에 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급여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단, 지급된 임금 중 다음 항목은 제외)
  - 1)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정기적 급여(학자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기타 등)
  - 2) 상여금400% 초과분
  - 3) 퇴직급여충당금
- 계약담당공무원의 인력투입계획서에 대한 검토기간은 00일이며, 협의는 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표 5-2. 간접노무비 대상인원 정의

구 분	정 의
현장대리인	•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청부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
공사책임자	•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책임을 갖는 청부업자 즉 직원을 말함
공무책임자	• 현장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 수행 계획 및 효과적인 현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인원
품질관리자	• 품질관리자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함
안전관리자	• 건축 공사에서의 작업자나 제3자의 상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리의 책임자
관리(경리)	•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원칙에 따라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을 기록, 계산,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
경비원	•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침입, 도난, 화재,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인원
청소원	• 공사 현장, 사무실 등의 청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 나. 경비

### 1) 관련규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 2) 산정방법 및 인정범위

#### ① 직접계상경비

- 직접계상경비는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지급수수료, 기타 등 승률계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비목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발주처와 협의 인정된 금액을 산출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은 기타경비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과 함께 승률계상경비로 분류·산출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비목은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함.

#### ② 승률계상경비

- 승률계상경비는 산출내역서상 그 기준이 되는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은 최초 도급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 승률계상경비는 간접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으로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 1) 산재보험료 = 간접노무비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 2) 고용보험료 = 간접노무비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 3) 기타경비 = 간접노무비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

#### ③ 건설장비

-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희가 발생하게 되는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희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희비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함.
  - 1) 임대장비 : 유희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2) 보유장비 : (장비가격 × 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 ÷ 365일) × (유희일수) × 1/2

## 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

### 1) 관련규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1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2) 산정방법 및 인정범위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간접노무비 및 경비 금액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여 산출하며 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 1) 관련규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 공사손해보험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4조」

### 2) 산정방법 및 인정범위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함.

#### 4. 산출내역(안)

-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출내역(안)은 다음과 같음.

표 5-3.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출내역(안)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가. 간접노무비	-	(= ① + ②)
① 총급여	-	실비산정금액의 적용
② 퇴직급여충당금	-	총급여 × 1/12
나. 경비	-	(= ③ + ④)
③ 직접계상비목	-	실비산정금액의 적용
㉠ 지급임차료	-	
㉡ 유희장비비	-	
㉢ 보관비	-	
㉣ 가설비	-	
④ 승률계상비목	-	(= ㉠ + ㉡ + ㉢)
㉠ 산재보험료	-	(= 가. × 산출내역서상 요율)
㉡ 고용보험료	-	(= 가. × 산출내역서상 요율)
㉢ 기타경비	-	(= 가. × 산출내역서상 요율)
다. 순공사원가	-	(= 가. + 나.)
라. 일반관리비	-	(= 다. × 산출내역서상 요율)
마. 이윤	-	[= (다. + 라.) × 산출내역서상 요율]
바. 보증수수료 등	-	실비산정금액의 적용
사. 공급가액	-	(= 다. + 라. + 마. + 바.)
아. 부가가치세	-	(= 사. × 10.00%)
자. 합계	-	(= 사. + 아.), 천단위 절사

## 5. 법적근거

-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항목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음.

표 5-4. 공사기간 연장비용 법적근거

구분	법적근거
가. 간접노무비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제2항
① 총급여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② 퇴직급여충당금	
나. 경비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③ 직접계상비목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 지급임차료	
㉡ 유희장비비	
㉢ 보관비	
㉣ 가설비	
④ 승물계상비목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 산재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및 제73조
㉢ 기타경비	
다. 순공사원가	
라. 일반관리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마. 이윤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바. 보증수수료 등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①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②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③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④ 공사손해보험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4조
⑤ 기타	
사. 공급가액	
아. 부가가치세	
자. 합계	

## 6. 기타 참고사항

### 가. 기타 산정방법(안)

- 설문조사 분석결과 현행 실비 산정방법보다 산정에 용이한 효율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수렴됨.
  - 산정이 간편하고 검토가 용이한 효율방식 적용을 주장하는 설문조사 의견이 제기됨.
  -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및 청구의 남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함.
- 효율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연장된 현장의 많은 DB가 구축되어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은 현행 산정방법을 제외한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안)임.

#### 1) 제비율방식

- 제비율 방식은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M2-1)과 청구시점 조달청 제비율을 적용하여 비교·산출하는 방식(M2-2)으로 구분됨.
- M2-1 방식
  - 공사계약 당시 건설사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간접비 각 비목에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
  - 비목별 비율은 법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간접비 = 각 비목별 금액 × 각 비목별 비율 × 연장기간 ÷ 총 공사기간
- M2-2 방식
  - 공사계약 당시 건설사 산출내역서상 비율과 청구시점 당시 발표되는 조달청 제비율을 비교하여 최소값을 간접비 각 비목에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
  - 비목별 비율은 청구시점 조달청 제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간접비 = 각 비목별 금액 × (산출내역서 비율 or 조달청 제비율 최소값) × 연장기간 ÷ 총 공사기간

## 2) 손실보상방식

- 당초 도급계약금액에 대한 1일 손실비율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
- 1일 손실비율 = 간접공사비 ÷ 계약금액 ÷ 총공사기간
- 간접비 = 도급계약금액의 간접공사비 × 1일 손실비율

## 3) 현행방식과 비교

- 위 산출방식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음.

표 5-5.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 비교

구분	산정방식	정의	산출식
M1	현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산정방식으로 실비와 요율 혼합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비 : 간접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탄장비비</li> <li>• 승률 :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li> </ul>
M2	제비율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 당시 건설사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간접비 각 비목에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M2-1) - 비목별 비율은 법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공사계약 당시 건설사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간접비 각 비목에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M2-2) - 비율은 청구시점 조달청 제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비 = 각 비목별 금액 × 각 비목별 비율 × 연장기간 ÷ 총공사기간</li> </ul>
M3	손실 보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도급계약금액에 대한 1일 간접비율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비 = 간접공사비 × 1일 손실비율 - 1일 손실비율 = 간접공사비 ÷ 계약금액 ÷ 총공사기간</li> </ul>

## 나. 공기연장 비용 산출사례

### 1) 법원 판결사례

- 법원의 판결문 중 산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여 인정항목을 체크함.
- 체크되지 않은 항목은 불인정한 사례가 아닌 각 사건에서 발생하지 않은 항목임.

표 5-6. 공기연장비용 인정항목(법원사례)

구분	2012가합8524	2012가합20183	2005가합7150	2010가합9514
1.간접노무비	√	√	√	√
2.경비				
직접계상비목	√ <sup>1)</sup>			
지급임차료	√			√
유휴장비비	√			
보관비	√			
가설비	√			
승률계상비목				
산재보험료	√	√	√	√
고용보험료	√		√	√
기타경비	√	√	√	√
복리후생비		√	√	
소모품비		√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공사이행보증서				√
공사손해보험				√
전도금				√
계약보증수수료	√			
3.일반관리비	√		√	
4.이윤	√		√	
부가가치세	√	√	√	

1) 원고가 공기연장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산정하지 않았으나 산출내역에 포함됨.

## 2) 용역사 산출사례

표 5-7. 용역사 산출사례

구분	0000회관 리노베이션 건립공사	00~00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0공구	0000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0000 공원 건설공사	00-00 도로확포장공사
가. 간접노무비	206,329,530	1,638,908,201	404,246,894	330,763,792	1,139,240,597
① 기본급·제수당·상여금					
② 퇴직급여충당금					
나. 경비	26,132,870	210,931,649	65,605,072	89,071,147	127,467,665
③ 직접계상비목	1,806,620	63,790,800	13,930,747		18,205,380
㉠ 지급임차료	1,806,620	63,790,800	13,930,747		18,205,380
㉡ 보관비					
㉢ 가설비					
㉣ 유희장비비					
④ 승률계상비목	24,326,250	147,140,849	51,674,325	89,071,147	109,262,285
㉠ 기타경비	14,855,726	112,091,815	33,806,613	75,013,687	60,616,713
㉡ 산재보험료	7,634,192	26,127,474	14,957,135	11,245,968	35,316,458
㉢ 고용보험료	1,836,332	8,921,560	2,910,577	2,811,492	13,329,114
순공사원가	232,462,400	1,849,839,850	469,851,966	419,834,939	1,266,708,262
다. 일반관리비	8,136,184	64,550,161	19,733,782	14,694,222	
라. 이윤			58,750,289	39,107,624	
마. 보증수수료 등					
㉠ 계약보증수수료		47,064,770	1,631,000		
㉡ 공사손해보험료		217,739,800	16,419,000		59,259,600
㉢ 선금급보증수수료		36,848,850			
공급가액	240,598,584	2,216,043,431	566,386,037	473,636,785	1,325,967,862
마. 부가가치세(V.A.T)		221,604,343	56,638,603	47,363,678	132,596,786
[총계]	240,598,584	2,437,647,774	623,024,640	521,000,463	1,458,564,648

### 제 3 절 향후 고려사항

- 정산기준(안)은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는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산정방법 및 청구절차를 담당자가 쉽고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매뉴얼임.
- 정산기준(안)의 청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총사업비 대상사업과 총사업비 비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청구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총사업비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공사비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발주기관과 기획재정부 간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총사업비 비대상사업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당 정산기준(안)의 청구절차를 준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임.
-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건설사, 계약상대자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으로 본 정산기준(안)에서는 현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 부입찰·집행기준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한 산정방법을 적용토록 함.
  - 법원 판결문 사례를 통하여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산정방법을 분석한 결과 현행 계약 예규의 규정에 의거 금액을 산정함.
  - 법원에서는 과거 계약예규 개정 전(계약예규 2200-04-159-17, 10.11.30 이전) 기타 경비에 대한 산정방법에 있어 실비를 통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계약예규 개정 후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한 방식으로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을 인정함.
- 실비와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한 현행 산정방법은 실비산정에 있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전체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을 요율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산정이 간편하고 검토가 용이한 요율방식 적용을 주장하는 설문조사 의견이 제기
  -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및 청구의 남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
- 본 정산기준(안)에는 ‘기타 산정방법(안)’으로 요율방식의 산정방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 현장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DB가 구축되어야 가능함.
-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 현장들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조금씩 문제점들은 보완해야 할 것임.

- 본 정산기준(안)에서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출내역(안)에서는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산출내역(안)을 제시하고 있음.
  - 법원의 판결사례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판결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인정함.
  - 몇몇 사례들에서는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산출하여 판결금액에서 누락 되었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한 공사기간 연장비용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비용 정산기준(안)을 적용하였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산기준(안)을 시행해 나가며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5-8. 공사기간 연장비용 정산기준(안) 제언

구분		제언
공사기간 연장비용 정산기준(안)	청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대상사업과 비대상사업의 구분</li> <li>• 기획재정부와의 협조</li> <li>•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li> </ul>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산정방법 제시</li> <li>• 효율방식 적용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 연장 현장의 DB 구축</li> </ul> </li> <li>•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 확인</li> </ul>



## 관련 법 · 제도 개선방안 , 06

1. 총사업비관리지침
  2.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 



## 제 6 장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제 1 절 총사업비관리지침

#### 1.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공사기간 연장 등과 같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총사업비 조정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금액(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 조정 규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 기타 계약내용변경(공사기간 연장) 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에서 공사변경에 따른 산출기준을 규정
  - 다만,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는 기타 계약내용(공사기간 연장)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규정과 배치
  -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총사업비 조정에 해당하는 공사기간 연장사유 및 사업비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렵더라도 큰 틀에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임.
  -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총사업비의 증액을 억제하는 수단으로만 남용되고 있는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요구됨.
- 국가계약법령 등에서는 실비정산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연장비용에 관해서는 정산범위 및 기준 등이 없고,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지급 기준 등이 없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증빙 논란 등으로 공사현장의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임.
  -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기간 연장비용 제도에 대한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조로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의 명확한 개선이 필요
  - 예산부족의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요구 자체를 거부한다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의해 막대한 사회적 간접비용 발생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조에 의하면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효율성과 더불어 정확성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임.
-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이 어려우므로, 대형공사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예비비) 확보방안이 필요
  - 발주기관의 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선례의 부재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문화가 필요
- 또한 건설사 및 건설협회 등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다든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비용을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들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를 개정하여 총사업비조정 대상 항목에 공사기간 연장을 추가하며, 자율조정항목 또는 협의조정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건의 공문

-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대한 위 문제점 및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설사, 대한건설협회, 조달청 등에서 공문을 통하여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sup>1)</sup>

### 가. 건설사 10개 업체

- 수신 : 대한건설협회장
- 참조 : 계약제도실장
- 일자 : 2012년 2월 29일
- 제목 :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건의
- 주요내용
  - 간접비 산정기준 개선(계약예규 2200-04-159-17, '10.11.30)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발주처는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지급 선례가 없음을 이유로 불인정

1) 부록-05.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건의 공문 참조

- 또한 예산주무부처의 예산 미승인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불인정
- 특히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총사업비 변경)이 명기되지 않아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
- 국가계약법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만을 인정하여 이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조에 의한 국가계약법 준용규정 위반이라고 주장
- 발주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업무를 기피하여 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한다고 주장
- 이에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를 개정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함.

#### 나. 대한건설협회

- 수신 :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 참조 : 예산정책 과장, 총사업비관리 과장, 계약제도 과장, 재정관리 과장
- 시행 : 계약제도실-145
- 일자 : 2012년 3월 15일
- 제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개선 건의
- 주요내용
  - 간접비 산정기준 개선(계약예규 2200-04-159-17, '10.11.30)하였음에도 대부분의 발주처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조정사유로 명기되지 않아 간접비 청구를 불인정하는 실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임의 규정적 성격 및 예산부족 이유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 이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자율조정 항목에 '공사기간 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포함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
  - 건설공사 프로젝트별 예비비 확보 대책 마련

#### 다. 조달청

- 수신 : 기획재정부 장관
- 참조 : 총사업비관리 과장
- 시행 : 예산사업관리과-1129
- 일자 : 2013년 5월 24일
- 제목 :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건의
- 주요내용
  -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 발생 시 추가비용에 대한 총사업비 사전협의 부당으로 미 반영되는 사례가 있음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자율조정항목에 포함되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요청

#### 라. 대한전문건설협회

- 수신 :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 참조 : 계약제도와, 총사업비관리과, 예산정책과, 재정관리과
- 시행 : 건설지원 제347호
- 일자 : 2012년 3월 30일
- 제목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제도 개선 건의
- 주요내용
  - 발주기관에서는 예산부족,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공사기간 연장 관련 계약금액조정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조치 실행사례가 매우 드문 상황
  -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경영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자율조정 항목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 포함 건의
  - 계약법령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
  - 건설공사 프로젝트별 예비비 확보 대책 마련

### 3. 개정(안)

- 건설사, 대한건설협회, 조달청 등은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총사업비 조정사유에 포함하고자 함.
-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14. 7.)에 내용을 추가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⑨항을 신설하여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이라고 명시하여 현행 규정의 준수와 총사업비 조정 범위를 명확히 함.
- 다음은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14. 7.)과 개정(안)을 비교한 표임

표 6-1.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안) 비교표

현행	개정(안)
제64조(시공단계) ① ~ ⑧ (생략) <신 설>	제64조(시공단계)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단, 추가적인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기연장 시는 제외한다.

## 제 2 절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 1. 발주기관별 공사기간 연장비용 조정지침 수립

- 공사기간 연장비용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계약 규정 등의 기반 환경의 보완과 세부 관련 지침의 제정도 필요함.
  -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등 공사기간 연장 발생시, 사업 및 현장 특성을 반영한 현장유지, 관리인력의 적정 인력배치 기준의 정립이 필요
- 일부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한국도로공사의 ‘총 공사비에 따른 품질관리인원 배치기준’)은 인력배치와 관련된 자체 규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입되는 적정기준이 아니며, 실제 그 활용성이 떨어짐
  -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현장소장, 특급 품질관리원, 중급 품질관리원, 초급 품질관리원, 안전관리자, 공무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노무관리

표 6-2.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연공사비 구분	100억 미만	100억-300억 미만	300억-500억 미만	500억 이상	비고
소요인원	9인	12-13인	14-15인	19인	
현장소장	특급(1)	특급(1)	특급(1)	특급(1)	
특급 품질관리원	특급(1)	특급(1)	특급(1)	특급(1)	
중급 품질관리원	중급(1)	중급(1)	중급(1)	중급(1)	
초급 품질관리원	초급(2)	초급(3-4)	초급(5-6)	초급(8)	
안전관리자	초급(2)	초급(2)	초급(2)	초급(2)	
공무관리	초급(1)	초급(1)	초급(1)	초급(2)	
공사관리	초급(1)	초급(1)	초급(1)	초급(2)	
자재관리		보통인부(1)	보통인부(1)	보통인부(1)	
노무관리		보통인부(1)	보통인부(1)	보통인부(1)	

[자료] 건설계획처(2006.10.)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간접비 적용방안 검토

- 한국토지주택공사 ‘총 공사비에 따른 품질관리인원 배치기준’ : 현장대리인, 공사책임자, 공무책임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공종별 기술자(주택건설), 공종별 기술자(단지/조경공사)

표 6-3. 한국토지주택공사 품질관리인원 배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현장대리인	●1인 배치
공사책임자	●발주된 공종별(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책임자 각 1인 배치 (주택건설부문)
공무책임자	●1인 배치(조경,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품질관리자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1인 배치(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배치 제외)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안전관리 경력3년 이상인 자 1인 배치
공종별 기술자 (주택건설)	●건축+기계(+단지토목) 발주공사 : - 건축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150호 미만 - 기계기술자 수 : 건축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호 미만
	●조경 발주공사 : 조경기술자 1인 이상
	●전기·정보통신 공사 : 전기·정보통신 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600호 미만
공종별 기술자 (단지/조경공사)	●토목 발주공사 : 토목기술자 1인당 담당공사 물량 ●조경 발주공사 : 조경기술자 1인 이상

- 따라서 발주기관별 공사기간 연장 발생 시 현장 유지 및 관리 인력 배치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배치 기준을 수립하여 공사 착공 시점 전후에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며, 분쟁에 따른 사회적 간접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와 사업특성별 공사기간 연장사유를 유형화하여 분쟁 해결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건설사와 발주처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 표준계약서(안)

### 가. 문제점 및 필요성

- 발주기관 별로 도급계약서의 양식이 통일되지 않고 각 기관별 계약서 양식을 적용하여 계약을 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도급계약서 상 총 공사일수만을 표기하여 총 공사준공일이 불분명하여 공사일수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총 공사일수만을 표기, 총 공사준공일 미 표기

표 6-4. 발주처별 계약서 명기사항

발주처	계약서 명기 내용	특이사항
한국수자원공사	• 총공사기간, 차수 공사기간 표기	-
한국철도시설공단	• 총착공일·준공일 표기 • 차수 착공일·준공일 표기	• 차수간의 미계약기간을 감안하지 않아 분쟁 사유 발생
한국도로공사	• 총공사일수, 차수 착공일, 준공일 표기	• 총공사의 준공일 미표기로 인해 건설사의 불이익 발생 <sup>1)</sup>
한국토지주택공사	• 착공일, 준공일 표기	• 계속비 공사가 대부분

- 차수별 계약이 존재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함.
- 이는 총 공사일수를 실제공사일수로 산정하여 각 차수 간 휴지기간 및 공백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계약상대자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최근 판례에서는 차수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면서 총 공사기간에는 포함되는 공백기간 또한 전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장유지의 필수인원 배치가 불가피한 기간으로 공사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결되고 있음.
- 법원 판결사례에서도 장기계속공사의 공백기간의 공사기간 포함여부가 공기연장의 중요쟁점이 되는 실정임.

1) 예> 원래 공정대로면 연간 300억원, 공사기간 10개월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발주처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200억원, 공사기간 7개월만 진행하도록 했을 경우 총 공사준공일도 늘어날 수 밖에 없으나, 건설사업장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 해당사유도 되지 못하므로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도 불가능함.

표 6-5. 공백기간 포함여부 법원 판결사례

사건번호	법원 판단 내용	세부의견
2006가합12051	• 차수별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	• 건설사는 전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차수별 공사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인원을 배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백기간도 공사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음.
2003가합8460	• 차수별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는데, 공백기간은 계약 체결 사실이 없으므로 동 권리 및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표준계약서(안)을 제시하여 공기연장 기간 일수 산정에 대해 명확히 하여 분쟁 최소화하여야 함
- 총공사기간, 공사휴지기간(동절기 등) 및 차수별 공백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 착수일자와 준공일자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 표준계약서(안)

- 공사도급계약 시 공기연장의 분쟁을 최소화를 위하여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를 명확히 기재

표 6-6. 표준계약서(안)

공사도급계약서 (장기계속계약)		계약번호	제 0000-00-00-000 호	
		관리번호	제 0000-0000 호	
계약 내용	공사명	0000 건설공사		
	계약금액	일금오십억원정 (₩ 5,000,000,000)		
	총공사부기금액	일금일백억원정 (₩10,000,000,000)		
	계약보증금	일금이십억원정 (₩2,000,000,000)		
	현장	0000 000 000 0000		
	지체상금율	1 / 1000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지수조정율		
	착공일자	0000년 00월 00일	준공일자	0000년 00월 00일
총 착공일자	0000년 00월 00일	총 준공일자	0000년 00월 00일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붙임과 같음	₩ 0원	₩ 0원 0%		년

※ 한국철도시설공단 도급계약서 참조

### 3.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의 도입과 전문가 또는 제3의 기관 참여 활성화

- 현행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 및 실시 설계 - 입찰 - 시공’의 각 단계별로 총사업비 관리가 수행되어 예산절감의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경직적인 제도 운영에 따른 총괄적인 사업 차원의 효율성이 다서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음.<sup>1)</sup>
  - 예산 배정 문제 등 사업기간이 늘어나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현실임.
  - 관리제도 운영상 각 단계별 상이한 조직이 수행하는 구조로 일관성이 부족하며 관리 주체의 전문성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요구됨.
- 따라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공사기간 연장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총괄적 관점에서 사업단계별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 도입이 필요
  - 영국의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는 제시된 심사 항목에 대한 발주자의 자체평가를 수행한 후 해당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제3자의 위치에서 해당 사업을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승인함.
  - 따라서 국내에서도 사업의 내·외부 전문가나 전문조직이 사업 단계별 점검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해당 사업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미국은 추가비용이 시공자의 증빙으로부터 쉽게 확인될 수 없을 때 제3의 기관, 즉 법원 또는 중재기관이 연장비용을 결정하는 배심결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계약기관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요소의 항목을 심의·참작하여 총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연장비용, 즉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결정함.

### 4. 공사기간 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

- ‘공사기간 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명시

1) 박용석 등(2011), 총사업비관리제도의 현황과 실태조사

- 공공공사 계약에 관한 법률인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공사기간 연장 사전합의 제도’를 명시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저감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공사기간 연장비용이 발생하고 난 뒤 선택적으로 표준비용을 적용한다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여야 함.
- 따라서 현행정산(실비 + 승률) 방법과 사전합의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표준추가간접비’ 정산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용하되 그 선택은 계약체결시점에 선택하여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나. 공사기간 연장 표준추가간접비

- ‘공사기간 연장 표준추가간접비’는 시기에 따라 단가의 물가변동률이나 건설 산업 전반의 통제를 반영해야함.
- 따라서 해당 부처 또는 해당 부처의 지정기관이 조사한 자료를 개정 고시하여 이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이 분쟁이 없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획재정부, 대한건설협회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한 원가계산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합리적인 ‘공사기간 연장 표준추가간접비’가 산정 제시되어야 할 것임.

### 5. 공사기간 연장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뜻함.
-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 될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합의서 등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행위는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정당화 될 수 없음.
- 그러므로 발주자의 책임소재 문제발생 가능성 등으로 계약금액조정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발주자, 계약담당공무원, 실무자들에게 공사기간 연장 관련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6. 기타 개선방안

### 가. 장기계속계약 제도의 개선

-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 변경 또는 예산확보 실패 등 국가 내부적 상황 때문에 연차별 계약을 하지 않을 때 수주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계약조건과 법령에 규정해야 함.
-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각 연차별계약 체결 시 당해 연차별계약의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만을 개별적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함.
- 계속비계약의 활용 증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함.

### 나.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발주자-원도급자 관계 등)

-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
-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 다. 공기단축형(A+B) 입찰제도의 도입

- 발주기관에서 공사기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 제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의 주원인이 장기계속계약 공사라는 예산배정방식으로 인한 예산 부족에 있다 보니,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공기단축형(A+B) 입찰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발주기관과 건설사 모두 공기 준수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됨.

### 라. 하도급사의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권한 부여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없다는 책임회피를 하고 있음.
- 그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법령을 들고 있음.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하수급인에게도 발주기관에 대한 추가비용 청구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명문규정이 신설되어야 함.
- 하도급사의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권한을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동반자의식 공고화
  - 수급인의 업무해태에 따른 하수급인의 위험부담 감소
  - 수급인이 포기하던 계약금액 조정사안에 대한 업무추진 가능





## 결론 및 제언 , 07

1. 결론
  2. 제언
- 



## 제 7 장 결론 및 제언

### 제 1 절 결론

- 현행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서 현장여건 및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비용 문제로 발주처와 건설사 등 계약상대자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선행연구, 국내외 분쟁사례 및 공사기간 연장 실태·설문조사를 분석하여 공사기간 연장 실무지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의 발생원인, 산정방법 및 제도 개선방안과 공사기간 연장 방지를 위한 개선안 등을 분석하여 연구함.
  - 주요 공공발주기관의 실태를 분석하여 공사기간 연장비용 보상 현실의 문제점 분석
  - 현행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산정방법 대안 제시
  - 공사기간 연장 발생원인을 분석,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공사기간 연장 관련 조정·중재·판결 사례를 조사하여 공기연장의 발생 사유 및 귀책사유 및 인정항목에 대하여 법원 등에서 판단하는 추세를 분석함.
  - 3심 종결된 판결사례는 원고(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연장비용의 청구를 인정
  - 법원의 판결사례에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산정방법은 실비와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한 현행 방식 적용
  - 공사기간을 연장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연장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내용 조정을 완료 하여야 한다고 판시
  -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이 변경 되었을 경우, 당사자 합의 하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공사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단
- 공사기간 연장 관련 해외사례에서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인정하고 있음.

- 공사기간 연장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550개의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공사종류, 계약방식, 공사기간 연장 귀책여부, 공사기간, 계약금액, 연장사유 등을 조사함.
  - 전체 조사현장 중 32.7%의 비율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
  - 공기연장 발생현장 중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긴 토목공종의 공사가 80%이상 차지
  - 공사금액별 비율로는 500억 미만 공사가 36.7%의 비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공기연장 발생사유로는 예산부족이 26.7%의 비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공사기간 연장 관련 발주처·건설사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일반특성,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식, 인정범위, 관련 제도개선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 총 505개 유효부수로 조사(발주처: 268개, 건설사: 237개)
  - 산정방법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효율방식이 실비방식보다 근소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냄.
  - 그러나 효율방식은 손실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등의 이유가 있어, 정확한 반영과 국가 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명시된 실비방식을 동의하는 의견도 조사결과 나타남.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의 검토과정 중 문제점으로는 실비 산정기준의 모호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에 따른 개선안이 요구
- 위 일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은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판례 분석결과 건설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비용을 청구한 경우 모두 인정
  - 관련 법규 상 공기연장에 관하여 건설사의 귀책 없는 사유 발생 시 연장비용 지급
  - 설문조사 결과 발주처와 건설사 대부분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하거나 받아야 된다는 의견
-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 중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주요 내용 등을 검토, 관리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기 위하여 업무절차의 정산기준(안)을 제시함.
  - 현행 규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 구체화
  -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은 실비와 효율이 혼합된 현행방식을 채택
  - 기타 산정방법으로 효율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나,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의 DB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발주기관에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공사기간 연장 등과 같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다른 계약금액조정이 총사업비 조정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기간 연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 간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발주기관별 공사기간 연장비용 조정지침 수립, 표준계약서(안) 제시,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의 도입과 전문가 또는 제3기관 참여 활성화, 공사기간 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 공사기간 연장 관련 규정에 대한 담당자 교육, 장기계속 계약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실용적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7-1. 연구 결론 요약

구분	내용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공공발주기관의 실태를 분석하여 공사기간 연장비용 보상 현실의 문제점 분석</li> <li>• 현행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산정방법 대안 제시</li> <li>• 공사기간 연장 발생원인을 분석,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li> </ul>
판결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연장비용의 청구를 인정</li> <li>• 판례상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은 실비와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한 현행 방식 적용</li> <li>• 연장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내용 조정을 완료 하여야 한다고 판시</li> </ul>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조사현장 중 32.7%의 비율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li> <li>• 공기연장 발생은 공종별로 토목공사, 금액별로 500억 미만 공사에서 높은 수치 기록</li> <li>• 공기연장 발생사유로는 예산부족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li> </ul>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정방법의 조사에서는 발주처와 건설사 모두 효율방식이 근소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냄.</li> <li>• 그러나 효율방식은 손실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등의 이유가 있어, 정확한 반영과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명시된 실비방식을 동의하는 의견 제시</li> <li>•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검토 시 문제점으로는 실비 산정기준의 모호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에 따른 개선안이 요구</li> </ul>
지급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례 분석결과 건설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장비용을 청구한 경우 모두 인정</li> <li>• 관련 법규 상 공기연장에 관하여 건설사의 귀책 없는 사유 발생 시 연장비용 지급</li> <li>•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하거나 받아야 된다는 의견</li> </ul>
정산 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규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 구체화</li> <li>•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은 실비와 요율이 혼합된 현행방식을 채택</li> <li>• 기타 산정방법으로 요율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나,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의 DB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li> </ul>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 필요(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추가)</li> <li>•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 공사기간 연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 간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li> <li>• 기타 개선방안으로는 발주기관별 공사기간 연장비용 조정지침 수립, 표준계약서(안) 제시,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의 도입과 전문가 또는 제3기관 참여 활성화, 공사기간 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 공사기간 연장 관련 규정에 대한 담당자 교육, 장기계속계약 제도 개선 등</li> </ul>

## 제 2 절 제언

- 정산기준(안)은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는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산정방법 및 청구절차를 담당자가 쉽고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매뉴얼로 총사업비 대상과 비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청구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총사업비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공사비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발주기관과 기획재정부 간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건설사, 계약상대자 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비와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한 현행 산정방법은 실비산정에 있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전체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을 요율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산정이 간편하고 검토가 용이한 요율방식 적용을 주장하는 설문조사 의견 수렴
  -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및 청구의 남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수렴
- 기타 산정방법(안)으로 요율방식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 현장의 공사기간 연장비용 DB가 구축되어야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 현장들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산정방법을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 또한 공사기간 연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실무담당자들의 공사기간 연장 관련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 고 문 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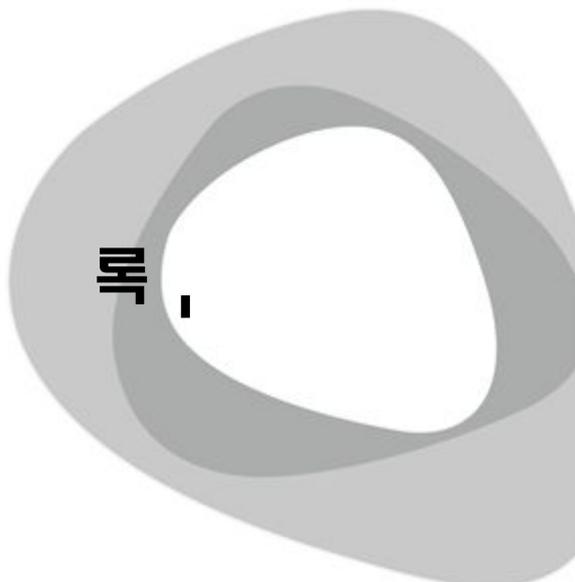


## - 참고 문헌 -

###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강성원(201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및 산출방안 개선에 관하여
- 김병수 외(2005),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모델에 관한 연구
- 김정훈(2003), 정부 예산운용에 따른 계약방식이 건설공사의 공기 및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종한(2007),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책임구분을 위한 지연사유 관리시스템
- 김종한 외(2007), 건설사업 특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사유 분석
- 김효정(2011),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과 간접비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 대한상사중재원(2002), 건설중재 판정사례집
- 대한상사중재원(2005), 건설중재 판정사례집
- 대한상사중재원(2006), 건설중재 판정사례집
- 대한상사중재원(2012), 건설중재 판정사례집
- 박용석 등(2011), 총사업비관리제도의 현황과 실태조사
- 신영철(2012),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
- 우영준(1999),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산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기한(2001),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자의 적정 손실비용 보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이상현(2004),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공기지연인자 분석에 관한 연구
- 이상호 외(2004),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추정과 보전 방안
- 이영환 등(2013),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 이영희(2002), 계약기간 연장시 연장비용 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이재섭(2005), 국내공공공사의 잠정금액 집행기준
- 이재섭(2007), 공사기간 연장이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 이재형 외(2012), 마리나 개발 적정수요와 입지선정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 이홍채(2010), 시공 중 발생하는 건설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
- 정기창 외(201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사전합의 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조영준 등(2005), 공공건설사업에서 계약기간 연장처리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최민섭(201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리적인 간접비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 한국원가관리협회(2010),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 부 록

- 부-01. 법원 판례
- 부-02. 중재 사례
- 부-03. 조정 사례
- 부-04. 공기연장 관련 법규
- 부-05.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건의 공문
- 부-06. 법률자문 의견서



## 부-01. 법원 판례

### 판례 1. 0000 계도부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 계도부설공사		계약방식	-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광주광역시	
사업 기간	최초	1999.12.13. ~ 2001.03.12.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1999.12.13. ~ 2002.03.27.(계약해지)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1.02.20. 이후 수회 청구		총공사비(원)	2,117,934,0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2가합3251	2004나666	
사건 접수일	2002.05.20.	2004.01.26.	
판결 선고일	2003.12.11.	2004.06.22.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피고 쌍방향소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조정이의신청취하	
소가(원)	322,532,058 (124,567,533) <sup>1)</sup>	322,532,058 (124,567,533)	
판결금액(원)	269,762,944 (83,290,471)	240,000,000 (74,101,033) <sup>2)</sup>	
비율 (%)	소가대비 판결	83.63 (66.86)	
	총공사비 대비	12.73 ( 3.93)	11.33 ( 3.50)
청구 항목	간접비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 11, 승률계상 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외	• 잔여공사금액이자, 기성공사대금, 손해배상(이윤)	
인정 항목	간접비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 10, 승률계상 2) <sup>3)</sup> ,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외	• 잔여공사금액이자, 기성공사대금, 손해배상(이윤)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선행공종 지연에 따른 공사용지 미확보 등(피고의 귀책) ② (청구시점) 당초 계약준공일 전 계약금액조정신청 ③ (인정기간) 실제 공사정지 시점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인정(376일) ④ (인정범위)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직접 10 승률 2), 일반관리비 및 이윤		

- 1) 팔호안은 소가 총 금액 중 간접비 해당부분만을 발취하여 산출하였음  
 2) 2심은 강제조정 사항 이므로 판결금액 중 간접비용은 1심 판결 당시, 전체 판결금액 대비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2심에도 적용하여 추정  
 3) 직접계상 : ① 전력수도광열비, ② 운반비, ③ 기계경비, ④ 가설비, ⑤ 직원숙소관리비, ⑥ 복리후생비, ⑦ 소모품비, ⑧ 여비교통통신비, ⑨ 세금과공과, ⑩ 폐기물처리비, ⑪ 도서인쇄비 중 ⑤ 직원숙소관리비 제외(계약목적 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었다 볼 수 없음)  
 승률계상 : ① 산재보험료, ② 고용보험료 모두 인정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공사인 토목공사의 부지 정지작업의 지연으로 궤도부설 공사 진행불가</li> <li>• 광주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변경으로 1호선 1단계 개통연기</li> <li>• 궤도부설 부지 내 분선 되메움토 적치 및 반출지연</li> </ul> <p>&lt;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1항<sup>1)</sup>&gt;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10개월간의 공사 일시정지 통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정지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 인정</li> </ul>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전 계약금액조정 신청</li> <li>- 당초 준공일 : 2001.03.12.</li> <li>- 청구일 : 2001.02.20.(이후 수회)</li> </ul>	-	-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정지기간 404일<sup>2)</sup> (2001.02.16.~2002.03.26.)</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의 실제 공사정지기간 인정</li> <li>- 공사정지기간 : 2001.02.16.~2002.03.26.(404일)</li> <li>- 공사정지기간 중 공사진행기간 : 28일(2001.02.16.~2001.03.14.)</li> <li>- 실제공사정지기간<sup>3)</sup> : 2001.03.15.~2002.03.26.(376일)</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정지 기간에 발생한 추가비용 청구</li> <li>- 합 계: 124,567,533원</li> <li>- 간접재료비: 2,185,680원</li> <li>- 간접노무비: 69,598,477원</li> <li>- 경 비: 32,549,541원</li> <li>- 일반관리비: 5,176,503원</li> <li>- 이 윤: 15,860,960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정지에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하여 인정<sup>4)</sup></li> <li>- 합 계: 83,290,471원</li> <li>- 간접재료비: 1,366,680원</li> <li>- 간접노무비: 49,953,362원</li> <li>- 경 비: 17,723,617원</li> <li>- 일반관리비: 3,452,182원</li> <li>- 이 윤: 10,794,630원</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정지로 인하여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도 공사정지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가능</li> <li>※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해지<sup>5)</sup></li> <li>※ 2심 판결문에서는 청구금액(322,532,058원)에 대해 인정하였으나 결정사항의 강제조정(240,000,000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판시하지 않음</li> </ul>		

-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피고가 통보한 공사정지 시작일(2001.02.16.)부터 계약해지일(2002.03.26.)까지 공사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 3) 피고가 통보한 공사정지기간 중 원고가 공사를 진행한 기간
- 4) 공사정지기간 이전에 지출되었거나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
- 5)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제1항제2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 초과 시 계약해지 가능

## 판례 2. 0000 전기시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 전기시설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0000공사	
사업 기간	최초	1998.04.25. ~ 2000.01.14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5회
	최종	1998.04.25. ~ 2002.10.01.(991일 중)		논쟁차수	3~5차
청구시점	2002.07.25.(5차 공사 진행 중)		총공사비(원)	2,487,730,0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3가합8460	2005나4190	2006다39645
사건 접수일	2003.11.11.	2005.05.30.	2006.06.29.
판결 선고일	2005.04.21.	2006.05.17.	2006.10.13.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항소	원고상고
종국결과	피고승소	항소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소가(원)	<b>238,000,043</b>	-	-
판결금액(원)		<b>0</b>	
비율 (%)	소가대비 판결	<b>0</b>	
	총공사비 대비	<b>0</b>	
간접비 청구항목	•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공사기간 연장 일체의 항목		
간접비 인정항목	없음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선행공정 지연, 설계변경, 공사 중단 등(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 ② (청구시점) 5차 공사 진행 중 계약금액조정신청 ③ (인정기간) 공사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3~5차 공사 중 간접비 지급 인정기간 없음 ⇒ - 5차 공사 : 피고가 이미 간접비 지급 완료 - 3~4차 공사 :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 계약금액조정 신청 하지 않음. ⇒ - 3~5차 공사 : 변경계약시 간접노무비 등 포함되었다고 판단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원고·피고 합의서가 있으므로 각 변경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공사하기로 합의하였다 판단 ④ (인정범위) 간접비 지급 인정기간이 없으므로 간접비 인정범위도 없음.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공정 지연, 설계변경, 공사 중단 등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li> </ul>	-	-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07.25. (5차 공사 준공전으로 당초 준공일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최종 준공일 사이)</li> <li>- 당초 준공일 : 2000.01.14.</li> <li>- 최종 준공일 : 2002.10.01.</li> <li>- 5차 계약기간 : 2002.02.22. ~ 2002.10.01.</li> <li>- 청구일 : 2002.07.2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07.25.의 시점은 5차년도 계약기간 중임</li> <li>• 이에 대해 피고는 5차 년도 총 계약기간 222일분에 대한 간접비를 이미 원고에 지급 하였음.</li> <li>- 지급금액 : 51,208,588원</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준공 : 2000.01.14.</li> <li>• 최종준공 : 2002.10.01.</li> <li>• 연장기간(991일) : -2000.01.15.~2002.10.01.</li> <li>☞ 차수별 계약기간 사이의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연장된 총기간을 주장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공사기간 : 630일</li> <li>- 1998.04.25. ~ 2000.01.14</li> <li>• 최종공사기간 : 1,392일</li> <li>- 1998.04.25. ~ 2002.10.01. 중 연차별 계약기간 사이의 공백기간 229일 제외</li> <li>• 연장기간(762일) : 1,392일-630일=762일</li> <li>- 단, 공사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3~5차 공사 중 간접비 지급 인정 기간 없음</li> <li>- 5차 공사 : 원고의 간접비 청구 이후 피고가 이미 간접비 지급 완료(222일간 공사기간 연장비용, 51,208,588원)</li> <li>- 3~4차 공사 :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 계약금액조정 신청 하지 않음</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공사기간 연장 일체의 항목 주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비 지급 인정기간이 없으므로 간접비 인정범위도 없음</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수별 계약기간 사이의 공백기간(모순)</li> <li>-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 연차별 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공백기간은 공사기간 연장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li> <li>- 2006가합12051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은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차수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에는 포함되는 기간으로 인정</li> </ul>		

### 판례 3. 00선(000~000)제00공구 철도이설 노반공사

□ 공사개요

공사명	00선(000~000)제00공구 철도이설 노반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0000주식회사 외 3		피고	0000공단	
사업 기간	최초	1997.08.27. ~ 2000.08.10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9회
	최종	1997.08.27. ~ 2005.11.30.(연장 1,938일)		논쟁차수	1차, 6차, 9차
청구시점	2000.8.23./2004.12.16./2005.07.20		총공사비(원)	37,976,834,000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6가합50739		
사건 접수일	2006.6.14		
판결 선고일	2008.10.15		
항소 및 상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승소		
소가(원)	2,552,166,000원		
판결금액(원)	0		
비율 (%)	소가대비 판결	0	
	총공사비 대비	0	
간접비 청구항목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인정항목	• 없음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피고의 예산 미확보, 선행공정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② (청구시점) 2000.08.23.부터 2005.07.20. 까지 총3차례 ③ (인정기간) 각 변경계약 체결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이 포함되었거나, 변경계약 체결시 공사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통해 간접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으로 판단, 간접비 지급 인정기간 없음 ④ (인정범위) 간접비 지급 인정기간이 없으므로 간접비 인정범위도 없음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예산 미확보, 선행 공정의 지연, 설계변경 등의 귀책사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예산 미확보, 선행 공정의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약 5년 3개월 지연 인정</li> </ul>
② 청구 시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0.08.23., 2004.12.16., 2005.07.20. 각 공기지연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공사기간<sup>1)</sup> 1997.08.27. ~ 2000.08.10.</li> <li>• 최종 공사기간 1997.08.27. ~ 2005.11.30.</li> <li>☞ 청구기간(1,938일) 2000.08.11.~ 2005.11.3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변경계약의 금액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간접비 포함</li> <li>• 원고들이 각 계약내용에 이의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간접비지급 청구권 계약 금액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li> <li>☞ 간접비 지급 인정기간 없음</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준공예정 이후 증가된 간접비 : 2,923백만원 (5년 3개월)</li> <li>• 각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 반영 간접공사비 : 370백만원</li> <li>• 증가된 간접비에서 변경계약시 반영된 간접비 제외한 2,552백만원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변경계약시 간접비 포함 되었거나, 간접비지급 관련 합의서가 있으므로 간접비 인정범위 없음</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변경계약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위와 같이) 공사 계약 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쌍방 합의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각 판례별 의견 분분</li> </ul>		

1) 기초사실부분 : 당초 공사기간 1997.08.27.~2000.08.10.으로 명시(판례에 첨부된 공사변경계약 현황표)

본안판단부분 : 당초 공사기간 1997.08.27.~2000.08.20.으로 명시

※ 기초사실부분과 본안판단부분의 공사기간이 상충되고 있으나, 변경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변경계약 현황표를 기준으로 분석

## 판례 4. 0000레도부설 기타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레도부설 기타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삼동철도 주식회사		피고	한국철도공사	
사업 기간	최초	2000.07.10. ~ 2003.06.26.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0.07.10. ~ 2006.02.28.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3.12.01./2004.11.26./2006.01.06.		총공사비(원)	5,771,854,0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6가합12051	2008나35748	
사건 접수일	2006.09.07.	2008.03.28.	
판결 선고일	2008.02.01.	2008.11.26.	
항소 및 상고	원고	피고항소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피고항소 기각	
소가(원)	<b>479,131,000</b>	386,632,778	
판결금액(원)	<b>386,632,778</b>	-	
비율 (%)	소가대비 판결	80.69	100 <sup>1)</sup>
	총공사비 대비	6.69	6.69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선행공사 지연, 공사정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피고의 귀책 사유) ② (청구시점) 1차변경계약체결 후 총 3회 ③ (인정기간) 변경계약체결 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분에 한하여 인정(1차 계약분 불인정, 2차~3차 계약분 인정) * 총 979일 신청 → 총 790일만 인정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 2심에서는 소의 주체가 바뀌어 1심과 원고 및 피고가 바뀌었으나, 판례 분석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가대비 판결 %는 1심 원고를 기준으로 하였음.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공사인 토목노반공사의 지연 및 피고의 요청에 의한 공사 정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li> </ul> 『피고의 귀책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li> </ul> 『피고의 귀책 사유』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회에 걸쳐 계약금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12.01.</li> <li>- 2004.11.26.</li> <li>- 2006.01.06.</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변경계약 체결전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변경계약일 이후에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차 변경계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 불인정</li> <li>• 제2,3차 변경계약일 이전에 공사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2,3차 변경계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 인정</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계약기간 대비 연장된 공사기간 979일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06.27.~2006.02.28.</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차 변경 계약체결 전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 소멸되었다고 주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변경계약일 이후에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1차 변경계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 불인정</li> <li>• 제2, 3차 변경계약일 이전에 공사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2,3차 변경계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 인정(2차 : 731일, 3차 : 59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260일 정도 공사정지를 합의하였으므로 연장일수에서 정지기간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3항1)에 의거, 피고의 주장 기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이 연장된 원인에는 공사물량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있으므로 공제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수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285일이나 되는바, 이러한 기간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계약 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인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주장 불인정</li> </ul>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재료비<sup>1)</sup></li> <li>• 간접노무비</li> <li>• 경비</li> <li>• 일반관리비 및 이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계약체결시 원고들이 각 공사기간 연장합의시 피고에 대하여,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추가비용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내용 변경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관하여 논의한 후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li> <li>• 합의 전후 원고의 지속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급에 관한 문제 제기</li> <li>• 피고도 추가비용 지급요청에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 - 2006.01.10.: 원고에게 추가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청</li> <li>• 따라서 공사계약내용 변경합의 만으로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주장 불인정</li> <li>•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가진 공사기간 연장분에 대해 지급 인정 - 원고의 979일에 대한 소가 대비 790일(적법한 절차를 가진 연장분)비율만큼 청구한 간접비 전액 인정</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변경계약체결시 각 공사기간 연장합의를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해 원고가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권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정한지 자문</li> <li>- 원고가 각 합의 전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급 문제 제기</li> <li>- 피고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에게 추가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li> </ul>		

1) 원고 청구 간접비 : 간접노무비(322,192,985), 경비(134,667,779), 일반관리비(13,660,136), 이윤(8,610,533) = 479,131,000

## 판례 5. 00지하철 00호선 000공구 건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지하철 00호선 000공구 건설공사		계약방식	계속비공사	
원고	00000 주식회사		피고	0000공사	
사업 기간	최초	1998.08.25. ~ 2002.09.24.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1998.08.25. ~ 2006.01.16.(연장 1210일)		논쟁차수	-
청구시점	-		총공사비(원)	136,178,086,126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8가합18584	2009나6585	
사건 접수일	2008.10.06.	2009.05.15.	
판결 선고일	2009.04.15.	2009.10.02.	
항소 및 상고	원고	피고항소	
종국결과	피고 패소	강제조정	
소가	192,397,927원 <sup>1)</sup>	192,397,905원	
판결금액	192,397,905원	150,000,000원(강제조정)	
비율 (%)	소가대비 판결	100%	77.96%
	총공사비 대비	0.14%	0.11%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선행공중 지연으로 인해 착공 지연(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 ② (청구시점) 발주처에 간접비 청구한 시점 알 수 없음 <sup>2)</sup> ③ (인정기간) 5명에 대해 초기공사기간 동안 근무한 근무기간 인정 ④ (인정범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1)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192,397,905원 이며(별지 참조) 이에 대한 모든 금액을 추가 간접비로 인정하였음.

2) 단,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2007년 2월 22일 간접비 지급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수락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2008년 10월 6일 소를 제기함.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였던 국제종합토건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용을 산정하여 분쟁조정 신청</li> <li>• 건교부 중앙건설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성립</li> <li>•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가 또 다시 피고에게 추가인건비 청구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수급사의 분쟁조정에 공동수급사인 원고에 대한 간접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접비용 청구 가능</li> </ul>
② 청구 시점	-	-	-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 근무자 5명의 근무기간</li> <li>- 99.04.10~99.08.24.</li> <li>- 99.04.10~99.07.08.</li> <li>- 99.04.10~00.02.02.</li> <li>- 01.06.04~01.12.31./</li> <li>02.01.01~02.09.24.</li> <li>- 01.06.04~01.10.1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 근무자 5명의 근무기간</li> <li>- 99.04.10~99.08.24.</li> <li>- 99.04.10~99.07.08.</li> <li>- 99.04.10~00.02.02.</li> <li>- 01.06.04~01.12.31./</li> <li>02.01.01~02.09.24.</li> <li>- 01.06.04~01.10.10.</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5명)</li> <li>192,397,92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5명)</li> <li>192,397,905</li> </ul>
시사점 및 기타		-	

주) 판결요지 및 주요쟁점은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심 판결문 내용은 피고의 소에 대한 강제조정 사항이며 그 내용은 1심과 같음(금액은 강제조정 되었음)

## 판례 6. 0000 토목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 토목공사		계약방식	계속비공사	
원고	현대산업개발(주)외 3명		피고	대한민국의 1명	
사업 기간	최초	1997.12.31. ~ 2001.06.30.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해당없음
	최종	1997.12.31. ~ 2005.10.31.		논쟁차수	해당없음
청구시점	-		총공사비	86,467,600,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8가합20471		
사건 접수일	2008.10.31.		
판결 선고일	2009.11.21.		
항소 및 상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소가	<b>3,237,109,000원</b>		
판결금액	<b>1,934,841,636원<sup>1)</sup></b>		
(소가 대비 판결 %)	<b>59.77%</b>		
(총공사비 대비 %)	<b>2.23%</b>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전력비, 지급임차료, 안전점검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전력비, 지급임차료, 안전점검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 <sup>2)</sup> ② (청구시점) 발주처에 간접비 청구한 시점 알 수 없음 <sup>3)</sup> ③ (인정기간) 원고가 청구한 기간 모두 인정. ④ (인정범위)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 항목 모두 인정함.		

- 1) 이 사건 판결문의 결론부분의 내용은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소요된 비용(원고소가) 3,237,109,000을 모두 인정 하였으나, 결정사항에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1,934,841,636원(강제조정)으로 판결함.
- 2) 건설교통부의 재정부족에 따른 5대 광역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확정으로, 이사건 공사의 수요기관인 부산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의 자체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이 사건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
- 3) 단,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2007년 1월 30일 간접비 지급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조정 이후 2008년 10월 31일 소를 제기함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 재정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	-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됨.
② 청구시점	-	-	-
③ 인정기간	• 최초 계약기간 대비 연장된 공사기간 1,583일 - 2001.07.01.~2005.10.31.	-	• 원고가 청구한 1,583일에 대해 인정
④ 인정범위	• 간접노무비 • 경비 - 전력비, 지급임차료, - 안전점검비,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 보증수수료 • 일반관리비/이윤	-	•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의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 지급 <sup>1)</sup>
시사점 및 기타			

주) 직접계상비목 : 전력비, 지급임차료, 안전점검비, 보증수수료  
 승률계상비목 :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1) 법원 관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항목에 대해 인정 항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사건을 이미 조정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2007-1)의 조정안 1,908,478천원과 유사한 금액의 판결을 내림.

## 판례 7. 00시 00동 경찰서 ~ 00동 버스터미널 개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시 00동 경찰서 ~ 00동 버스터미널 개설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건설 주식회사 외 3		피고	00시	
사업 기간	최초	2001.12.27. ~ 2004.12.26.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7회
	최종	2001.12.27. ~ 2008.07.10. (연장 1,292일)		논쟁차수	1차 ~ 7차
청구시점	2005.12.16./2007.07.12./2008.08.05		총공사비	36,919,999,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8가합9084	2009나5420	2010다57565
사건 접수일	2008.09.11.	2009.09.25.	2010.07.27.
판결 선고일	2009.08.28.	2010.06.23.	2010.11.11.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항소	원고상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항소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소가	<b>3,367,228,208원</b>	3,318,074,647원	3,318,074,647원
판결금액	<b>49,153,561원</b>	-	-
(소가 대비 판결 %)	<b>1.46%</b>	1.48%	1.48%
(총공사비 대비 %)	<b>0.13%</b>	0.13%	0.13%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승률경비, 가시설자재 손료, 1)(터널굴착비 사용료), *(관급자재 대체비용), *(설계비용).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승률경비, 부가가치세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지연 등 피고 귀책사유 ② (청구시점)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에 신청한 부분만 인정(7차분) ③ (인정기간) 차수계약 기간 중 연장된 공사기간만 인정 ④ (인정범위) 공사대금 지급완료일까지 차수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한 기간만 인정 * 총 1,292일 신청 → 7차 계약기간 중 약 50일만 인정		

1) 설계변경 청구에 해당하는 항목임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의 부족, 공사구간에 대한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총공사 기간 연장(피고의 귀책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도급업자들의 공사거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기간 연장(원고의 귀책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 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판결</li> </ul>
② 청구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분 계약을 기준으로 총 공사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금액조정을 하려면 차수별 공사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계속공사로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당해 차수별 공사대금 지급전에 하여야 하므로</li> <li>원고가 주장하는 전체분 계약의 준공대가 완료전에 신청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불인정</li> <li>피고가 주장하는 차수별 계약 이행 착수전에 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음</li> </ul>
③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계약기간 대비 연장된 공사기간 1,292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들이 계약금액이 조정신청한 때는 2008.08.05.로 이는 차수별 공사의 준공을 마친후 이므로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제4차 : 각 차수별 공사대금 지급완료일까지 해당 차수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li> <li>제5차 :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5차 계약기간 변동없음.)</li> <li>제6차 : 가시설 자재 H-PILE 손료에 대한 실정보고서 형식의 문서이고 수신자도 피고가 아닌 책임감리원으로 적법한 조정신청이라 볼 수 없음</li> <li>제7차 : 원고들이 '08.08.05. 신청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제7차 공사대금 완료일 ('08.08.27.)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었으므로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7차분 계약기간 중 연장된 공사기간(≒50일) 인정함</li> </ul>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li> <li>• 직접경비</li> <li>• 승률경비</li> <li>• 가시설자재 손료</li> <li>• 터널굴착비 사용료</li> <li>• 설계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7차까지의 각 차수별 계약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반영하여 확정적으로 대금지급</li> <li>• 관급자재대체비용과 설계변경 비용도 마찬가지로 변경계약시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였고, 대가지급도 완료하였다고 주장함</li> </ul>	<p>&lt; 지급 인정-7차계약분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li> <li>• 직접경비-(직접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li> </ul> </li> <li>• 승률경비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li> </ul> <p>※정부 입찰집행기준 제73조2항에 의하여 지급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시설자재(임대료) 손료 : 적법한 조정신청 아니므로 불인정</li> <li>• 터널굴착비용 : 제6차 계약의 대가지급 완료일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불인정</li> <li>• 설계비용 : 제7차 변경계약 당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인정</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계속공사의 각 차수별 계약을 각각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 각 차수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기성대가)수령 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함</li> </ul>		

## 판례 8. 0000~0000간 복선전철 0000역사 신축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00간 복선전철 0000역사 신축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건설		피고	0000공단	
사업 기간	최초	2005.06.09. ~ 2008.02.08.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5회
	최종	2005.06.09. ~ 2009.05.31. (≒478일 연장)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7.11.12. ~ 2009.06.10.(총4회)		총공사비	17,737,081,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9가합11282	2012나3301	
사건 접수일	2009.10.09.	2012.06.27.	
판결 선고일	2012.05.25.	(진행 중)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항소	
종국결과	피고 승소	(진행 중)	
소가	202,590,197원	202,590,197원	
판결금액	0원	(진행 중)	
(소가 대비 판결 %)	0%	(진행 중)	
(총공사비 대비 %)	0%	(진행 중)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간접비 인정항목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설계변경 등.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 ② (청구시점) 2007.11.12.부터 2009.06.10.까지 총4차례 ③ (인정기간) - ④ (인정범위) -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	-	-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11.12.</li> <li>• 2008.11.27.</li> <li>• 2008.12.05.</li> <li>• 2009.06.10. (준공이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12.18.(변경계약일)</li> <li>• 2008.12.19.(변경계약일)</li> <li>• 2009.04.28.(변경계약일)</li> </ul> ☞ 원고의 변경계약 요청시 피고는 변경계약에 응함.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공사기간 2005.06.09. ~ 2008.02.08.</li> <li>• 최종 공사기간 2005.06.09. ~ 2009.05.31.</li> </ul> ☞ 청구기간(478일) 2008.02.08. ~ 2009.04.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변경계약의 금액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정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판결하지 않음.</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li> <li>• 산재보험료</li> <li>• 기타경비</li> <li>• 일반관리비</li> <li>• 부가가치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가 청구하는 간접비 항목이 각 차수별 계약 또는 변경계약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간접비 인정 범위 없음.<sup>1)</sup></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sup>2)</sup> : 공사량의 증감 발생시.</li> <li>•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sup>3)</sup> :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시</li> </ul> ☞ 법률자문3 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고 하여,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한 것인지 자문을 구함		

1)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용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청구한 비목은 모두 간접비 항목으로 인정됨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 판례 9. 00동 일대(00지구)도시기본시설 조성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동 일대(00지구)도시기본시설 조성공사		계약방식	계속비공사	
원고	00건설 주식회사 외 3		피고	00광역시	
사업 기간	최초	2000.12.26. ~ 2004.12.24.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0.12.26. ~ 2009.04.30. (≒52개월 연장)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8.05.14.		총공사비	29,566,000,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9가합11576	2010나76841	2011다45989
사건 접수일	2009.07.07.	2010.08.20.	2011.06.15.
판결 선고일	2010.07.16.	2011.05.18.	2012.06.28.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 항소	피고 상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 패소	피고 패소	상고기각
소가	<b>1,619,750,000원</b>	1,311,944,696원	1,311,944,696원
판결금액	<b>307,805,304원</b>	<b>1,311,944,696원</b>	-
(소가 대비 판결 %)	19%	<b>100%</b>	100%
(총공사비 대비 %)	1.04%	4.43%	4.43%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지장물, 토지보상지연, 동절기·강우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 ② (청구시점) 최종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면 충분 ③ (인정기간) 당초 준공일 다음날부터 최종 준공일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주) 1심과 2심의 판결금액 = 원고청구금액의 100%

소가 1,619,750,000원, 판결금액 1,619,750,000원, 총공사비대비 5.47%(1.04 + 4.43)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장물 보상지연</li> <li>• 토지보상 및 사용협의지연</li> <li>• 문화재 시굴조사</li> <li>• 동절기·강우로 인한 피고의 공사중단 지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장물 보상지연</li> <li>• 토지보상 및 사용협의지연</li> <li>• 문화재 시굴조사</li> <li>• 동절기·강우로 인한 피고의 공사중단 지시</li> </ul>
② 청구 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조정을 하려면 변경되는 공사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야함</li> <li>☞ 변경된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이루어져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의 문언상 해석</li> <li>- 계약내용 변경 사항을,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했을 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까지도 완료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님</li> </ul>
③ 인정 기간	• 2004.12.25.~2009.04.30.	• 원고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인정	• 최종기성대가(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치면 연장된 총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비 청구 가능 <sup>1)</sup>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li> <li>• 경비</li> <li>• 일반관리비</li> <li>• 이윤</li> <li>• 부가가치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li> <li>• 경비</li> <li>• 일반관리비</li> <li>• 이윤</li> <li>• 부가가치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간접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계약시 간접공사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간접공사비만 계약금액을 변경하는데 반영하였음</li> <li>☞ 직접공사비 연동의 간접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구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는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간접공사비 청구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은 인정하나 이는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님</li> </ul>
시사점 및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내역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이 0원이므로 간접공사비 산출시에도 0원이여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므로 포함되어야 함</li> </ul>

## 판례 10. 0000 노반신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 노반신설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비	
원고	0000 주식회사 외3		피고	0000공단	
사업 기간	최초	2003.12.30.~2007.12.29.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3.12.30.~2011.12.31.		논쟁차수	-
청구시점	-		총공사비	123,230,000,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2가합103053	2013나11261	
사건 접수일	2012.10.19.	2013.07.11.	
판결 선고일	2013.06.13.	(진행 중)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항소	
종국결과	피고승소	(진행 중)	
소가	110,000,000원	110,000,000원	
판결금액	0원	(진행 중)	
(소가 대비 판결 %)	0%	(진행 중)	
(총공사비 대비 %)	0%	(진행 중)	
간접비 청구항목	-		
간접비 인정항목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 ② (청구시점) 연장신청과 동시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음. ③ (인정기간) 계약금액 조정신청 없이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상 청구불가 ④ (인정범위) -상 동-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귀책사유 주장 (구체적 내용은 없음.)</li> </ul>	-	-
② 청구 시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신청과 동시에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음</li> <li>☞ 구체적 날짜는 명시되지 않음</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01.01. ~ 2011.12.31.</li> <li>☞ 계속비 전환후 연장된 기간</li> </ul>	-	-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된 기간의 간접비 중 일부 (구체적 비목 명시되지 않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액은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시 이미 반영 된 것으로 판단</li> <li>• 계약금액 조정신청 없이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5조 제1항 :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하도록 규정</li> <li>- 제19조 제9항 :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도록 규정</li> </ul> </li> <li>☞ 법률자문4 본안에 대한 판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9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 제1항에 따른 판단으로 진행된 사유에 대한 법의 판단 기준을 구함.</li> </ul>		

## 판례 11. 0000 궤도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 궤도공사	계약방식		계속비공사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0000공단
사업 기간	최초	2010.05.07.~2012.05.06.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10.05.07.~2012.11.30.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12.12.04. (최종준공 이후, 최종준공대가 수령전)	총공사비		16,580,520,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3가합1496	2013나2017290	
사건 접수일	2013.01.24.	2013.08.27.	
판결 선고일	2013.07.26.	(진행 중)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항소	
종국결과	피고 승소	(진행 중)	
소가	123,862,690원	123,862,690원	
판결금액	0원	(진행 중)	
(소가 대비 판결 %)	0%	(진행 중)	
(총공사비 대비 %)	0%	(진행 중)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인정항목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귀책사유 불분명 ② (청구시점) 계약기간 연장과 동시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 (인정기간) 계약금액 조정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 ④ (인정범위) ②,③의 사유로(원고 청구 기각) 별도 판결하지 아니함.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발생함.	-	• 불분명함 <sup>1)</sup>
② 청구시점	• 준공대가 수령전에 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해당함.	• 연장신청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음.	•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한다고 하나 준공기일 경과 후 청구한 점  • 적용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기간 연장과 동시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 점  ☞ 적법한 절차(청구시점)에 위배됨.
③ 인정기간	• 연장기간(209일) -2012.05.06. ~ 2012.11.30.	• 조정신청이 없음에도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준공기한만을 연장하고 공사대금액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점 <sup>2)</sup> 으로 보이는 점  • 계약금액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만을 연장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위 규정 <sup>3)</sup> 을 적용할 수 없음.
④ 인정범위	•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1항<sup>4)</sup>의 기준으로 판시한 이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내용에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동법 제20조9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li> <li>•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을 연장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다’ 명시한 것을 ‘합의’로 볼 것인지, 국가계약법 제5조 ‘계약의 원칙’의 위배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함</li> </ul>		

1) 판결문 인용 - 이 사건 기록상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연장된 것인지는 불분명 하나 ... - 이하 생략 -

2)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만을 연장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다고 명시한 부분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9항 : 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한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 판례 12. 00지하철 00호선 연장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지하철 00호선 연장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산업(주) 외 11		피고	0000 외 1	
사업 기간	최초	2004.12.31. ~ 2011.03.31.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14회
	최종	2004.12.31. ~ 2012.12.31.(연장 640일)		논쟁차수	1차, 3차
청구시점	701공구 2011.2.28. 702공구 2011.3.3. 703공구 2011.2.28. 704공구 2011.3.9.		총공사비		701공구 133,496,000,000원 702공구 133,496,000,000원 703공구 197,173,000,000원 704공구 212,819,000,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2가합22179	2013나2020067	
사건 접수일	2012.3.16.	2013.9.30.	
판결 선고일	2013.8.23.	(진행 중)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항소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진행 중)	
소가	14,632,729,688원	14,129,670,270	
판결금액	14,129,670,270원	(진행 중)	
(소가 대비 판결 %)	96.56%	(진행 중)	
(총공사비 대비 %)	2.08%	(진행 중)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실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기타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예산미확보 등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 ② (청구시점) 총괄계약 기준 당초 준공시점 이전신청 ③ (인정기간) 총괄계약 기준 당초 준공일부터 최종 준공일까지 (640일) ④ (인정범위) 원고의 청구항목 모두 인정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부족에 따른 공정지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부족등으로 연장된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고측이 공사를 수행함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됨.</li> </ul>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의 총괄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거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들은 계약금액 조정신청 당시의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 내용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함.</li> <li>☞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의 중단없이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li> <li>이 경우 계약상대자들의 총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은 차수별 계약과 상관없이 1회로 충분함.</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기간(640일) 2011.3.31. ~ 2012.12.3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고의 귀책으로 연장된 640일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함.</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li> <li>경비(실비)</li> <li>산재보험료</li> <li>고용보험료</li> <li>보증수수료</li> <li>일반관리비</li> <li>이윤</li> <li>공사손해보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기간 연장 비용이 이미 차수별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액조정 요청에 응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li> <li>경비(기타경비, 지급임차료)</li> <li>산재보험료</li> <li>고용보험료</li> <li>보증수수료</li> <li>일반관리비</li> <li>이윤</li> <li>공사손해보험료</li> </ul>
시사점 및 기타			

## 판례 13. 00 00지구 하천개수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 00지구 하천개수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건설 주식회사 외 2		피고	0000	
사업 기간	최초	2004.12.21. ~ 2009.11.24.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3회
	최종	2004.12.21. ~ 2011.12.31.(연장 767일)		논쟁차수	1차, 3차
청구시점	2011.12.15.		총공사비	35,520,000,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2가합26607	2013나2019081	
사건 접수일	2012.03.30.	2013.09.17.	
판결 선고일	2013.08.23.	(진행 중)	
항소 및 상고	원고	피고항소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진행 중)	
소가	1,024,219,636원	382,950,198	
판결금액	382,950,198원	(진행 중)	
(소가 대비 판결 %)	37.39%	(진행 중)	
(총공사비 대비 %)	1.07%	(진행 중)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예산미확보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② (청구시점) 장기계속의 경우 연장 기간 중의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③ (인정기간) 청구시점(2011.12.15.)의 해당차수 전체(339일) 인정 ④ (인정범위) 원고의 청구항목 중 일반관리비, 이윤 제외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미확보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액만 증액이 되거나, 기간만 연장이 된 점,</li> <li>설계변경으로 인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li> </ul> <p>☞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장되었다고 판단</p>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12.15. - 당초준공 이후 최종준공 이전 시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가 청구한 2011.12.15. 8차분3회 변경계약은 그 내용이 준공기한의 변경이 아님.</li> <li>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는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완료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신청하면 적법함.</li> <li>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연장에 관한 합의면 충분</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계약기간 대비 연장된 총 기간 767일 (2009.11.24. ~ 2011.12.3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의 청구는 2011.12.15.일 (8차계약분)에 이루어졌으며, 청구 당시 7차까지 준공 및 대가지급이 완료되었음.</li> </ul> <p>☞ 8차 계약 공사기간(339일)에 대해 인정</p>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li> <li>일반관리비, 이윤<sup>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가 간접비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각 변경계약에서 간접공사비를 모두 반영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각 0원인 사실 및 동 금액을 다른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0원으로 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상하지 않음.</li> <li>원고들이 청구한 8차분에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sup>2)</sup></li> </ul>
시사점 및 기타			

1)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이 각 0원 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

2) 총공사대금을 증액한 시점과 총공사기간을 연장한 시점이 상이한 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시공이 중지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8차분 공사계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례 14. 00선 00-00간 전철전원설비 신설공사 외 4

### □ 공사개요

공사명	00선 00-00간 전철전원설비 신설공사 외 4		계약방식	장기계속→계속비	
원고	0000 주식회사 외 1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기간	최초	2005.05.13. ~ 2007.07.13. 2005.04.28. ~ 2007.05.11. 2005.04.28. ~ 2008.03.11. 2005.05.09. ~ 2007.05.18. 2007.09.07. ~ 2009.08.31.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5.05.13. ~ 2011.12.23. 2005.04.28. ~ 2012.04.30. 2005.04.28. ~ 2012.04.30. 2005.04.28. ~ 2012.04.30. 2007.09.07. ~ 2011.12.20.			
청구시점	2007.04.13. ~ 2011.12.19. (총 7회) 2007.04.13. ~ 2011.12.02. (총 5회) 2011.10.07. ~ 2011.12.02. (총 3회) 2007.04.16. ~ 2011.09.26. (총 3회) 2010.12.14. ~ 2011.12.13. (총 4회)		총공사비	19,279,000,000원 29,294,000,000원 33,064,000,000원 27,900,000,000원 2,548,207,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2가합100658		
사건 접수일	2012.03.22.		
판결 선고일	2014.07.10.		
항소 및 상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패소		
소가	8,476,763,000		
판결금액	6,659,812,000		
(소가 대비 판결 %)	78.56%		
(총공사비 대비 %)	5.94%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0, 승률계상3 <sup>1)</sup> , 모터카 운전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0, 승률계상3, 모터카 운전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사업추진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조정결과(피고의 귀책) ② (청구시점) 총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 신청 인정 ③ (인정기간) 당초 계약준공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인정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0 승률계상3, 모터카 운전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1) 승률계상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경비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고의 사업추진계획 변경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등 피고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연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피고의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장 인정</li> </ul>
② 청구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조정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수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지급 전 계약금액조정 신청 시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 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조정 신청 인정</li> </ul>
③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 계약준공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연장된 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수별 공사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한 간접비 불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도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배치 필요</li> </ul>
④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기간이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추가비용 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고가 아닌 책임감리원 또는 감리단장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 불인정</li> <li>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시 간접비 포함하여 계약금액 조정되었으므로 추가 간접비 불인정</li> <li>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한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li> <li>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만 간접노무비 인정</li> <li>모터카 운전경비는 직접비에 해당하므로 제외해야 함</li> <li>차수별 계약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간접비채권의 소멸시효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감리원 또는 감리단장은 관련 법규정<sup>1)</sup>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li> <li>변경계약 시 반영한 간접비와 원고들이 청구하는 간접비는 별개의 비용으로 판단</li> <li>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조합의 통상사무를 단독으로 집행할 권한이 있음(민법 제 706조 제3항)</li> <li>원고들은 적정 인원 배치를 위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 현장 인원을 변경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투입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 인정</li> <li>모터카 운전경비의 경우, 직접비 항목이 아닌 산출경비 항목에 계상되었으므로 인정</li> <li>총괄 계약에서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간접비채권은 소멸되지 않음</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계속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차수별 계약의 최종 대가 지급 전 기준이 아니라 총괄 계약의 최종 대가 지급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 인정</li> <li>※ 원고의 청구금액 중 퇴직한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금액 제외</li> </ul>		

1)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 105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국토교통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 4장 제54조제1항 및 제12항 등 참조

## 판례 15. 00선 00-00간 전력설비 신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선 00-00간 전력설비 신설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계속비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 기간	최초	2005.05.04. ~ 2009.12.10.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최종	2005.05.04. ~ 2011.12.31.		논쟁차수
청구시점	2007.12.12. ~ 2012.01.26.(5회)		총공사비	22,313,200,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2가합8524	2013나2032138	
사건 접수일	2012.02.02.	2013.12.31.	
판결 선고일	2013.11.22.	(진행 中)	
항소 및 상고	원고	피고 항소	
종국결과	피고 패소	(진행 中)	
소가	<b>1,130,554,000원</b>	(진행 中)	
판결금액	<b>1,130,554,000원</b>	(진행 中)	
(소가 대비 판결 %)	<b>100%</b>	(진행 中)	
(총공사비 대비 %)	<b>5.07%</b>	(진행 中)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공사기간 연장 일체의 항목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공사기간 연장 일체의 항목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사업 실시계획 승인 지연, 총사업비 조정 등(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 ② (청구시점) 2007.12.12.부터 2012.01.26. 까지 총 5차례 ③ (인정기간)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인정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실시계획 승인 지연, 총 사업비 조정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실시계획 승인 지연, 총 사업비 조정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 인정</li> </ul>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 12. 12.(3차계약변경)</li> <li>- 2011. 09. 26.</li> <li>- 2011. 10. 17.</li> <li>- 2011. 12. 12.</li> <li>- 2012. 01. 26.</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안전항변<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11. 18. : 거절 회신</li> <li>- 2011. 12. 29. : 거절 회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거절 회신 내용이 특수조건에 의해 통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분쟁해결 의사표시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음.</li> <li>•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 지급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마쳐야 함</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필수적인 인원 배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및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은 제외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백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인원 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로 배치된 현장관리인원은 현장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인원 배치임.</li> <li>•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공사기간 연장 일체의 항목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해야 함.</li> <li>• 원고는 추가되는 간접공사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이를 면제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가 실제로 투입한 현장관리인원을 기초로 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li> <li>• 원고 청구항목 모두 인정</li> <li>• 원고는 총공사기한 연장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7. 4. 9. 및 2010. 3. 2. 피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이 완료되면 별도로 발송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li> </ul>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은 2007. 12. 12.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간접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을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면, 이는 시효로 인해 소멸할 여지가 있는 독립적인 채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나아가 3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의미라면, 위 간접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1. 12. 31.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2.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li> </ul>
<p>시사점 및 기타</p>			

1)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권리로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부적법이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本案)의 변론을 거부하는 것

## 판례 16. 00 우회도로의 개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 우회도로의 도로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00 주식회사 외 1		피고	양평군
사업 기간	최초	2005.03.09. ~ 2008.03.08.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최종	2005.03.09. ~ 2012.10.30.		논쟁차수
청구시점	2012.11.12. (10차 공사)		총공사비	14,423,800,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2가합20183		
사건 접수일	2012.12.21.		
판결 선고일	2013.12.03.		
항소 및 상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승소		
소가	1,392,178,420원		
판결금액	0원		
(소가 대비 판결 %)	0%		
(총공사비 대비 %)	0%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간접비 인정항목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피고의 귀책사유 ② (청구시점) 2012. 11. 12. 총 공사 준공대사 지급 전 ③ (인정기간) 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전 신청분 ④ (인정범위)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예산 부족, 문화재 시굴조사, 공사용지 확보의 지연, 지장물 처리, 유관기관의 협의 진행 등의 피고의 귀책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귀책사유 불인정</li> </ul>	-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이 아니라 장기간의 공사기간을 요하는 ‘장기계약’일 뿐이므로 최종 준공대가 지급 전에만 간접비 신청하면 인정가능</li> <li>- 1,697일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간접비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이므로 각 차수별 공사대금 지급전에 간접비 신청해야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수별 공사대금 지급 전 청구금액만 인정</li> <li>- 10차 공사만 해당되나 10차 공사에 해당되는 연장기간은 10일이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기각</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지기간(796일) 동안에 발생한 간접비도 지급해주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지기간에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접비 지급 불가</li> </ul>	-
④ 인정 범위	-	-	-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공사대금 지급전 청구금액만 인정</li> </ul>		

## 판례 17. 00배수지 건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배수지 건설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00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사업 기간	최초	2006.12.29. ~ 2009.02.07.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6.12.29. ~ 2009.09.30.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9.06.01. (3차공사 진행중)		총공사비	16,522,000,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1가합107011	2012나80752	
사건 접수일	2011.10.12.	2012.10.16.	
판결 선고일	2012.09.21.	2013.09.24.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피고 쌍방항소	
종국결과	피고 일부 패소	화해권고결정	
소가	386,538,272	원고: 76,312,500 피고: 158,312,016	
판결금액	158,312,016	-	
(소가 대비 판결 %)	40.95%		
(총공사비 대비 %)	0.95%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경비, 공사보증수수료	
	간접비 외	가설사무실 부지 임차료, 발생암 소운반비	
인정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경비, 공사보증수수료	
	간접비 외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주민 민원 등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 ② (청구시점)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신청한 부분만 인정(3차) ③ (인정기간)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 공사보증수수료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민원, 우천, 하절기•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피고 요구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 조정수목 식재 등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기간은 이미 절대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며 피고의 귀책사유 없으므로 지급 의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연장된 경우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데 그 사실이 없는 이상 연장사유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타당함</li> </ul>
② 청구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하므로 1)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 인정</li> <li>- 1차 준공 : 2007.12.24.</li> <li>- 2차 준공 : 2008.08.31.</li> <li>- 3차 준공 : 2009.09.30.</li> <li>3차 계약에 대한 간접비 인정</li> </ul>
③ 인정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따라 청구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는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 이유 없음</li> </ul>
④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급여, 숙소와 가설사무실의 전기료, 수도 및 가스비, 전화, 방송, 경비시스템 이용료, 공사현장직원 식대, 직영반장 및 일용직 노임, 가설사무실 운영경비, 공사보증수수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영반장과 일용직 노임은 이미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되어 제외해야 함</li> <li>• 원고가 공사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제소합의 및 간접비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접비 불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가 지출한 실비 중 반드시 필요하였던 비용과 절약이 가능한 비용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지출금액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구하는 실비에서 10% 정도 피고의 책임을 감액함</li> <li>• 채권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함</li> <li>• 합의서 상 내용만으로 공사기간 연장은 하되 금액은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까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 주장 인정</li> </ul>		

## 판례 18. 0000 조성사업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 조성사업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00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남양주시	
사업 기간	최초	2004.04.06. ~ 2007.09.29.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4.04.06. ~ 2011.06.30.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11.03.04.		총공사비	23,019,948,0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1가합2286	2013나11869	2014다185
사건 접수일	2011.03.04.	2013.02.15.	2014.01.02.
판결 선고일	2012.12.20.	2013.11.08.	2014.04.30.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피고 쌍방향소	원고
종국결과	원고일부승	항소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소가	2,409,039,716	원고 : 2,295,911,992 피고 : 113,122,724	원고 : 2,295,911,992 피고 : 113,122,724
판결금액	113,122,724	-	-
(소가 대비 판결 %)	4.93%		
(총공사비 대비 %)	0.49%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외	약정금	
인정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외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 ② (청구시점)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에 신청한 부분만 인정(3,4차분) ③ (인정기간) -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 구 지방계약법 제24조에서 정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해당함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	-	-
② 청구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차 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대가 지급일 : '10.06.30.</li> <li>- 재착공 연기요청 : '06.10.30.</li> <li>- 민원처리 실정보고 : '07.01.10.</li> <li>- 현장관리계획 보고 : '07.06.05.</li> </ul> </li> <li>• 3,4차 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대가 지급일 : 2011.05 경</li> <li>- 계약금액 조정신청 : 2011.03.04</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볼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에게 재착공 연기 요청</li> <li>- 행정대집행비용과 용역비용 정산 요구</li> <li>- 피고가 아닌 책임감리원에게 제출</li> </ul> </li> <li>•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볼 수 있음</li> </ul>
③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수별 공사기간이 일부 중첩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이 각 차수별로 독립적으로 납부되지 아니하고 총공사 준공 후 전체 계약에 대해 납부되었으므로 장기계속계약이 아님</li> <li>• 입찰시 공시한 공사계약일반조건(2004.4.6.자)만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이 일부 중첩된다고 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성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음</li> <li>• 각 차수별 공사계약 당시에 시행되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li> </ul>
④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들은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60일을 초과하는 정지기간에 대한 약정금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공사정지기간 : 86일</li> <li>- 제2차 공사정지기간 : 544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내역서 상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0으로 기재하여 간접공사비용에 포함될 수 없음</li> <li>•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액된 간접공사비용은 공제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실제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역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간접공사비에 설계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li> <li>• 약정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공사의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li> <li>•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용은 공사기간 연장을 직접원인으로 한 간접공사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li> </ul>
시사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 인정</li> </ul>		

## 판례 19. 00-0000간 도로개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00간 도로개설공사		계약방식		
원고	00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안산시
사업 기간	최초	1996.12.18. ~ 1998.12.18.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1996.12.18. ~ 2004.12.31.		논쟁차수	-
청구시점	-		총공사비		2,090,884,986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5가합7150		
사건 접수일	2005.12.30.		
판결 선고일	2006.12.07.		
항소 및 상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패소		
소가	878,352,000		
판결금액	878,352,000		
(소가 대비 판결 %)	100%		
(총공사비 대비 %)	42.01%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피고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미완료, 피고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지연, 피고의 설계 변경, 피고측의 공사수행방침 변경 ② (청구시점) - ③ (인정기간) 1997.3.22.-1998.11.24.(613일) 2001.9.5.-2002.1.7.(125일) 2003.8.16.-2004.9.24.(406일) 2004.9.25.-2004.11.25.(62일) 2004.11.26.-2004.12.31.(36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연장·중지기간 1,242일) ④ (인정범위) 878,352,000원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공사중지지시</li> <li>• 피고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li> <li>•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편입토지의 발생과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li> <li>•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동절기 발생</li> <li>• p턴 공사구간 시공에 대한 피고측의 공사수행방침 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li> </ul>	-	• 원고주장 인정
② 청구 시점	-	-	-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준공 : 1998.12.18.</li> <li>• 최종준공 : 2004.12.31.</li> <li>• 연장기간(2,205일)</li> <li>-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은 합계 1,242일</li> </ul>	-	•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 1,242일 인정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비</li> <li>- 간접노무비: 638,376,016</li> <li>- 산재보험료: 21,704,784</li> <li>- 고용보험료: 4,149,444</li> <li>- 경비합계: 109,187,773</li> <li>• 일반관리비: 38,670,910</li> <li>• 이윤: 121,813,369</li> </ul> <p>=총 1,027,292,745원중 878,352,000원 지급 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도급계약을 하면서 그 공사대금 증액부분에 이미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는 1,027,292,745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인 878,352,000원 지급</li> <li>•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li> </ul>
시사점 및 기타			

## 판례 20. 경부선 00-00역 간 통신설비 신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경부선 00-00역 간 통신설비 신설공사		계약방식	계속비공사	
원고	000 외 1명		피고	대한민국	
사업 기간	최초	1999.09.07. ~ 2002.02.22.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1999.09.07. ~ 2004.12.20.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4.12.16. / 2005.06.10.		총공사비	1,961,000,0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5가합77683	2006나63688	2007다29508
사건 접수일	2005.08.29.	2006.07.26.	2007.05.09.
판결 선고일	2006.06.20.	2007.04.13.	2007.08.24.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승소	항소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소가	333,354,839	216,573,000	216,573,000
판결금액	0	-	-
(소가 대비 판결 %)	0%		
(총공사비 대비 %)	0%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인정항목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피고가 철도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② (청구시점) 2004.12.16.경 및 2005.6.10.경 ③ (인정기간) - ④ (인정범위)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측 수요기관의 예산부족 및 이 사건 공사의 선행공사인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지연</li> <li>• 철도청이 건설 중인 시설자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는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포괄하여 승계하는 바, 위 철도자산은 이미 완공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피고에게 귀속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시설공단이 2004.1.1. 설립되어 당시 철도청이 건설 중이던 시설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자 2004.12.2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권리와 의무는 피고가 아닌 철도시설공단에 귀속된다고 할 것임.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주장 인정</li> <li>•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 시설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서류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음.</li> </ul>
② 청구 시점	-	-	-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34개월 초과</li> <li>- 당초준공 : 2002.02.22.</li> <li>- 최종준공 : 2004.12.20.</li> </ul>	-	-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li> </ul>
시사점 및 기타			

## 판례 21. 00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공사		계약방식	계속비→장기계속	
원고	00물산 주식회사 외 3명		피고	전주시	
사업 기간	최초	2003.01.03. ~ 2006.04.19.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3.01.03. ~ 2007.03.30.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7.01.31.		총공사비	93,676,749,82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7가합6962		
사건 접수일	2007.09.27.		
판결 선고일	2010.08.26.		
항소 및 상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소가	5,738,459,781		
판결금액	1,857,018,410	-	
(소가 대비 판결 %)	32.36%	-	
(총공사비 대비 %)	1.98%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외		
인정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외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행정절차 미이행, 용도변경으로 인한 예산확보 ② (청구시점) 준공 전 계약금액조정 신청 2007.1.31. ③ (인정기간) 실제 공사정지 시점부터 완공일까지 인정(163일) ④ (인정범위) 1,857,018,410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의 제공은 발주기관인 피고의 의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으로 소각장 부지 내 행정 절차 추진이 불가함'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li> <li>•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 및 진입도로 용지보상 지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잔여분 미계약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안내서에 모든 법적 행정절차 및 민원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원고들이 처리, 부담하기로 되어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법적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공사부지의 인도에 관련된 무제라고 봄이 상당</li> <li>•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조정</li> </ul>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전 계약금액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준공일 : 2007.3.30.</li> <li>- 청구일 : 2007.1.3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대가 수령일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 하였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된 간접공사비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준공 : 2006.4.19.</li> <li>• 최종준공 : 2007.3.30.</li> <li>• 연장기간(345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공사비 산출기간 당초 2004.8.17.부터 2006.4.19.까지를 2004.8.17.부터 2006.9.29.까지로 163일 연장</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공사기간의 간접공사비 합계 1,857,018,410 (=공사일시정지로 인한 추가비용 105,517,032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1,751,501,378)</li> </ul>
시사점 및 기타			

## 판례 22. 00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실 증축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고등학교 장애인승강기실 증축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경기도	
사업 기간	최초	2007.11.26. ~ 2008.3.24.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7.11.26. ~ 2008.9.16.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8.09.16.		총공사비	136,457,0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09가단30111		
사건 접수일	2009.12.29.		
판결 선고일	2011.06.01.		
항소 및 상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소가	25,710,024		
판결금액	8,018,868		
(소가 대비 판결 %)	31.19%		
(총공사비 대비 %)	5.88%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외	공사정지기간동안의 이자 <sup>1)</sup>	
인정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외	공사정지기간동안의 이자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가건물 철거 미완료,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공사비 증가액(피고의 귀책) ② (청구시점) 당초 계약준공일 전 계약금액조정신청 ③ (인정기간) 실제 공사정지 시점부터 완공일까지 인정(83일)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1) 계약일반조건 제54조 제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의 책임없는 사유(피고의 공사중지 통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의 금액조정 신청 거부, 준공 기성금만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위 1, 2, 3차 변경계약에 따라 약 6개월 연장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된 간접공사비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li> </ul>
② 청구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대가 수령일 이전 계약금액조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대가 수령일 : 2008.10.20</li> <li>- 계약금액 조정신청일 : 2008.09.16</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변경된 부분의 이행 착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원고는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완료 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대가 수령일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된 간접공사비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함.</li> </ul>
③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기간 약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준공 : 2008.03.24.</li> <li>- 최종준공 : 2008.09.16</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 주장 인정</li> </ul>
④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3차 변경계약에 따라 준공기한이 약 6개월 연장되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함</li> <li>연장기간(6개월)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 계 : 20,860,024원</li> <li>- 간접노무비 : 17,560,300원 (현장대리인과 기타요원1명)</li> <li>- 산재보험료 : 667,291원</li> <li>- 고용보험료 : 117,654원</li> <li>- 기타 경비 : 87,801원</li> <li>- 일반관리비 : 184,330원</li> <li>- 이 윤 : 346,283원</li> <li>- 부가가치세 : 1,896,365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고는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하여 1,2차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따로 공사기간 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금액 조정 필요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고가 지급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간접노무비 추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li> <li>연장기간(6개월)에 대한 간접공사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 계 : 5,701,958원</li> <li>- 간접노무비 : 4,800,000원 (현장대리인만 인정)</li> <li>- 산재보험료 : 182,400원</li> <li>- 고용보험료 : 32,160원</li> <li>- 기타 경비 : 24,000원</li> <li>- 일반관리비 : 50,385원</li> <li>- 이 윤 : 94,654원</li> <li>- 부가가치세 : 518,359원</li> </ul> </li> </ul>
시사점 및 기타			

## 판례 23. 00동 소재 도로개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동 소재 도로개설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건설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업 기간	최초	2005.04.21. ~ 2007.04.10.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5.04.21. ~ 2010.02.28.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10.02.24.		총공사비	8,482,722,1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0가합9514	2012나6578	2013다48968
사건 접수일	2010.05.27.	2012.08.13.	2013.07.01.
판결 선고일	2012.06.21.	2013.05.21.	2013.10.11.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피고 쌍방향소	피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항소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소가	1,408,858,720	원고 : 74,516,474 피고 : 209,162,861	209,162,861
판결금액	209,162,861	-	-
(소가 대비 판결 %)	14.85%		
(총공사비 대비 %)	2.47%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비 외		
인정항목	간접비		
	간접비 외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주민 집단민원, 연계된 재건축사업의 추진 지연, 설계변동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 또는 공사 물량 등의 조정 ② (청구시점) 당초 계약준공일 전 계약금액조정신청 ③ (인정기간) 실제 공사정지 시점부터 완공일까지 인정(219일) ④ (인정범위) 209,162,861원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도로용지 매입지연,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 연계된 재건축사업 추진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1,054일이나 연장</li> <li>• 설계 변경으로 연장된 공사기간을 제외한 794일에 해당하는 간접공사비 772,176,011원 추가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들은 변경된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피고에게 적절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함</li> <li>• 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조정신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추가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li> </ul>
② 청구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전 계약금액조정 신청</li> <li>- 당초 준공일 : 2010.2.28.</li> <li>- 청구일 : 2010.2.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대가 수령일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 하였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된 간접공사비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li> </ul>
③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준공 : 2007.4.10.</li> <li>• 최종준공 : 2010.2.28.</li> <li>• 연장기간(1,054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공사비 산출기간 실제 공사기간 365일 - (최초 예정 공사기간 126일 × 변경된 공사금액/최초 예정 공사금액) = 219일</li> </ul>
④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공사기간의 간접공사비 합계 348,604,769원 × 간접공사비 산출기간 219일/실제 공사기간 365일 = 209,162,861원</li> </ul>
시사점 및 기타			

## 판례 24. 00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공사, 토목·조경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1. 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공사(제1도급계약) 2. 토지구획정리사업 토목·조경공사(제2도급계약)		계약방식	-	
원고	주식회사 00000 외 5명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업 기간	최초	1. 2003.09.03. ~ 2006.09.02. 2. 2000.01.07. ~ 2002.07.06.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1. 2003.09.03. ~ 2009.08.18. 2. 2000.01.07. ~ 2009.06.23.		논쟁차수	-
청구시점	1. 2009.04.10. 2. 2009.05.경		총공사비	1. 7,125,770,000 2. 9,063,000,0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0가합1384		
사건 접수일	2010.01.27.		
판결 선고일	2012.09.28.		
항소 및 상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소가	903,048,215		
판결금액	제1원고들: 443,465,472 제2원고들: 212,023,463		
(소가 대비 판결 %)	1. 49.11% 2. 23.48%		
(총공사비 대비 %)	1. 6.22% 2. 2.34%		
청구항목	간접비	제1,2도급계약 간접노무비, 가설공사비, 경비	
	간접비 외		
인정항목	간접비	제1,2도급계약 간접노무비, 가설공사비, 경비	
	간접비 외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1.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동절기, 보상협의 지연 등) 2.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공사용지 미확보, 동절기 보상협의 지연, 설계변경) ② (청구시점) - 1,2. 준공대가 지급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 ③ (인정기간) 1. 연장된 공사기간 878일 2. 연장된 공사기간 2,351일 ④ (인정범위) 1. 연장된 공사기간 878일 동안에 제1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443,465,472원 2. 연장된 공사기간 878일 동안에 제1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212,023,463원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발생</li> <li>- 제1공사 :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 설계변경 등</li> <li>- 제2공사 : 공사용지 미확보,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 설계변경 등</li> </ul>
② 청구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공사 : 최종 준공대가 지급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li> <li>- 준공대가 지급일 : 2009.12.30.</li> <li>- 계약금액 조정신청 : 2009.4.10.</li> <li>제2공사 : 최종 준공대가 지급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li> <li>- 준공대가 지급일: 2009.6.29.</li> <li>- 계약금액 조정신청: 2009.5.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하였기 때문에 모두 적절한 조정신청으로 볼 수 있음.</li> </ul>
③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공사 공사정지기간 : 878일</li> <li>제2공사 공사정지기간 : 2,351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되는 공사기간 전부에 대한 적절한 조정신청으로 판단됨</li> </ul>
④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공사 : 508,846,476원</li> <li>제2공사 : 394,201,739원 (간접노무비, 가설공사비, 경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원고들이 주장하는 간접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모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된 직접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간접공사비만 계약금액을 변경하는데 반영하였을 뿐,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는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li> <li>제1공사 : 443,465,472원<sup>1)</sup></li> <li>제2공사 : 212,023,463원 (간접노무비, 가설공사비, 산재·고용보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li> </ul>
시사점 및 기타			

1) 지출자료(노무비 산정 시 해당 현장 근무 자료 등)가 없는 항목은 제외

## 판례 25. 00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계약방식	-	
원고	주식회사 0000건설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업 기간	최초	2008.12.17. ~ 2009.08.18.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8.12.17. ~ 2009.11.29.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9.12.16.		총공사비	2,400,207,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0가합20200	2012나26802	2013다28001
사건 접수일	2010.11.05.	2012.03.23.	2013.04.02.
판결 선고일	2012.02.22.	2013.02.20.	2013.06.27.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항소	원고·피고 쌍방상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피고 일부패소	심리불속행기각
소가	179,841,468	117,323,030	원고: 51,320,290 피고: 20,548,520
판결금액	<b>41,581,784</b>	20,548,520	-
(소가 대비 판결 %)	<b>23.12%</b>	17.51%	
(총공사비 대비 %)	<b>1.73%</b>	0.86%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감리비 포함), 경비(직접계상5, 승률계상4) <sup>1)</sup> , 계약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외	추가비용(사토물량 증가분 처리, 사급자재 구입, 운반거리 증가), 구상금, 지연 배상금 채무 부존재	
인정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감리비 제외), 경비(직접계상5, 승률계상4), 계약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외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② (청구시점) ③ (인정기간)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5, 승률계상4), 계약보증수수료,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1) 직접계상 : 복사기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승률계상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12.16. : 계약금액 조정신청</li> <li>- 약정준공일 : 2009.11.29.</li> <li>- 실제준공일 : 2009.12.21.</li> <li>- 준공대가 지급일 : 2010.01.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적법한 조정신청이라고 할 것임.</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된 공사기간(2009.08.18. ~ 2009.11.29.) 전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된 공사기간동안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불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 전부에 대한 적법한 조정신청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감리비 포함)</li> <li>•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계상비목 : 복사기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li> <li>- 승률계상비목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li> </ul> </li> <li>• 계약보증수수료</li> <li>• 일반관리비</li> <li>• 이윤</li> <li>• 부가가치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리비 제외)</li> <li>•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계상비목 : 복사기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li> <li>- 승률계상비목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li> </ul> </li> <li>• 계약보증수수료</li> <li>• 일반관리비</li> <li>• 이윤</li> <li>• 부가가치세</li> </ul>
시사점 및 기타			

## 판례 26. 00-00간 도로확포장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약방식		계속비공사	
원고		주식회사 00건설		피고		경기도 (경기도도로사업소)	
사업 기간	최초	2005.01.05. ~ 2008.01.09.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5.01.05. ~ 2013.01.09.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8.12.03. 이후 3회		총공사비		30,205,767,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1가합69997	2014나2009203	
사건 접수일		2011.07.08.	2014.03.13.	
판결 선고일		2014.02.07.	(진행 중)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피고 쌍방향소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진행 중)	
소가		2,339,747,912	(진행 중)	
판결금액		1,629,768,184	(진행 중)	
(소가 대비 판결 %)		69.66%	(진행 중)	
(총공사비 대비 %)		5.39%	(진행 중)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8, 승률계상4) <sup>1)</sup> , 부가가치세		
	간접비 외	하수급인 회사 직원 간접노무비, 차량 렌트카 비용, 광열비		
인정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8, 승률계상4), 부가가치세		
	간접비 외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공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지연(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 ② (청구시점) 최종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면 충분 ③ (인정기간)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8, 승률계상4), 부가가치세		

1) 직접계상 : 여비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관리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도시인쇄비, 지급임차료  
 승률계상 :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가 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사계획대로 완료하지 못하고 확보된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등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원고의 책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li> </ul>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3회 계약금액 조정신청 - 2008.12.03. :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 명의</li> <li>- 2010.11.09. : 원고의 대표이사 명의</li> <li>- 2011.07.08. : 소제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의 최종 기성대가 지급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 적법함.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간접공사비 지급 의무 있음.</li> </ul>
③ 인정 기간	-	-	-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수급인인 회사 직원에 대한 간접노무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증액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간접공사비에 대한 합의가 되었으므로 위 합의와 다르게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li> <li>공동수급체 중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였는바 소외 회사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 지급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간접공사비의 채권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이유 없음</li> <li>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채권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한 소송신탁을 받아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고 있는 것<sup>1)</sup>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li> <li>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현장관리 업무를 하수급인 회사 직원들에게 맡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들에게 지급된 노무비는 산정대상에서 제외</li> </ul>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렌트차 비용 청구</li> <li>• 공사현장에서 지출된 광열비 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및 공무담당자는 간접 노무비 산정 대상 미포함</li> <li>•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계약금액에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공사비 산출기간을 차감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대상자인지 여부는 현장소장, 품질관리자, 현장경리 등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사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li> <li>• 렌트차 비용 지출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하고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려움</li> <li>• 가설사무실 사용기간을 36개월에서 96개월로 변경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가설사무실의 연료비용을 추가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가설사무실 등 현장수도광열비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 이유 없음</li> <li>•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된 계약금액 중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 없음.</li> </ul>
시사점 및 기타	최종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계약금액 조정신청 인정		

1)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원고는 원고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자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소의 회사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참조)

## 판례 27. 00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주식회사 000종합건설 외 2명		피고	성남시	
사업기간	최초	2009.08.28. ~ 2010.06.11.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9.08.28. ~ 2012.04.16.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12.05.17.		총공사비	11,437,518,0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2가합5525	2014나2007290	
사건 접수일	2012.08.10.	2014.03.03.	
판결 선고일	2014.02.06.	2014.07.24.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항소기각	
소가	493,690,000	119,908,610	
판결금액	119,908,610	-	
(소가 대비 판결 %)	24.29%		
(총공사비 대비 %)	1.05%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8, 바울계상8)1),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외	추가공사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타워크레인 임대료, 가설방음벽 및 판넬설치비	
인정항목	간접비	원고 청구 항목 모두 인정	
	간접비 외	추가공사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 ② (청구시점)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함 ③ (인정기간) -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직접계상8, 바울계상8),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1) 직접계상 : 전기요금, 수도요금,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임시도로 점용료  
 바울계상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취재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측의 설계변경,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li> </ul>	-	-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05.17.</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함.</li> <li>- 2010.09.17. : 1차 준공대가</li> <li>- 2011.11.21. : 2차 준공대가</li> <li>- 2012.05.25. : 3차 준공대가 3차분에 대해서만 적법한 조정신청 인정</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87일)</li> <li>-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 : 73일</li> <li>- 방음벽 설계변경 : 14일</li> <li>• 공사중단기간 동안 추가공사대금 청구</li> <li>- 2010.09.16. ~ 2011.05.10. (237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계약 시 3차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불가변 동 뿐만 아니라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공사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14일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됨.</li> <li>• 공사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각 차수별 계약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지급해야 함.</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중단기간 동안 지출한 타 워크레인 임대료</li> <li>• 공사중단기간 동안 지출한 가설방음벽 및 판넬설치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율계상경비 중 정산 완료된 4개 항목(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은 공사중단기간 이전까지로 정하고 있고, 실제 타워크레인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불인정</li> <li>• 당초 총공사대금 산정시 예정한 가설방음벽 및 판넬의 설치기간인 24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비용을 들여 설치, 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불인정</li> <li>•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이유 없음</li> </ul>
시사점 및 기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함.		

## 판례 28. 00시 농협 000지점 건물 신축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시 농협 000지점 건물 신축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마산시농업협동조합	
사업 기간	최초	2010.08.30. ~ 2011.07.29.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최종	2010.08.30. ~ 2011.12.30.		논쟁차수	
청구시점			총공사비	2,084,800,0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2가합5919	2013나2330	
사건 접수일	2012.09.13.	2013.07.24.	
판결 선고일	2013.06.27.	2013.08.02.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항소취하	
소가	229,385,250	21,180,897	
판결금액	13,117,103		
(소가 대비 판결 %)	5.72%		
(총공사비 대비 %)	0.63%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일반 및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비 외	잔존공사대금, 폐기물처리비, 민원처리비용, 지체상금	
인정항목	간접비	-	
	간접비 외	잔존공사대금, 폐기물처리비, 민원처리비용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 ② (청구시점) - ③ (인정기간) - ④ (인정범위) -		

##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기간 연장 발생</li> </ul>	-	-
② 청구시점	-	-	-
③ 인정기간	-	-	-
④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존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li> <li>• 폐기물처리비 및 지연손해금</li> <li>•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간접노무비, 일반 및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li> <li>• 지체상금의 종기 -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설계자에게 제출한 날 (2012.01.02.) 또는 실제로 건물을 완공한 날 (2011.12.30.)</li> <li>• 민원처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은 효력이 없음(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체상금의 종기 - 원고가 준공계를 피고에게 제출한 날 (2011.12.31.~2012.01.19.)</li> <li>• 민원처리는 원고가 하기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출한 민원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sup>1)</sup>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대금 중 기지급금 및 변제공탁금<sup>2)</sup>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피고의 지급 의무 인정</li> <li>• 폐기물처리비용은 차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해당 비용을 지급할 의무 있음</li> <li>•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사를 마친 후 피고와 추가간접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li> <li>•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각서<sup>3)</sup> 등에 의해 지체상금의 종기인 이 사건의 준공일은 2012.01.19.로 보아야 함. 단,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는바 지체상금을 30% 정도 감액하기로 함.</li> <li>• 공사 진행 중 발생한 민원은 원고가 책임지고 보상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주장하는 규정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이므로 적용되지 않음.</li> </ul>

- 1) 남의 채무(債務)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
- 2) 채무자가 변제(채무의 이행)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
-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1조 제1항(계약상대자는 공사완성시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장설명서 제14조(준공일은 행정기관의 사용검사필증을 첨부한 준공계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접수받은 날) 참조



## 판례 29. 000/00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0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원고	00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울릉군	
사업 기간	최초	2009.06.25. ~ 2011.06.20.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9.06.25. ~ 2012.07.12.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13.04.30.		총공사비	7,189,002,000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3가합10587	2014나2007276	
사건 접수일	2013.06.03.	2014.03.03.	
판결 선고일	2014.01.17.	2014.06.18.	
항소 및 상고	원고	원고·피고 쌍방항소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항소기각	
소가	1,755,331,823		
판결금액	376,603,197		
(소가 대비 판결 %)	21.45%		
(총공사비 대비 %)	5.24%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기타경비 등	
	간접비 외	미지급 공사대금	
인정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기타경비 등	
	간접비 외	미지급 공사대금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동절기 공사 중지 요청 및 폐기물 처리지연, 초소이전 설계변경 등(피고 귀책사유) ② (청구시점)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해야 함 ③ (인정기간) 원고가 청구한 기간 모두 인정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기타경비 등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절기 공사 중지 요청 및 폐기물 처리지연, 초소이전 설계변경 등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장됨</li> </ul>
② 청구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 이행 착수일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적이 없고 준공대가 정산 이후 신청하여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해야 함 원고는 2013.04.30.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3.04.30. 조정신청은 연장되는 공사기간 전부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고 판단됨</li> </ul>
③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8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절기 공사 중지 : 63일</li> <li>- 동절기 공사 중지 및 폐기물 처리지연 : 157일</li> <li>-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초소이전 설계변경 : 168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공사계약 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의 간접비를 반영, 변경계약에도 초소이전 설계변경에 대한 간접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금액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경계약 체결 시 공사기간만을 연장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증액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 이유 없음</li> </ul>
④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기타경비 등 388일 동안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용 청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의 청구금액 모두 인정</li> </ul>
시사점 및 기타			

## 판례 30. 00~00 복선전철 제0공구 (00~00) 노반신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 복선전철 제0공구 (00~00) 노반신설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계약	
원고	00건설산업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 기간	최초	2005.03.25. ~ 2010.03.31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5.03.25. ~ 2013.12.31		논쟁차수	-
청구시점	2009.12.15.		총공사비	81,654,000,000원	

### □ 소송현황

구분	1심	2심	3심
사건번호	2012가합21945		
사건 접수일	2012.10.22		
판결 선고일	2014.08.14.		
항소 및 상고	원고		
종국결과	피고 일부패소		
소가	2,821,815,910		
판결금액	2,616,499,958		
(소가 대비 판결 %)	92.72%		
(총공사비 대비 %)	3.20%		
청구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경비	
	간접비 외	-	
인정항목	간접비	간접노무비, 경비	
	간접비 외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피고에 대해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음 ② (청구시점) 2009.12.15.(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2009.12.17.(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 ③ (인정기간) 45개월(2010.4.~2013.4.), (2013.5.~2013.12.) ④ (인정범위) 2,821,815,910원		

□ 주요쟁점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의 사업비 부족, 용지보상 지연, 설계변경</li> <li>• 원고는 적법하게 총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와 계속비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내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도 차수별 계약 기간의 변경 이외에 총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해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음</li> <li>•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경계약의 계약금액에 원고가 청구하는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li> </ul>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12.15.(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li> <li>• 2009.12.17.(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가 2012.12.28. 원고와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최종 공사금액에 관하여 이익을 유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최종 공사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이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포기한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가 2009.12.1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0.3.31.에서 2013.12.31.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기 전인 2009.12.15.과 2009.12.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함으로써 적법한 조정신청을 함</li> <li>→ 원고가 최종 공사대금으로 합의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li> </ul>
③ 인정 기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개월 (2010.4.~2013.4.) (2013.5.~2013.12)</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16,499,958원 (간접노무비,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 필수 인력 대비 과다한 인력을 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21,815,910원 (2010.4.부터 2013.4.까지의 실비기준으로 산정한 2,320,159,750원 + 2013.5.부터 2013.12.까지 추정하여 산출한 금액 501,656,160원)</li> <li>• 현장 투입인력은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된 노무자를 대상으로 급여명세표와 급여 대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li> <li>• 차수별계약 사이의 공백기간</li> </ul>

구분	원고주장	피고주장	판결
			<p>에 상응하는 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연장된 기간 동안의 추가 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간접비는 직접공사비에 연동되어 일정한 승률로 계산되는 것으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추가로 지출되는 간접공사비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님(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반영되어 있는 간접공사비와 중복하여 청구되는 간접공사비는 공제되어야 할 것임)</li> </ul>
시사점 및 기타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은 차수별계약 공사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임 (총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으며, 차수별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됨)		

## 부-02. 중재 사례

### 중재 1. 000 하수관거정비공사

□ 공사개요

공사명	000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신청인	주식회사 0000 외2		피신청인	00시	
사업 기간	최초	2005.01.05 ~ 2007.07.04.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7회
	최종	2005.01.05. ~ 2008.01.31.(연장 211일)		논쟁차수	6차, 7차
청구시점	2007.09.11. 2009.11.15. (최종준공대가 수령전 2회)		총공사비	9,131,062,000원	

□ 중재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제08111-0050호
사건 접수일	-
판결 선고일	2008.10.17.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271,419,320
판결금액	198,136,101
(소가 대비 판결 %)	73%
(총공사비 대비 %)	2.17%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허가 및 협의지연 등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 ② (청구시점) 장기계속공사도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에 청구하면 인정 ③ (청구금액) 변경계약 당시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공제함.

##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의 예산 미확보 및 인허가지연과 협의 지연으로 인한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원맨홀펌프장 이외 배수 설비 등 신청인은 현장을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였고</li> <li>• 운반거리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예상한 공사기간 연장은 그러하지 않은 점.</li> <li>• 공사기간 연장이 없었다면 신청인도 지체상환금을 부담할 상황이었으므로 7차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은 받아들일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li> <li>• 2007.12.31.에서 1개월 공사 연장된 책임에서는 세부공정 계획을 준비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협의 요청하여야 하나 늦장 부린 신청인의 귀책사유 일부 포함.</li> </ul>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준공대가 수령 전 2회 (2007.09.11. 2009.11.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이 체결된 당해 차수계약별로 연장되는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연된 공사기간 중 일부가 중복되는 점 인정</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준공 : 2007.07.04</li> <li>• 최종준공 : 2008.01.31</li> <li>• 2007.07.04. ~ 2008.01.31. 최초준공 ~ 최종준공(211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비는 차수별 공사계약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공사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1개월의 부분은 변경계약 체결시 공사대금의 증액이 있었던 점을 고려</li> <li>•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정하여 판결</li> <li>• 판결금액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각 지분율에 따라 지급</li> </ul>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및 경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및 경비를 인정하되, 공사기간 연장 발생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도 감안하여 금액판결</li> </ul>
시사점 및 기타			

## 증재 2. 도로 확·포장 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업 기간	최초	2003.09.22. ~ 2005.08.21.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3차
	최종	2003.09.22. ~ 2008.07.28. (연장 862일)		논쟁차수	전 차수
청구시점	2008.06.16.		총공사비	5,376,013,000원	

### □ 증재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제08111-0146호
사건 접수일	-
판결 선고일	2009.04.06.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281,923,000
판결금액	236,311,900
(소가 대비 판결 %)	83.92%
(총공사비 대비 %)	4.39%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직접계상비목(8종), 승률계상비목(4종),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직접계상비목(4종), 승률계상비목(1종),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복합적 원인으로 판단됨. ② (청구시점) 변경된 공사 착수이후에 간접비를 청구하여도 신청인이 근거로 삼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에 의해 간접비 청구에 대한 거부 이유없음. ③ (인정기간) 설계변경(100%), 공사중지기간(50%)에 따른 공사연장기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됨. 그 외 연장기간은 신청인 주장 인정. * 총 707일 신청 → 총 404일만 인정 ④ (인정범위)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 항목 중 증거불충분 항목은 제외함.

##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부지 미제공,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이 연장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는 신청인주장 불인정</li> <li>•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연장사유 신청인주장 인정</li> </ul>
② 청구 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되는 공사의 착수 이후 신청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반하므로 불인정</li> </ul> <p>&lt;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항&gt;</p> <p>“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2항은 혼시적인 규정이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에 책무를 지우는 규정이므로 간접비 청구에 대한 거부 이유없음.</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계약기간 대비 연장된 공사기간 862일중 2006.11.01.~ 2008.07.28.까지의 636일 주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 및 전체공사대금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포함되었다고 주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기간 636일중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총161일)</li> <li>-설계변경(추가물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30일)</li> <li>-동절기 공사중지기간 (118일)</li> <li>-제3차 착공전 준비기간 (13일)</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11.01.~2008.07.28.까지(공사기간 636일 연장분)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간접비 청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1일은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공제하여 475일가량으로 계산(월 환산, 단수 절사 15개월로 계산)</li> <li>-추가공사물량 30일 공사기간 연장</li> <li>-동절기 공사중지기간 118일</li> <li>-제3차 공사계약 착공일까지의 준비기간 13일</li> </ul>
시사점 및 기타			

### 중재 3. 도로개설공사

□ 공사개요

공사명	도로개설공사		계약방식	-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업 기간	최초	2004.09.13. ~ 2007.08.29.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4.09.13. ~ 2009.01.19.(연장 508일)		논쟁차수	-
청구시점	-		총공사비	38,328,000,000원	

□ 중재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중재 제09111-0210호
사건 접수일	-
판결 선고일	2010.06.28.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976,796,000
판결금액	533,925,000
(소가 대비 판결 %)	54.66%
(총공사비 대비 %)	1.39%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10명),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8명),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총 16개월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장기간 5개월 제외한 11개월은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된 기간으로 인정 ② (청구시점) 판결내용 없음. ③ (인정기간) 총 연장기간 16개월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장기간 5개월을 제외한 11개월만 연장기간으로 인정

##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된 16개월의 추가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연장된 16개월 중 설계변경으로 연장된 5개월을 제외한 11개월로 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연장기간 16개월 중 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간접비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11개월로 봄.</li> </ul>
② 청구 시점	-	-	-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된 16개월의 추가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16개월 중 설계변경으로 연장된 5개월을 제외한 11개월을 지급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연장기간 16개월 중 기간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간접비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11개월로 봄.</li> </ul>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생한 간접비 : 1,603,076,000원</li> <li>설계변경시 계약금액에 반영된 간접비 : 626,280,000원</li> <li>추가 청구 간접비 : 976,796,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기간 중 계약금액조정 필요로 하지 않는 기간 5개월 제외,</li> <li>나머지 11개월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실비지급원칙에 따라 법정 현장관리직원 3명만 지급</li> <li>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합계 - 253,000,0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 8명</li> <li>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리후생비</li> <li>- 소모품비</li> <li>- 기타경비</li> </ul> </li> </ul>
시사점 및 기타			

## 중재 4. 0000 진입로 개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 진입로 개설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신청인	0000 주식회사 외 1		피신청인	0000	
사업 기간	최초	1993.03.24. ~ 1995.03.23.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12회
	최종	1993.03.24. ~ 2003.07.18. (3,039일 증)		논쟁차수	8~12차
청구시점	2003.07.10. (최종준공대가 수령 전)		총공사비	40,154,360,000원	

### □ 중재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제04111-0068호
사건 접수일	-
판결 선고일	2005.07.18.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1,156,444,000
판결금액	231,895,919
(소가 대비 판결 %)	20.05%
(총공사비 대비 %)	0.58%
간접비 청구항목	-
간접비 인정항목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공동수급업체의 부도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는 피고의 귀책사유 아님. ② (청구시점)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점 이전에 완료된 차수도 간접비 청구 가능 ③ (인정기간) 공기지연 일수산정의 기준은 반드시 당초준공이 되지는 않음. 차수별 중복기간은 각 독립된 차수를 별도로 시행하므로 중복아님.

##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 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미확보, 수십 차례의 설계변경, 동절기 공사중지, 환경영향평가심의 지연 등.</li> <li>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기의 지연은 사업물량의 증가로 인한 공사금액의 조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수급업체 부도지연 133일 과 동절기 정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지연기간 인정</li> <li>물량변경 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에 간접비 증가 반영된 증거 불충분.</li> </ul>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3.07.10. (최종준공대가 수령 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계약일반조건 23조2항<sup>1)</sup>에 따라,</li> <li>신청인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시점 이전에 완료된 공사는 간접비 청구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계약일반조건 23조2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나 지급을 구할 권리를 상실시키는 규정이 아님.</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준공 : 1995.03.23</li> <li>최종준공 : 2003.07.13</li> <li>1995.03.23. ~2003.07.13. 당초준공 ~ 최종준공 3,039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수공사계약의 공기지연중 다른 차수의 공사계약이 진행중이었으므로</li> <li>중복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간접비는 청구 대상이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기지연은 당초준공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 기각<sup>2)</sup></li> <li>각 차수의 공사계약은 도급액이 다르며,</li> <li>산출내역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 내용의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므로</li> <li>중복산정 대상이 아님.</li> </ul>
인정 범위	-	-	-
시사점 및 기타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2항 -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함.

2) 차수별 계약시 총괄분과 다르게 공정표 및 절대공기를 정한 경우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임.

## 증재 5. 제방개수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제방개수공사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업 기간	최초	2003.12.03. ~ 2006.01.23.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4회
	최종	2003.12.03. ~ 2007.12.31. (연장 707일)		논쟁차수	전 차수
청구시점	준공 전		총공사비	9,397,000,000원	

### □ 증재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제08111-0043호
사건 접수일	-
판결 선고일	2008.10.28.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716,486,000
판결금액	275,994,928
(소가 대비 판결 %)	38.52%
(총공사비 대비 %)	2.93%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직접계상비목(6종), 승률경비(4종),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직접경비(6종), 승률경비(4종)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복합적 원인으로 판단됨. ② (청구시점) 의견없음 ③ (인정기간) 설계변경(100%), 공사중지기간(50%)에 따른 공사연장기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됨. 그 외 연장기간은 신청인 주장 인정. * 총 707일 신청 → 총 404일만 인정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중 일부인원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제외함.

##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미확보,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기간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이 연장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는 인정하나 동절기 및 우기 및 설계변경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볼수 없다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기 및 동절기의 공사중단은 신청인의 공사지연에 의한 사유와 피신청인의 예산 미확보, 관급자재 공급 지연등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인정</li> </ul>
② 청구 시점	-	-	-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계약기간 대비 연장된 공사기간 707일 주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인정함. (160일)</li> <li>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54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절기 및 우기로 인한 공사 중지 396일</li> <li>- 준공계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실제 공사기간을 감안한 31일</li> <li>-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120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기, 동절기 중단기간 183일, 설계변경기간 120일을 제외한 404일이라 판결함.</li> <li>- 신청인의 공사지연에 의한 사유와 피신청인의 예산 미확보, 관급자재 공급 지연등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 주장의 50%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거부족으로 피신청인 주장 불인정</li> <li>- 설계변경 추가공사비의 산정에 있어서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주장 인정</li> </ul> </li> </ul>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6.14.24.~2007.12.31까지 (공사기간 707일 연장분)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간접비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수별 계약금액에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li> <li>추가공사대금(간접노무비, 지급수수료, 식대, 임차료등)에 대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li> <li>일반관리비, 이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공사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상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외함이 타당함.</li> <li>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지출된 사실을 인정되므로 지급하여야 함.</li> <li>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이 0%이므로 원고 주장 불인정</li> </ul>
시사점 및 기타			

## 중재 6. 계수대로 개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계수대로 개설공사		계약방식	-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업 기간	최초	2002.10.14. ~ 2004.04.06.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2.10.14. ~ 2008.06.28.(연장 1093일)		논쟁차수	-
청구시점	-		총공사비	15,117,000,000원	

### □ 중재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중재 제08111-0105호
사건 접수일	-
판결 선고일	2009.2.20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 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1,234,321,000
판결금액	688,123,877
(소가 대비 판결 %)	55.75%
(총공사비 대비 %)	4.55%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인정됨. ② (청구시점) 판결내용 없음 ③ (인정기간) 용지보상 지연등으로 연장된 총 558일 중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정되는 230일만 추가간접비 인정 대상임.

##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연장된 공사기간의 추가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보상의 지연은 신청인들이 처음부터 이미 예상하여 이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장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주공정의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유는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정되어 추가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li> </ul>
② 청구 시점	-	-	-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1차연장 405일과 2차연장 153일의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연장과 2차연장 당시의 실정보고등의 자료를 참고할 때 1~2차 연장기간의 상당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차연장 405일 중 150일만 인정하며, 2차연장 153일 중 80일만 인정함.</li> </ul>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연장된 558일의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연장된 558일 중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30일의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li> </ul>
시사점 및 기타			

## 증재 7. 도로 확·포장 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방식	계속비공사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업 기간	최초	2006.05.04. ~ 2007.05.03.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해당없음
	최종	2003.09.22. ~ 2009.09.04. (연장 855일)		논쟁차수	해당없음
청구시점	2008.06.16.		총공사비	6,504,308,000원	

### □ 증재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제08111-0078호
사건 접수일	-
판결 선고일	2009.11.13.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792,959,337
판결금액	153,631,027
(소가 대비 판결 %)	19.37%
(총공사비 대비 %)	2.36%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직접계상비목, 승률계상비목,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직접계상비목, 승률계상비목, 일반관리비, 이윤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피신청인 귀책사유임. ② (청구시점) 의견없음 ③ (인정기간) 1차연장기간 불인정, 2~3차 연장 및 공사중지기간 인정 ④ (인정범위) 하도급업체 부담비용 인정, 직접시공 일부 참여인원 50%인정

##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성토 토취장 미확보로 인한 착공지연</li> <li>• 용지 및 지장물 보상관련 미원, 토취장 개발에 따른 토공사 실착공이 지연</li> <li>• 측사 등 지장물 소상 및 이전 지연과 우기로 인한 지연</li> <li>•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연</li> </ul> - 연장 및 중지로 인한 공기 연장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함.	-	-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 주장 인정
② 청구 시점	-	-	-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계약기간 대비 연장된 공사기간 중 163일을 제외한 667일을 주장함.</li> <li>- 1차연장 : 181일</li> <li>- 2차연장 : 92일</li> <li>- 3차연장 : 75일</li> <li>- 공사중지기간 : 319일</li> </ul> ※ 재착공후 연장기간(163일)은 청구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연장 : 설계변경시 증액된 공사비에 반영되었으므로 불인정</li> <li>- 2차연장 : 측사 이전 가능 시기를 신청인이 판단할 수 있었으며 현장관리 소홀이 원인이므로 불인정</li> <li>- 3차연장 : 측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부분의 공정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지연을 만회할 수 있도록 3차연장을 하게 된 것이므로 추가비용중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용은 공제하여야 함.</li> <li>- 공사중지기간 : 공사중지기간 중 전체 공정대비 2.5%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공사를 수행한 비율만큼 추가비용 산정시 공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액된 공사대금에 간접비가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간접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고 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주장 인정</li> <li>-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주장 불인정</li> <li>- 공사가 지연된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신청인 주장 불인정</li> <li>- 공사중지 기간 중 일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 주장 불인정</li> </ul>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④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 연장 및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li> <li>• 2차 연장 및 3차연장과 공사중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부담한 노무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추가비용 중 하도급업체의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li> <li>• 추가비용 산정시 실제 근무한 근로자로 제한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업체가 부담한 비용도 결국 신청인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이므로 피신청인 주장 불인정</li> <li>• 일부 근로자중 경력증명서 기재상 담당업무가 ‘시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장관리 업무외에 직접시공을 일부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50%만 인정</li> </ul>
시사점 및 기타			

## 중재 8. 풍력발전 개발사업

### □ 공사개요

공사명	풍력발전 개발사업		계약방식	-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업 기간	최초	2007.09.01. ~ 2007.12.31.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7.09.01. ~ 2008.08.31.(연장 243일)		논쟁차수	-
청구시점	-		총공사비	-	

### □ 중재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중재 제09111-0143호
사건 접수일	-
판결 선고일	2010.5.20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 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5,146,470,000
판결금액	1,337,860,799
(소가 대비 판결 %)	30%
(총공사비 대비 %)	-
간접비 청구항목	추가임차 비용, 추가하자보증계약 비용
간접비 인정항목	추가임차 비용, 추가하자보증계약 비용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사업승인 및 인허가 업무를 오로지 피신청인이 수행했고, 신청인이 대리하여 한 바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임 ② (청구시점) ③ (인정기간)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이 00지사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주어야 하는데, 승인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책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조항상 신청인이 사업 승인 신청 및 인허가업무 등을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지연에 의한 추가비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담 책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승인 및 인허가 업무를 오로지 피신청인이 수행했고, 신청인이 대리하여 한 바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임</li> </ul>
② 청구 시점	-	-	-
③ 인정 기간	-	-	-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프레임 등 추가임차 비용</li> <li>• 추가하자보증계약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프레임 등 추가임차 비용: 사건 계약 제6.3.2조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li> <li>• 추가하자보증계약비용: 사건 계약 제1.33.1조에 의해 신청인은 풍력발전설비 최종 호기의 실제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년간 모든 기자재 등의 하자 보증해야함, - 신청인은 이와 다르게 OO사와 TOC의 발행통보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증기간을 정한 것으로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프레임 등 추가임차 비용 - 2008.01.01. ~ 2008.08.31.</li> <li>• 추가하자보증계약비용</li> </ul>
시사점 및 기타			

## 중재 9. 기념관 증·개축 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기념관 증개축 공사		계약방식	-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업 기간	최초	2006.12.28. ~ 2008.02.28.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2006.12.28. ~ 2008.12.27.(연장 302일)		논쟁차수	-
청구시점	-		총공사비	2,010,000,000원	

### □ 중재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중재 제09111-0108호
사건 접수일	-
판결 선고일	2009.10.19.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 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197,563,796
판결금액	150,000,000
(소가 대비 판결 %)	75.92%
(총공사비 대비 %)	7.46%
간접비 청구항목	현장관리비(급여, 보험료, 현지운영비, 비자발급 및 항공료, 변경계약 수수료, 일반관리비, 회사이윤)
간접비 인정항목	현장관리비(급여, 보험료, 현지운영비)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인허가 및 설계기간 지연등은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봄 ② (청구시점) ③ (인정기간)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현지설계기간 지연은 피신청인의 책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 착수일을 준수하지 않아 연장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 있음 따라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현지설계기간 지연등은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봄</li> </ul>
② 청구시점	-	-	-
③ 인정기간	-	-	-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관리비(급여, 보험료, 현지운영비, 비자발급 및 항공료, 변경계약 수수료, 일반관리비, 회사이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관리비(급여, 보험료, 현지운영비)</li> <li>- 비자발급 및 항공료, 변경계약 수수료, 일반관리비, 회사이윤은 2008.11.11.자 잔여공사에 관한 합의 취지에 따른 현장 관리비로 볼 수 없음.</li> <li>- 급여, 보험료, 현지운영비는 지급이 인정되나, 신청인의 설부른 판단에 의한 공사 계약 등 과실이 참작되므로 신청인의 귀책도 일부 있음.</li> </ul>
시사점 및 기타			

## 중재 10. 0000 주경기장 건립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00 주경기장 건립공사		계약방식	-	
신청인	알 수 없음		피신청인	알 수 없음.	
사업 기간	최초	1996.03.25. ~ 1999.11.15.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7회
	최종	1996.03.25. ~ 2001.07.31. (624일 중)		논쟁차수	3~7차
청구시점	1999.12.22. 2001.03.29. (최종 준공대가 수령전 2회)		총공사비	152,243,000,000원	

### □ 중재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제02111-0004호
사건 접수일	-
판결 선고일	-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9,872,222,066원(2,434,135,000)
판결금액	5,780,436,278원(1,449,479,800)
(소가 대비 판결 %)	58.55%(59.55%)
(총공사비 대비 %)	3.80%(0.95%)
간접비 청구항목	-
간접비 인정항목	-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공법결정지연등은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함. ② (청구시점)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23조는 지급을 구할 권리를 상실시키는 규정이 아님. ③ (인정기간) 당초준공부터 최종준공까지 연장된 624일 총 기간 인정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공사업체 미확정 및 설계도면 미작성(발주처 중지 요청)</li> <li>• 피 신청인의 지붕공사 공법 결정 지연 및 하도급 업체 선정 검토기간 지연</li> <li>• 전체적 통합 시운전, 정밀장비 유지관리요원 교육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귀책 기여도 : 25%</li> <li>•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비용이 발생된 부분이 인정되나</li> <li>• 신청인측도 피신청인과 사전 조율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공사진행 순서를 함부로 뒤바꾸는 잘못이 있어 발생된 부분도 있으므로</li> <li>• 기여도를 25%로 하여 간접비 산정시 이를 참작</li> </ul>
② 청구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12.22. 2001.03.29. (최종 준공대가 수령전 2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2항1) 규정에 따라야 하나 신청인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항은</li> <li>• 혼시적인 규정이거나 발주기관 계약담당 공무원에 책무를 지우는 규정에 불과하므로</li> <li>• 신청인이 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당할 이유가 되지 않음.</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준공 1999.11.15.</li> <li>• 최종준공 2001.07.31.</li> <li>-연장된 총기간 624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된 624일에 해당하는 간접비 등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li> </ul>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연장기간의 간접비 (2,434,135,00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변경에 포함된 간접비를 제외한 부분 인정 (1,449,479,800)</li> </ul>
시사점 및 기타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2항 -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 부-03. 조정 사례

### 조정 1 00지하철 00호선 000공구 건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지하철 00호선 000공구 건설공사		계약방식	계속비공사	
신청인	(주)국제종합토건		피신청인	부산교통공사	
사업 기간	최초	1998.08.25. ~ 2002.09.24.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1998.08.25. ~ 2005.11.30. (연장 1,164일)		논쟁차수	-
청구시점	-		총공사비	1,329,000,000,000원	

#### □ 조정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2005-7
사건 접수일	2006.12.20.
판결 선고일	2007.01.02.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 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2,115,970,000
판결금액	655,950,000
(소가 대비 판결 %)	31%
(총공사비 대비 %)	0.049%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실비예상금액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피신청인 귀책사유 인정 ② (청구시점) 알 수 없음 ③ (인정기간) 연장된 공사기간 인정(38개월, '98.8~'01.10)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의 공정계획 변경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연장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연장 발생</li> </ul>
② 청구 시점	-	-	-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가 연장된 총기간 38개월 ('98.8~'01.1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가 연장된 총기간 38개월 ('98.8~'01.10)에 대해 모두 인정</li> </ul>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 : 16.5인 인건비 (월평균)</li> <li>경비 : 통신비, 지급임차료 등</li> <li>일반관리비 : 항목확인 안됨.</li> <li>보통인부가 행한 교통정리 및 물푸기(계정항목 확인 안됨.)</li> <li>이윤 및 실비예산금액 : 금액만 청구</li> </ul> <p>&lt;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gt;</p> <p>“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 청구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건설공사는 설계시공일괄 입찰계약이므로 법적 투입 인원(품질, 안전)을 제외하고 신청인의 자율투입이므로 간접노무비 청구 부당</li> <li>간접노무비 인정시 법적 투입인원 4명만 인정 (현장대리인1, 안전관리자1, 품질관리자 2)</li> </ul> </li> <li>경비 : 통신비 도급내역서 누락 (비인정)</li> <li>일반관리비 : 답변 없음.</li> <li>교통정리원 및 물푸기 불인정 (교통정리원 : 도급내역서에 누락, 물푸기 : 정산자료 없음.)</li> <li>이윤 및 실비예산금액 : 금액만 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일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연장 초기 실제투입인원 기준</li> </ul> </li> <li>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신청인이 인정하는 지급임차료</li> </ul> </li> <li>일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 및 경비의 3.658%</li> </ul> </li> <li>이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10.656%</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신비는 도급내역서 누락 및 계약서에 수급인 부담</li> </ul> </li> <li>교통정리원 및 물푸기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인부 (직접노무비)</li> </ul> </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정3, 판례5와 동일사례</li> </ul>		

## 조정 2 00지하철 00호선 000공구 건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지하철 00호선 000공구 건설공사		계약방식	계속비공사	
신청인	현대산업개발(주) 대표자 김정중 외 3개사		피신청인	부산교통공사	
사업 기간	최초	1997.12.31. ~ 2001.06.30.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1997.12.31. ~ 2005.10.31. (연장 1,585일)		논쟁차수	-
청구시점	-		총공사비	86,784,500,000원	

### □ 조정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2007-1
사건 접수일	2007.01.30.
판결 선고일	2007.12.10.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 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2,274,404,000
판결금액	1,908,487,000
(소가 대비 판결 %)	83.9%
(총공사비 대비 %)	2.2%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피신청인 귀책사유 인정 ② (청구시점) 알 수 없음. ③ (인정기간) 연장된 공사기간 인정(52개월, '01.07.01~'05.10.31)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의 공정계획 변경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연장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발생</li> </ul>
② 청구 시점	-	-	-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가 연장된 총기간 52개월 ('2001.07.01~'05.10.3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가 연장된 총기간 52개월 ('2001.07.01~'05.10.31)에 대해 모두 인정</li> </ul>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기간 연장동안 발생한 간접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 실제 현장 근무인원(월평균 16인)</li> <li>- 경비 : 지급임차료, 통신비, 여비</li> <li>- 보증수수료 : 공사 연장된 기간의 계약이행보증수수료</li> <li>- 일반관리비 : 금액만 청구</li> <li>- 이윤 : 금액만 청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비용 중 일부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 인건비</li> <li>- 경비 : 지급임차료만 인정</li> <li>- 보증수수료 비인정</li> <li>- 일반관리비 비인정</li> <li>- 이윤 비인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기관 공사에 투입된 인원의 간접 노무비 제외</li> <li>도급내역에 없거나 직접공사비와 관련된 사항 불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16명</li> </ul> </li> <li>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임대료</li> </ul> </li> <li>보증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이행보증수수료</li> </ul> </li> <li>일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및 경비, 보증수수료의 4.86%</li> </ul> </li> <li>이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경비 및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의 11.27%</li> </ul> </li> </ul> <p>&lt;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gt;</p> <p>“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수 있음.”</p>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정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피고 패소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0471(판례6))</li> </ul>		

### 조정 3 00지하철 00호선 000공구 건설공사

#### □ 공사개요

공사명	00지하철 00호선 000공구 건설공사		계약방식	계속비공사	
신청인	두산중공업(주)		피신청인	부산교통공사	
사업 기간	최초	1998.08.25. ~ 2002.09.24.	차수계약 (해당시)	회수	-
	최종	1998.08.25. ~ 2005.11.30. (연장 1,164일)		논쟁차수	-
청구시점	-		총공사비	1,329,000,000,000원	

#### □ 조정현황

구분	내용
사건번호	2007-3
사건 접수일	2007.02.22.
판결 선고일	2007.12.10.
종국결과	피신청인 일부 패소
신청인 청구금액	436.956.000
판결금액	122.832.000
(소가 대비 판결 %)	28.1%
(총공사비 대비 %)	0.009%
간접비 청구항목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지급임차료)
간접비 인정항목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판결요지	① (귀책사유)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피신청인 귀책사유 인정 ② (청구시점) 종사 준공전 당사자 회의시 추가비용 청구서 제출('07.03.29) ③ (인정기간) 연장된 공사기간 인정(38개월, '98.8~'01.10) ④ (인정범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 주요쟁점

구분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주장	판결
① 귀책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의 공정계획 변경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연장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발생</li> </ul>
② 청구 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이 당해공사 준공전 추가공사비 지급 신청하지 않았으며,</li> <li>대표수급사(국제종합토건)의 분쟁조정 신청시에도 공동신청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준공전 시기인 당사자 회의시 ('07.3.29)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서를 발주기관의 실무자가 수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노무비의 비용부담은 피신청인에게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인은 공사착공 이후 기술자 투입하지 않고, 총일 건설(주)부도발생 이후 기술자 참여시키는 등 간접노무비 청구대상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지급된 임금 등 감안 하여 간접노무비 지급</li> </ul>
③ 인정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가 연장된 총기간 38개월 ('98.8~'01.1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가 연장된 총기간 38개월 ('98.8~'01.10)에 대해 모두 인정.</li> </ul>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li> <li>- 일반관리비</li> <li>- 이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비용 (청구대상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등 분쟁조정 통해 대표수급사에 이미 지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못한 초기 38개월 실제 투입인원 기준</li> </ul> </li> <li>일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무비 및 경비의 3.658%</li> </ul> </li> <li>이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10.656%</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비(지급임차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비(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사무소 설치비용은 이미 대표수급사에 지급</li> </ul> </li> </ul>
시사점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수급에 의한 계약인 경우 대표사가 중재신청을 통해 청구액을 지급받았더라도 공동수급사의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사의 간접비 청구 가능</li> <li>조정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피고 패소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584(판례5))</li> </ul>		

## 부-04. 공사기간 연장 관련 법규

### □ 국가계약법

- 국가계약법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3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지방계약법

- 지방계약법 제22조 :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계약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4” :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2” : 계약기간의 연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 실비 산정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 시공단계

### □ 국가계약법

-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3에서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p>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p> <p>[전문개정 2012.12.18.]</p>	<p>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lt;개정 1996.12.31&gt;</p> <p>②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9.9]</p>

□ 지방계약법

-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지방계약법 제22조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

부록.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된 지방계약법 (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p>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p> <p>[전문개정 2009.2.6]</p>	<p>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6]</p>	<p>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5]</p>

## □ 계약예규

- 계약예규 상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이 있음.

---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희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희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 1. 임대장비: 유희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희일수) × 1/2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 및 “3”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다. “가”의 경우에는 “1-라”를 준용한다.
- 라.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 마.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사” 내지 “자”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 2. 계약기간의 연장

-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나”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5)”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가” 내지 “라”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바. “마”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 1) 계약담당자는 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가”의 해당 직종의 단가는 대상자의 업무수행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적정한 단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기 전 최근 3개월의 급여를 참고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경비 중 “라”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사.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희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희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 1) 임대장비 : 유희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희일수 × 1/2

4. 그밖의 실비의 산정

“2”와 “3”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 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4”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부-05.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건의 공문<sup>1)</sup>

### 1 건설사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건의

2013. 2. 29.

현대건설 주식회사  
GS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SK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1) 원본 공문이 훼손되어 직접입력

##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도

### 1. 총사업비관리지침의 목적[제1조]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2.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제3조]

-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예산 또는 기금 보조·지원사업 중
- 사업기간 2년이상, 300억이상 토목사업 및 100억이상 건축사업

### 3. 준용범위[제4조]

- 단계별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야 함

### 4. 발주 및 계약단계의 총사업비관리[제6절]

-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총사업비책정금액-실계약금액] 감액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시 계약변경 이전에 기재부장관과 협의
- 차년도 완공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6월말까지 총사업비변경요구

### 6. 총사업비 조정의 제한[제6장]

- 안전시공, 법령개정, 예상치 못한 지장물,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 신공법, 신기자재설치 등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 물가변동(제64조)

## ■ 총사업비관리지침의 문제점

### 1.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국가계약법은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기타계약내용의 변경 등 3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 총사업비관리지침은 이 중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조정만 인정
- 이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조에 의한 국가계약법 준용규정 위반

### 2.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

- 민원, 예산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보상
- OO건설의 경우 2009년 9월말 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약 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발주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업무 기피(기재부 요청사례 전무)

## ■ 개선방안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를 개정하여 총사업비조정 대상 항목에 공기연장 추가

## 2 대한건설협회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 대한건설협회

수신자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예산정책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 계약제도과장)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

제목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개선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던 발주처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조정 원활화를 목적으로 간접노무비, 유희장비, 각종 수수료 등 간접비 산정기준을 개선('10.11.30, 기재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개정)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발주처들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총사업비 조정사유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임의규정적 성격 및 예산부족 이유 등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건설업계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와 같은 부당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신의성실에 따른 계약이행 원칙(국가계약법 제5조, 지방계약법 제6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불임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개선 건의 1부. 끝

### 대한건설협회장

수신자

과장 김경호      부장 김충권      실장 최상근      본부장 한창환

협조자

시행 계약제도실-145      접수

우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http://www.cak.or.kr](http://www.cak.or.kr)

전화 02-3485-8200      [/khkim@cak.or.kr](mailto:khkim@cak.or.kr)      /공개

### 3 조달청



공공조달을 통해 창조경제 · 경제부흥을 이루겠습니다.



## 조 달 청

수신 기획재정부장관(총사업비관리과장)

(경유)

제목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건의

조달청과 건설협회 간담회('13.5.16.) 개최 시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우리청에 건의된 사항중 총사업비관리지침 관련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협회 요청사항 :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 발생시 추가비용에 대한 총사업비 사전협의 부당으로 미 반영되는 사례가 있어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자율조정항목에 포함되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협조 요망

나. 조달청 검토의견 : 공기연장 시 추가되는 간접비용은 조달청 사전검토 후 반영하는 자율조정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건의

※ 「총사업비 관리지침」

지침 제 100조(자율조정 항목) 제1항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설

## 조 달 청 장

주무관

안재영

사무관

이종길

예산사업관리

과장

김자연

시설총괄과장

설동완

협조자

시행 예산사업관리과-1120 (2013. 5. 24.) 접수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화번호 070-4056-7389 팩스번호 0505-480-1440 /050027@korea.kr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4 대한전문건설협회

○

○

○



**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 우 156-010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8층 02)3284-1010 전송 02)3284-1044~5 담당:고광양

문서번호 건설지원 제 호 기안일자 2012.3.30.(년) (경유) 수신 각안 참조 참조	감 사	취 급		회 장
		부 회 장		
		본 부 장		
		실 장		
		부 장		협 조
		과 장		
		기 안 자	최민혁	

### 제목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제도 개선 건의

(발신문서 제1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상 동

1. 국민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공기연장 비용의 인정범위와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계약 당사자간 분쟁소지 제거를 위해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10.11.30)해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공기연장 비용 :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공기연장으로 추가발생하는 간접노무비(현장 소장, 경비, 청소원 등 현장유자관리인력 인건비)와 경비(지급임차료, 보증수수료, 보관비 등)

3. 이에따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연장되고 있는 대형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은 신속한 공기연장조치로 적정한 간접비를 원도급자로부터 수령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예규개정이후 현재까지 발주기관에서는 예산 부족,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공기연장 관련 계약금액조정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실제 공기연장 조치의 실행사례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4. 이로 인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난,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초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장기어음 지급 등 각종 불공정 행위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도급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은 부도·파산 등 경영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동 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이행과 하도급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적정한 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영위기 해소를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의사항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계약금액 조정사유 및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  
계약법령상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  
건설공사 프로젝트별 예비비 확보 대책 마련

붙임 건의서 1부. 끝.  
수신 기획재정부 장관(계약제도과,총사업비관리과,예산정책과), 행정안전부 장관(재정관리과)

(발신문서 제2안)

수신 :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 건설경제과장

제목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반영 제도요청

1.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기가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 범위내 조정토록 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규정과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공기연장 비용 산정방법을 위한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개정('10.11.30)에도 불구하고

3. 대다수 발주기관들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공기연장 등과 같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총사업비 조정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대형 공사현장에서 적절한 간접비를 반영해주지 않고 있어 하도급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의 비용부

담 가중과 원활한 공사수행 곤란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우리협회는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등에 붙임과 같이 개선을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건의가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5. 아울러, 귀 부 산하기관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발생하는 간접비가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건의서 1부.            끝.

## 부-06. 법률자문 의견서

B A R U N L A W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7층

대표전화 : (02)3476-5599  
팩스 : (02) 538-3774

2014. 4. 18.

수 신 : 건설경제연구원

제 목 :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저희 법무법인은 귀원로부터 의뢰 받은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구(법률 자문)”에 관한 귀원의 추가 질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질의사항 1 : 보내드린 PDF 10면 판단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차수계약에 포함되는 기간,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차수와 차수의 공백기간 등 계약기간과 공사기간을 구분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이장 마지막 부분의 '공사기간에 포함된다'의 부분은 계약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판결은 차수별계약에 기초한 각 공사기간 사이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공백기간을 공사기간의 범위에 포섭시키기 위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전체계약과 차수별계약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판결은 전체계약상 총공사의 준공기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수별계약상 공사기간의 합이 반드시 총공사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차수별 계약상의 공사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계약상의 총공사기간에는 포함된다는 의미로 “공

사기간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질의사항 2 : 도급 계약서중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0일의 경우

- ① 단순한 기간 1,800일의 의미인지, 실제 공사를 진행한 1,80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계약기간 1,800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우선 “착공일로부터 1,800일”이라는 표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순수한 공사기간만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1,800일이 지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착공일로부터 1,800일”이란 문언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전체공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 ② 계약기간 1,800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장기계속공사의 각 차수별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또한 계약기간에 해당 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닌지

위 기간 내에서 차수별계약이 체결되고, 차수별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은 비록 별도의 차수별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지만 전체공사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제1항의 판결과 같은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 3. 질의사항 3 : 용어의선택 중 공백기간, 미계약기간 등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단어의 사용은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면 어느것을 사용해도 상관이없는지. 규정된 단어가 아니여도 사용해야하는 별도의 기준(?)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법률 기타 규범의 형식을 가진 규정 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법규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의미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설명이 용이한 단어를 취사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에 명시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가

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어 사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원의 질의의 내용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18.

**법무법인 바른(유한)**

담당변호사 남궁주현

## 발행기관

---

---

국토교통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연락처 : T. 1599-0001

## 연구기관

---

---

(사)건설경제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번길 24 우림라이온스밸리 3차 705호
- 연락처 : T. 031-720-5477, F. 031-720-5479
- 이사장 : 임 철 희

## 연구진

- 
- 
- 연구책임 : 최 두 선 (사)건설경제연구원 이사
  - 연구원 : 임 희 상 (사)건설경제연구원 이사  
김 영 덕 (사)건설경제연구원 본부장
  - 연구보조원 : 이 재 규 (사)건설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용 출 (사)건설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용 복 (사)건설경제연구원 전문위원
  - 보조원 : 이 세 연 (사)건설경제연구원 전임연구원  
박 예 지 (사)건설경제연구원 주임연구원  
김 세 현 (사)건설경제연구원 주임연구원
  - 자문위원 : 이 재 섭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이 영 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  
신 영 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 법률자문 : 남궁주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본 연구보고서는 정책수행을 위한 참고용으로 정책수행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